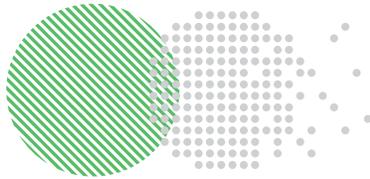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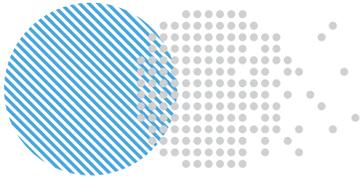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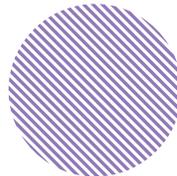
권오영 · 남화성 · 전명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저 자 권오영 남화성 전명기

연 구 진 연구책임자_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남화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명기(청소년과 미래활동 기획단장)
연구보조원_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논쟁과, 이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원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가칭)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설계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인력·조직·예산 등 정책적 실행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재조명)** 현장체험학습을 단순한 학교 밖 행사가 아닌 ‘공적 교육과정’으로 재정립하고, 교육적 가치와 안전관리의 균형점을 모색함
- **(국내 운영 제도의 구조적 한계 진단)** 현행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17개 시·도교육청 운영 매뉴얼을 정밀 분석하여,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적 근거의 미비점과 교원의 무한 책임 유발 요인을 규명함
- **(글로벌 스탠더드 및 시사점 도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EVC, 면책 범리, 위험평가 등)을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제화 및 정책 도입 시 가능한 시사점과 논리적 근거를 마련함

- **(현장 실태 및 입법 요구 분석)**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과중 실태와 법적 불안 요인을 진단하고, 교원·학부모·청소년수련시설 및 교육청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입법 수요를 파악하여 법률 제정의 타당성을 확보함
- **(법률 제정안 및 정책 로드맵 수립)**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총 13개 조문의 법률 제정안을 도출하고,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4대 핵심 정책 과제와 단계별 중장기 이행 전략을 수립함

■ 연구방법

- **(문헌 및 법령 분석)** 현장체험학습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와 판례,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와 입법 공백을 분석함
- **(국의 사례 심층조사)** 현장체험학습 관련 국외 주요국인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 중 영국의 교육방문코디네이터(EVC) 제도, 미국의 면책(Waiver) 법리, 호주의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체계, 일본의 전국 데이터 공유 시스템 등을 심층 연구하여 한국형 모델 설계를 위한 준거 틀로 활용함
- **(초점집단면접(FGI) 실시)** 현장체험학습의 이해관계자인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 시설 인증의 문제점, 보조인력 필요성 등 현장의 쟁점을 수집함
- **(전문가 서면조사수행)** 현장체험학습 행정을 총괄하는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센터 설립의 행정적 타당성과 필수적인 재정 지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함
- **(전문가 자문 및 법안 설계)** 교육법, 교육행정, 학교안전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법률안 초안의 법리적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최종 법률 제정안을 확정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무한 책임 구조의 한계)** 현행 현장체험학습 관련 제도는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교원의 방어적 태도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및 취소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 업무의 비교육적 과중)**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할 교사가 계약 체결, 보험 가입, 차량 및 시설 안전 점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뿐만 아니라 기술적 업무까지 전담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짐
- **(국외의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문제를 교사 개인의 주의력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 관련 전문 코디네이터(EVC) 제도나 면책 법리를 통해 시스템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을 분산하고 있음이 확인됨
- **(현장의 면책 법제화 합의)** 이해관계자 심층조사 결과,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모두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민·형사상 면책'이 법률로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음
- **(직무 재정립 및 지원 요구)**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을 '교육과정 기획 및 학생 생활지도'로 명확히 한정해야 함이 드러났으며,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을 '전문 지원기구'와 '전담 인력'의 도입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도출됨
- **(법률 제정안의 핵심: 국가 책무)** 연구 결과 도출된 법률안(총 13개 조문) 중 제3조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함
- **(법률 제정안의 핵심: 교원 보호)** 법률안 제11조 및 제13조를 통해 매뉴얼 준수 시 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구축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거버넌스: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센터 구축)** 교육지원청 단위로 현장체험학습 전담 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체험학습 관련 계약, 입찰, 정산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대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함
- **(질 관리: 민간 전문기관 등록제 운영)**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안전관리 역량, 재정 건전성,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갖춘 민간 업체를 선별하는 '전문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관련 시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
- **(인프라: 체험 시설·프로그램 안전 인증제)** 청소년수련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숙박·식당·체험시설에 대해 '교육안전 인증제'를 시행하고, 교육부-행정안전부-소방청 데이터를 연동한 통합 안전 정보망을 구축하여 사전 점검의 신뢰도를 높임
- **(예방 기술: 데이터 기반 위험도 평가 의무화)** 현장체험학습 관련 활동 유형별·장소별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 등급에 따른 사전 조치(인력 추가 등)를 의무화함으로써 과학적 예방 체계를 확립함
- **(인적 자원: 안전 보조인력 양성 및 표준화)** 퇴직 교원, 퇴직 경찰·소방관, 청소년 지도사 등 안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의 자격 기준을 국가 표준으로 정립하고, 체계적인 연수 과정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함
- **(재정 지원: 공적 예산 구조 개편)**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탈피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기준 개편을 통해 보조인력 인건비와 안전 관리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예산 구조를 마련함
- **(사후 보호: 교원 보호 공제 및 법률 지원 고도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민간 배상 책임보험을 연계하여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과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선제적 법률 방어 시스템을 가동함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25-수시03

I. 서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 3 |
| 2. 연구 목적 | 5 |
| 3. 연구 추진체계 | 6 |
| 4. 연구 내용 | 7 |
| 5. 연구 방법 | 8 |

II.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 | |
|-------------------------|----|
| 1.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 13 |
| 2. 현장체험학습의 정책적 의의 | 27 |
| 3. 요약 및 소결 | 30 |

III.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및 제도적 쟁점

| | |
|-------------------------------------|----|
| 1.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비교 | 35 |
| 2. 국내외 법령 및 안전관리 시스템 분석 | 49 |
| 3.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상 한계 및 제도적 개선 과제 | 70 |
| 4. 요약 및 소결 | 80 |

IV.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의 근거

- 1.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제화의 타당성 85
- 2. 이해관계자 심층조사를 통한 입법 요구 분석 103

V.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방안

- 1.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159
- 2.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62
- 3. 법률의 안정적 시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168
- 4. 중장기 로드맵 및 기대효과 174

참고문헌 177

부 록 189

표 목차

| | |
|--|-----|
| 표 I-1. 연구 내용 | 7 |
| 표 I-2. 전문가 및 학생 자문단 구성 | 10 |
| 표 II-1. 현장체험학습의 근거 | 14 |
| 표 II-2. 일본 학습지도요령(특별활동편) 속 학교행사의 유형 구분 | 17 |
| 표 II-3. 영국 교육부(DfE) 지침의 Educational Visits 유형 구분 | 19 |
| 표 II-4. 미국 시애틀 공립학교 procedure 2320-A의 시·공간에 따른 Field Trip 유형 구분 | 21 |
| 표 II-5.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 정책 문서에 나타나는 Excursions의 유형과 개념 | 22 |
| 표 II-6.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개념 및 범위 비교 | 23 |
| 표 II-7. 활동 기간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유형 구분 | 28 |
| 표 II-8.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 31 |
| 표 III-1. 미국 시애틀 공립학교 procedure 2320-A의 Field Trip 유형별 승인 절차 | 45 |
| 표 III-2.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조례별 주요 조문 비교 | 53 |
| 표 III-3. 학교 안팎 안전사고 실태와 교사 인식 | 72 |
| 표 III-4.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체계 및 특성 비교 | 78 |
| 표 III-5.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및 제도적 쟁점 | 81 |
| 표 IV-1. 각국의 중대 과실 기준 및 적용 방식 | 96 |
| 표 IV-2. 문헌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102 |
| 표 IV-3. 조사 개요 | 105 |
| 표 IV-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 대상자 | 106 |
| 표 IV-5. 전문가 서면조사 참여 대상자 | 106 |
| 표 IV-6. 현장체험학습 법제화 관련 면접조사 및 서면조사 질문지 구성 | 107 |
| 표 IV-7. 내용 분석의 범주와 주제 | 111 |
| 표 IV-8. 현장체험학습의 정의에 대한 집단별 의미 | 119 |
| 표 IV-9.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집단별 의미 | 125 |

| | |
|---|-----|
| 표 IV-10.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교육청, 학교의 책임 수준과 면책 범위에 대한 집단별 의미 | 134 |
| 표 IV-11. 현장체험학습 법률에 대한 집단별 의견 | 142 |
| 표 IV-12.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지원·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집단별 의견 | 153 |
| 표 IV-13.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법적 제도화를 위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156 |
| 표 V-1. 영역별 주요 정책 과제 개요 | 169 |
| 표 V-2.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기관 육성 방안 | 170 |
| 표 V-3. 체험 시설·프로그램 인증 및 위험도 평가 도입 방안 | 171 |
| 표 V-4. 안전 보조인력 양성 및 배치 예산 확보 방안 | 172 |
| 표 V-5. 교원 보호 공제 제도 개편 및 법률 지원 강화 방안 | 173 |
| 표 V-6.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중장기 로드맵 | 175 |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추진체계 7

그림 III-1. 일본 2022~2023학년도 해외 수학여행 방문 국가별 현황
..... 42

그림 III-2. 현장체험학습의 법령 및 규칙 체계 49

그림 III-3.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70

그림 V-1.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도 161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 목적
- 3. 연구 추진체계
- 4. 연구 내용
- 5. 연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현장체험학습은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보완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력, 진로탐색 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증진시키는 핵심 교육활동으로서 최근 정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은 최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시·도교육청도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 및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공 차원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은 여전히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운영 주체인 교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서 담임교사가 1심 결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2심 항소 진행 중)는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대표적 사건으로 지적된다(한국일보, 2025.4.23.).

이러한 현장의 불안감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보고된 학교 안전사고는 총 211,650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으며, 이 중 54%가 교육과정 중 일어난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학여행, 수련활동, 문화예술체험 등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는 약 10,558건(5.2%)으로 일반 교내 활동 대비 약 9배 이상 높게 나타나,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안전사고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전북

* 이 장은 권오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미래교육신문, 2025.3.14.; 세계일보, 2025.7.1.). 이처럼 안전사고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법적 면책 장치나 안전 운영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운영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머니투데이, 2025.7.7.; 한국교육신문, 2025.3.13.).

이로 인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행정적 부담과 책임 부담으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202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692명의 교사 중 96.4%에 달하는 교사들이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으로 교사·학생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2025.3.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사 6,111명 조사 결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25.3.19.)에서도 교사 81.8%가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2025년 들어 37%의 학교가 2025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법적 면책 장치나 안전 운영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미비로 인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25.3.19.). 물론 위 조사들의 표본이 크지 않고 초, 중, 고교별 차이 및 조사 단체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러 통계지표들을 통해 현재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불안감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의 참여 역량 증진, 인지적·정서적 성장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고(Oloyede & Beauden, 2025), 교원들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는 있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교원의 법적 책임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면책 및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교사 면책과 보조인력 확충 조항이 2024년 신설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행 기준의 구체성과 현장 적용성 부족으로 인해 교사의 법적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이를 개선해보고자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와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간 운영기준의 차이와 지원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법령상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및 정의, 범위, 그리고 교사의 관련 직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와 지침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면서도 교원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기준, 안전 지침, 인력 지원 체계 등을 포괄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교육현장의 실질적 요구와 정책 방향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면서도 교원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범위, 운영 주체, 교원의 직무 범위 및 책임 범위 등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법제적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법률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도출한다.

둘째, 국내외 법령, 정책, 사례 조사 및 교원,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서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제기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실행 가능한 법률 초안을 설계한다.

셋째, 교원의 법적, 행정적 책임 완화와 학생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 보조인력 및 안전관리 지원 체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3.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헌 및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심층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법률안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사례분석 단계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정의, 범위, 법령, 조례, 정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주요국의 운영 제도와 사고 대응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도입 시사점과 법적 제도화의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 심층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는 입법 수요를 구체화하기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원, 학부모, 교육청 및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현장의 쟁점과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제정에 필요한 핵심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 및 학생 자문 단계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을 통해 법률안의 타당성과 정책 과제를 검토하였다. 도출된 법률 초안에 대해 교육법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조문의 법리적 정합성과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예비 교원인 사범대 학생 자문단을 포함하여, 도출된 법률 초안의 법리적 정합성과 미래 교육 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다.

넷째, 최종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정책 과제 도출 단계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법률 제정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과제와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문헌 조사 - 면접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법률안 도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I-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4.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본질 회복과 안전한 운영 기반 마련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1-1. 연구 내용

| 연구 내용 | 세부 내용 |
|----------------------------------|--|
| 1) 현장체험학습의 본질 및 글로벌 운영 체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유형 및 교육적 가치 재조명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시스템(EVC, 인증제, 면책 법리 등) 비교·분석 |
| 2) 국내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및 제도적 한계 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개 시·도교육청 운영 매뉴얼 및 학교 안전사고 발생 통계 분석 현행 법령(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법 등) 및 제도의 구조적 사각지대 진단 교원의 행정 업무 과중 및 무한 책임 구조로 인한 현장의 위기 요인 규명 |
| 3) 법제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입법 요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및 주요 판례(2025년 춘천지법 등) 분석을 통한 법적 제도 보완의 논리적 타당성 확보 핵심 이해관계자(교원, 학부모,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및 전문가 서면조사 실시 현장의 실질적 고충 및 법률 제정 관련 핵심 요구사항(면책, 인력, 지원조직) 유형화 |
| 4) 「현장체험학습 지원법」 제정(안) 및 정책 과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13개 조문) 설계 및 제안 취지 제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4대 핵심 정책 과제(지원센터, 위험도 평가, 인증제, 보험 연계) 제안 제도 안착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제시 |

5.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실효적 법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법령 체계 분석, 비교법적 사례 연구, 통합적 질적 연구, 전문가 자문 등 총 5단계의 연구 방법을 심층적으로 적용하였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 절차와 방법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연구의 기초 단계로서 현장체험학습의 개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상의 구조적 난점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를 통해 현장체험 학습을 단순 행사가 아닌 ‘공적 교육과정’으로 재정립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운영 매뉴얼과 통계 자료를 전수 분석하여 지역 간 운영 격차와 행정 업무 과중의 실태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문헌 분석은 법제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상황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법령 체계 분석(Legal System Analysis)

교원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의 원인을 규범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법령 체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등 상위 법령과 각 시·도 조례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현행 법제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면책과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Legal Void)을 규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할 특별법 성격의 제정안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리적 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3) 비교법적 사례 연구(Comparative Legal Case Study)

국내에 도입 가능한 선진적인 안전관리 모델과 법적 보호 장치를 발굴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제도를 심층 분석하였다.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영국의 교육방문코디네이터(EVC) 제도, 미국의 면책(Waiver) 법리, 호주의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체계, 일본의 전국 데이터 공유 시스템 등 각국의 핵심 기제를 비교 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법제 환경에 이식 가능한 한국형 지원 조직 모델과 책임 제한 규정 설계를 위한 실증적 증거를 도출하였다.

4) 통합적 질적 연구(Integrative Qualitative Research)

현장의 실질적 쟁점과 입법 수요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자료 수집 대상을 이원화(Two-Track)한 통합적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교원, 학부모,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정량적 통계로는 포착하기 힘든 현장의 미시적 고충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을 총괄하는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예산·인력 소요 등 거시적 정책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비교사례분석(Comparative Case Analysis)을 통해 법률 제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입법 과제로 유형화되었다.

5) 전문가 자문(Expert Consultation)

앞선 연구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설계된 법률안 초안의 법적 완결성과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을 실시하였다. 교육법 전문가, 변호사, 교육행정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조문의 법리적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교육부 및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를 통해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래의 교원이 될 사범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 교원의 시각에서 법률안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현장 적용 시의 우려점을 청취하여 법안의 수용성을 높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자문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2. 전문가 및 학생 자문단 구성

| 구분 | 자문 대상자 | 소속 및 직위 | 구분 | 자문 대상자 | 소속 및 직위 |
|----------|--------|--|----|--------|----------------|
| 정부 부처 | P1 | 교육부 국장 | 학생 | S1 | □□대학교 사범대학 학부생 |
| | P2 | 교육부 과장 | | S2 | □□대학교 사범대학 학부생 |
| | P3 | 교육부 연구관 | | S3 | □□대학교 사범대학 학부생 |
| | P4 | 교육부 주무관 | | S4 | □□대학교 사범대학 학부생 |
| | P5 | 성평등가족부 과장 | | S5 | □□대학교 사범대학 학부생 |
| | P6 | 성평등가족부 사무관 | | S6 | □□대학교 사범대학 학부생 |
| | | | | S7 | □□대학교 사범대학 학부생 |
| 전문가 | E1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회 위원 (전 △△교육청 부교육감 /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 | | |
| | E2 | 법무법인 △△ 변호사 (전 교육부 법무담당관) | | | |
| | E3 | △△대학교 교수 | | | |
| | E4 | △△대학교 교수 | | | |
| | E5 | △△대학교 교수 | | | |
| | E6 | △△대학교 교수 | | | |
| | E7 | △△대학교 교수 | | | |



제2장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 1.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 2. 현장체험학습의 정책적 의의
- 3. 요약 및 소결

2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 본 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개념과 유형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이 갖는 교육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1.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1) 국내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며,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2025). 이러한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된다(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2025).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른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25). 둘째, 단체 활동을 경험하며 협동심과 배려심 등 인성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25).

현장체험학습의 유형 구분과 교육과정 연계, 학교장 허가 등은 다음과 같이 법령·조례 및 행정적 기준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 이 장의 1.과 2.는 남화성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전명기 박사(청소년과 미래활동)가 집필하였고, 3.은 권오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1. 현장체험학습의 근거

| 구분 | 주요 내용 |
|-----------------------|---|
|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3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규정 • 시행령 제48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 인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및 사고 대처 • 학생·교직원의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 등에 대해 규정 |
| 교육청 조례 (서울, 경남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형·숙박형 등 유형별로 현장체험학습을 정의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
| 운영 매뉴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숙박형(1일형), 숙박형(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운영 지침과 안전관리 기준 명시 |

* 출처: 초·중등교육법(2025.4.1. 일부개정,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5.9.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84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1.21. 일부개정, 법률 제206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7.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9692호),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2025.7.31. 전부개정, 경상남도조례 제5891호)의 내용을 정리함.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2025.4.1. 일부개정, 법률 제20862호), 동법 시행령 제48조는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5.9.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84호).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1일형과 숙박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와 운영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유형별로 학교장이 학생 안전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는 등의 운영 세부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 안전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안전법」 등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체험 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 대처, 학생·교직원의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1일형과 숙박형(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지원과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에는 교육감의 운영 지원, 안전교육 실시,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유형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체험학습의 개념과 관련하여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교외체험학습’이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5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으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5.9.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84호),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향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경험과 실천을 중심의 학습을 의미한다. 현장체험학습이 교과 내용을 실제 경험하며 배우는 교육활동을 총칭한다면, ‘교외체험학습’은 이러한 현장체험학습 중 보호자 동반하에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적 체험활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연도별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등 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의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한다. 학생은 개인 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신청 기한, 보고서 제출 등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정으로 정하게 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5.9.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84호). 학교별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출결 일정 일수, 프로그램의 신청·보고, 인정 범위, 일정기간 통화 등 안전관리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출결 인정 일수는 초등·중등은 연 7~20일 이내, 고등은 연 10일 이내가 일반적이다. 학교장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출석 인정하며, 체험 시간 4시간 미만은 반일로 산정하고, 반일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프로그램 신청과 보고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2~3일 전 학생·학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험 종료 후 5~7일 이내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교외체험학습이 인정되는 범위는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관혼상제,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하는 활동 등이며, 학원 수강이나 입시·어학연수 등은 불허한다. 그리고 5일 이상의 프로그램은 담임과의 영상통화 등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이론보다는 실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활동 방식은 자연 현상이나 사회적 사실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직접 관찰, 조사, 견학, 면접 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자료가 있는

장소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쌓고,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교육활동이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과 당일형 활동인 1일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집단 활동을 통해 올바른 생활 태도를 기르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법적 근거와 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상의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근거하여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다.

정책 및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부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공식적인 학교 교육의 일부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시·도 관련 조례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데 있다.

학술 연구적 관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밖 배움의 중요한 형태로 인식하며, 특히 안전하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룬다(이영주, 2003; 이승미, 유창완, 박정준, 최창규, 201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교육계획 등에 따라 교실이라는 정해진 공간을 벗어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국외

우리나라 이외의 다양한 나라에서도 학교 정규 교육과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다양한 용어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세계 각국에서 현장체험활동과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의 遠足·集團宿泊の行事, 영국의 Educational Visits, 미국의 Field Trips,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Excursions 등의 개념을 검토·분석하여 각국에서 정의하는 개념적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일본: 소풍·집단숙박적행사(遠足·集團宿泊の行事)

먼저, 일본의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단독적인 개념으로 다루기보다 특별활동

을 구성하는 학교행사의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서 제시하는 국가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특별활동편)(文部科学省, 2017a)에서는 학교행사(學校行事)를 의식적행사(儀式的行事), 문화적행사(文化的行事), 건강안전·체육적행사(健康安全·体育的行事), 소풍·집단숙박적행사(遠足·集団宿泊的行事), 근로생산·봉사적행사(勤労生産·奉仕的行事)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II-2. 일본 학습지도요령(특별활동편) 속 학교행사의 유형 구분

| 유형 | 개념 | 주요 활동 예시 |
|------------|--|------------------------------------|
| 의식적행사 | 학교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나 전환점을 부여하고, 엄숙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새로운 생활의 전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 | 입학식, 졸업식, 시상식 등 |
| 문화적행사 | 평소의 학습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자기 계발 의욕을 더욱 높이며, 문화와 예술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활동 | 학예회, 체육대회 등 |
| 건강안전·체육적행사 |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건강 유지 증진, 사건·사고·재해 등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안전한 행동과 규율 있는 집단행동의 체득, 운동에 친숙해지는 태도 함양, 책임감과 연대감 함양, 체력 향상 등에 기여하는 활동 | 건강진단, 교통안전교육, 재해예방교육, 보건교육, 체육대회 등 |
| 소풍·집단숙박적행사 | 자연 속에서의 집단 숙박 활동 등 평소와 다른 생활 환경에서 건문을 넓히고 자연이나 문화 등에 친숙해지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집단생활 방식이나 공중도덕 등에 관한 체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 | 수학여행, 소풍, 야영활동 등 |
| 근로생산·봉사적행사 | 근로의 소중함과 생산의 기쁨을 체득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활동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사육활동, 직업체험 등 |

* 출처: 文部科学省(2017a). 小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特別活動編」, 및 文部科学省(2017b). 中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特別活動編」 내용을 번역·정리함.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학교행사의 총괄 목표를 ‘학교생활의 충실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체험적 활동(学校生活の充実と発展に資する体験的な活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행사에 포함된 소풍·집단숙박적행사(遠足·集団宿泊的行事)는 우리나라의 현장체험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소풍·집단숙박적행사는 ‘평상시와 다른 환경에서 자연과 문화에 친숙해지고, 집단생활을 통해 바람직한 경험을 쌓게 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7a). 즉, 여행·집단숙박적행사는 단순한 야외견학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성·공동체성·도덕성 형성

을 목표로 하는 정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학생의 자발성과 자치적 활동 능력을 길러주는 장으로 이해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7b). 그리고 소풍·집단숙박행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소풍(遠足), 수학여행(修学旅行), 야외활동(野外活動), 집단숙박활동(集團宿泊活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풍은 당일 중심의 활동으로, 자연관찰, 역사유적 탐방, 과학관·박물관 견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수학여행은 2박 이상 장기 활동으로, 교토·나라 등 역사·문화유산 탐방, 지역 산업 시찰, 보고서 작성 등 학년별 교육 목표와 연계한 활동들이 함께 구성될 수 있다. 야외활동과 집단숙박활동은 산림·해안 등 자연환경에서 공동생활을 경험하며, 협력·자율성·집단 규범의식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현장체험학습은 교과 수업을 넘어서 집단적·체험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비일상적 환경에서의 경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친밀감 형성, 집단 규범과 사회성 함양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한다.

(2) 영국: Educational Visits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장체험학습에 해당하는 활동을 ‘Educational Visits’라는 용어로 설명한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이하, DfE)가 2018년 발간한 지침인 「Health and Safety on Educational Visits」은 Educational Visits와 기타 교외 활동(out-of-school activities)을 포괄하여 제시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학교가 교내를 벗어나(off-site) 교육적 목적을 위해 조직하는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그리고 영국 북아일랜드 교육부가 설립한 Education Authority의 「2017년 학교를 위한 Educational Visits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에서는 Educational Visits를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며 참여자의 학습과 발달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모든 학업적, 체육적, 문화적, 창의적 및 개인적 발달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현장체험학습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Education Authority, 2017). 또한 영국 랭커셔 카운티 의회(Lancashire County Council)(이하, LCC)에서는 2013년 「Educational/Off Side Visits에 대한 정책 및 지침(Policy and Guidelines for Educational/Off Site Visits)」을 통해 Educational/Off Site Visits는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하고 강화하기 위해 계획된 현장학습 방문을 포함한 별도의 외부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Lancashire County

Council, 2013).

이러한 정의들은 Educational Visits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밖(off-site)에서 이루어지는 교외 소규모 답사에서부터 해외 연수에 이르는 폭넓은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 교육부(DfE)의 지침에서는 Educational Visits의 유형을 크게 '반복적(routine) 방문'과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별도 계획(extra planning)이 필요한 여행(trips)'으로 구분하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이라는 큰 틀 안에서 활동의 위험과 준비 수준에 따라 유형 구분을 층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3. 영국 교육부(DfE) 지침의 Educational Visits 유형 구분

| 유형 | 개념 | 주요 활동 예시 |
|---|------------------------------------|-----------------------|
| 반복적 방문 (routine visit) | 짧고 단순한 활동, 일상적 위험 수준, 수업의 연장선으로 간주 | 도서관, 지역 박물관 방문 등 |
| 위험평가와 별도 계획이 필요한 여행 (trips that need a risk assessment and extra planning) | 숙박·국외·모험활동 등 추가적 기획과 승인 필요 | 수학여행, 캠핑,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 |

*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ealth-and-safety-on-educational-visits/health-and-safety-on-educational-visits>의 내용을 번역·정리함.

영국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공간 차원에서 학교 밖(off-site) 활동을 총칭하면서 국내외, 숙박·비숙박 여부를 불문한 모든 활동을 Educational Visits에 포함하고 있다. 둘째, 교외 활동은 반드시 교육적 목적을 전제로 해야 하며, 단순 오락이나 여가 성격의 활동은 Educational Visits로 간주되지 않는다. 셋째, 활동에 요구되는 계획과 서류는 해당 활동의 실제 위험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는 철학을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이하, HSE) 홈페이지의 'School Trips' 항목에서는 "실제 위험(real risks)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집중해야 하며, 과도한 서류 작업(paperwork)은 지양해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¹⁾. 즉, 개념 정의 속에는 교육적 필요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준비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출처: <https://www.hse.gov.uk/education/school-trips.htm> 에서 2025년 9월 4일 인출.

(3) 미국: Field Trip(School Trip, Excursion)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현장체험학습에 관련된 정의는 찾기 어렵다. 이는 미국의 교육 관련 제도와 권한이 주(state)와 학군(school district) 단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개념은 주와 학군의 규정이나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의 정책 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용어로는 'Field Trip'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문서에서는 'School Trip'이나 'Excursion'이라는 단어도 병기되지만, 교육청 규정과 주(州) 교육법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명칭은 대부분 Field Trip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35330조(California Education Code §35330)」에서는 학군의 이사회나 카운티 교육감(county superintendent)은 초등 또는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또는 학교 관련 사회·교육·문화·체육·학교 밴드 활동과 연계하여 주 내, 타 주,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 또는 외국으로의 현장 학습 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외국으로의 현장학습 또는 견학은 해당 학군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언어, 역사, 지리, 자연과학 및 기타 학문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허용될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교과 과정 및 학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활동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각 지역 학군 정책 차원에서의 정의에서도 단순 오락적 성격이 아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현장체험학습의 개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 교육청(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의 「교육감 규정(Chancellor's Regulation) A-670」은 학교 여행(School Trip)을 “목적지나 이용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학교 외부(off school premises)에서 진행하도록 승인된(authorized) 모든 현장학습(field trip)”으로 정의하면서(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규정의 목적을 기술한 부분에서 학교 여행이 학생들에게 관찰, 탐구, 발견, 직접적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학습 환경의 연장선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또한 시애틀 공립학교 위원회 정책(Board Policy) 2320에서는 Field Trip을 “교실 밖 환경에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실 수업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하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다(Seattle Public Schools, 2018a).

한편, 미국의 여러 학군 위원회에서는 Field Trip의 유형을 주최자나 시간, 공간 범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시애틀 공립학교 위원회의 절차(procedure) 2320-A에서는 주최자에 따른 Field Trip의 유형을 학교 주관(school-sponsored)과 사설(privately sponsored)로 구분하면서 학교 주관 활동에 국한한다(Seattle Public Schools, 2018a). 그리고 시간·공간에 따라서는 당일형(Day Field Trip), 숙박형(Overnight Field Trip), 해외형(International Field Trip)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Seattle Public Schools, 2018a).

표 II-4. 미국 시애틀 공립학교 procedure 2320-A의 시·공간에 따른 Field Trip 유형 구분

| 유형 | 개념 | 주요 활동 예시 |
|--|----------------|---------------------------|
| 당일형 현장학습 (Day Field Trip) | 당일 귀가가 가능한 활동 | 지역 과학관 견학, 시립 도서관 방문 등 |
| 숙박형 현장학습 (Overnight Field Trip) | 1박 이상 숙박 포함 활동 | 자연캠프, 주 내 탐방학습 등 |
| 해외형 현장체험 (International Field Trip) | 국외 이동이 포함된 활동 | 해외 문화교류, 자매학교 방문 등 |

* 출처: Seattle Public Schools(2018a), FIELD TRIPS & EXCURSIONS: General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All Field Trips의 내용을 번역·정리함.

(4) 호주: Excursions

호주는 각 주별 교육부의 정책 자료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을 Excursion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그 예로 뉴사우스웨일스 교육부(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이하, NWS DoE)의 ‘현장체험학습 정책(Excursions Policy) 문서 PD-2004-0010’에서는 학교 현장체험학습(School Excursions)을 “학교 부지 내 또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학교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학습 경험”으로 규정하고 있다(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즉, Excursions는 단순한 외부 견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기획·제공하는 구조화된 학습 경험이며, 그 범위는 학교 구내(on-site)와 학교 밖(external to the school site)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 문서에서는 Excursions의 활동 유형을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따라서 크게 교외 활동(off-site), 교내 초청 활동(inursions), 해외 활동(overseas excurs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호주는 앞서 살펴본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학교 부지 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외부 제공자 또는 다른 학교에 의해 진행되는 활동 유형을 교내 초청 활동

(incursions)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의 개념을 장소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25년 1월 30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NSW DoE)는 ‘현장체험학습 정책 문서 PD-2004-0010’를 ‘Curriculum planning and programming, assessing and reporting to parents K-12 policy’에 통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체험학습을 별도의 독립적 내용이 아닌, 교육과정 계획·편성·평가 체계 속에서 관리되는 활동으로 재구조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Excursions의 개념이 교육과정에 더 긴밀하게 내재화되어, 학교 학사 운영과 평가, 학부모 보고 체계와 직접 연결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통합 이후 Excursions 개념은 온라인 기반의 가상활동(virtual excursions)과 온라인 상호작용 프로그램(interactive online programs)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주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식에 있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적극 반영하기 시작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가상 견학(virtual excursions)’과 ‘온라인 상호작용형 학습(interactive online programs)’ 등을 교내 초청 활동의 개념에서 함께 언급하면서, Excursions의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현장 방문을 넘어서, 온라인 기반 학습 경험까지 포함하여 확장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5.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 정책 문서에 나타나는 Excursions의 유형과 개념

| 유형 | 개념 | 주요 활동 예시 | |
|--------------------------------|--|---------------------------------|--------------------------------|
| 교외 활동 (off-site)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 | 국립공원 탐방, 박물관 견학, 산업체 방문 등 | |
| 해외 활동 (overseas excursions) | 해외로 이동하는 학습 체험 | 국제 교류 프로그램, 해외 역사·문화 탐방 등 | |
| 교내 초청 활동 (incursions) | 외부 전문가·기관을 초청하여 교내에서 실시하는 활동 | 과학자·예술자 초청 강연, 이동형 과학 전시 등 | |
| 추가 유형 | 가상 견학 (virtual excursions)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외부 기관·자원과 연결되는 활동 | 온라인 박물관 투어, 원격 과학관 탐방 등 |
| | 온라인 상호작용 프로그램 (interactive online programs) | 실시간 상호작용 기반의 원격 학습 경험 | 화상 강연, 온라인 실험 시연, 원격 질의응답 수업 등 |

* 출처: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2009). Excursions Policy.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2025a). Curriculum planning and programming, assessing and reporting to parents K-12 policy.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2025b). Excursions and variations of routine. 자료를 번역·정리함.

3) 국내외 사례 비교에 따른 시사점

앞서 살펴본 국내 및 국외(일본, 영국, 미국, 호주)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칭하는 용어와 범위를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법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교육활동으로서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6.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개념 및 범위 비교

| 구분 | 한국 | 일본 |
|---------|---|--|
| 용어 | 현장체험학습 | 학교행사 (遠足·集團宿泊の行事, 소풍·집단숙박적행사) |
| 핵심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활동의 일환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자연·문화 접촉 및 집단생활 체험 |
| 공간적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교외) 중심 숙박형/1일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교외) 중심 당일/숙박(수학여행) |
| 교육적 강조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연계성 공동체 의식 함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생활 규범 자연/문화 친화 |
| 구분 | 영국 | 미국 |
| 용어 | Educational Visits | Field Trip(School Trip) |
| 핵심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off-site) 교육적 목적으로 조직된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수업을 보완·풍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연장선 |
| 공간적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off-site) 국내/국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off-premises) 주내/타주/국외 |
| 교육적 강조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적 목적 필수 (단순 여가 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학습의 확장 관찰/탐구 기회 제공 |
| 구분 | 호주 | X |
| 용어 | Excursions | |
| 핵심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가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 (장소 불문) | |
| 공간적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안팎 포괄 교외(off-site) 교내 초청(incursion) 가상(virtual) | |
| 교육적 강조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경험의 다양성 디지털 연계 확장성 | |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기에 앞서, 이상의 비교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및 범위, 강조점 등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단순한 행사나 견학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미국은 현장체험학습(Field Trip)을 교실 수업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하는 교육 과정의 연장선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단순 오락적 성격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 또한 이를 특별활동 중 ‘소풍·집단숙박적행사’로 분류하여, 자연·문화 친화 및 집단생활을 통한 사회성 함양이라는 명확한 교육 목표를 부여하고 있고, 영국 역시 교육적 목적(educational purpose)이 없는 단순 여가 활동은 ‘Educational Visits’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교과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학습(Learning)’의 일환으로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립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안전관리 체계의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실질적 위험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법령과 조례를 통해 1일형, 숙박형 등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답사, 안전요원 배치 등 행정적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서류 작업(paperwork)보다는 실제 위험(real risks) 관리에 집중하며, 활동의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준비 절차를 차등화하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모든 활동에 일률적인 안전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활동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른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현장체험학습을 ‘학교가 제공하는 구조화된 학습 경험’으로 정의하여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 영국 등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가 기획하고 조직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여 학교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개인 계획에 의한 ‘교외체험학습’과 학교 계획에 의한 ‘현장체험학습’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도 개선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 개념의 범위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의 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반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Excursions’의 범주에 학교 밖 활동(off-site)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학교로 초빙하는

교내 활동(incursions),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견학(virtual excursions)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주는 온라인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디지털 전환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기후 변화, 감염병 등 외부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또한 물리적 이동 중심의 정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체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국내외 사례에 근거한 현장체험학습 개념의 재정의

본 연구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 가운데 학교가 책임지는 공공교육 프로그램으로 재정의하고, 이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할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 재정의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될 정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1) 정의

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편성·운영하는 전일제(당일형 포함)의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공적인 예산의 지원과 집행을 통해 학교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식 교육 활동으로서, 학생의 경험학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체험학습에 포함되는 활동 유형으로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운영은 사전교육·현장 운영·사후활동의 표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참고로 호주 등 일부 외국 사례에서는 학교 부지 내 초청 활동(incursions)까지 포괄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정의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규정한다.

(2) 특징

현장체험학습은 단순 견학을 넘어 구조화된 학습 경험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교육적 책무성이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주관·관리 체계 내에서 실시되며,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차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육적 연계성 및 자율성이다. 현장체험학습의 프로그램 내용은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체험 중심의 학습을 통해 실제 학습 성과를 도모해야 하며,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다양한 교육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현장체험학습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영국의 사례와 같이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실제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주요 활동 방식 및 범위

현장체험학습은 숙박 여부와 교육적 목적에 따라 숙박형(예: 수학여행, 수련활동, 국외 체험학습)과 1일형(예: 견학, 관람, 교과연계 체험, 소풍 등)으로 구분되며, 진로체험·봉사 활동 등도 교육과정상 목적이 명확할 경우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활동은 사전 안전교육 실시, 체험지 도착 후 대피로 및 비상행동요령 교육, 교원의 상시 입장지도 등 표준 안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4) 교육적 의미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비일상적 환경에서 체험과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 성장과 사회성 함양에 기여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협력·자율성·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킨다. 또한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학습 경험을 직접 설계하고 지도하는 ‘교육활동 그 자체’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법제화의 목적은 교원이 행정적·안전관리 업무의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학습지도·생활지도·안전교육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 관련 법률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및 관련 종사자의 과도한 책임과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의 정책적 의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이라는 정해진 공간을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교육과정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활동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경기도교육청, 2023.6.).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식되어야 하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4),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현장체험학습의 주요 특성

현장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경기도교육청, 2023.6.; 류수연, 이종원, 2017). 첫째, 체험 중심의 학습 방식이다. 학생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중심의 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적용한다. 둘째, 능동적 참여 및 다면적 학습 경험을 추구한다. 관찰, 조사, 견학, 면접 등 다양한 활동 방식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면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셋째, 효과적인 교육 목표 달성을 지향한다. 현장에서의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집단 활동을 통해 올바른 생활 태도를 기르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현장체험학습의 유형

현장체험학습은 활동 기간에 따라 숙박형과 1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이 포함되며, 1일형은 당일 견학이나 체험활동 등을 포괄한다. 또한 교육적 성격에 따라서는 다양한 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활동이면서 동시에 이론 학습의 현장 적용을 통한 실천적 교육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23.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4; 박재향, 2002; 문재원, 나지연, 2019).

(1) 활동 기간에 따른 구분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크게 활동 기간과 숙박 유무를 기준으로 숙박형과 1일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이 포함되며, 1일형은 당일 견학이나 체험활동 등을 포괄한다. 시·도교육청 조례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1일형과 숙박형(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지원과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활동들은 반드시 사전 계획 수립과 안전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II-7. 활동 기간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유형 구분

| 구분 | 주요 활동 유형 | 특징 및 예시 |
|-----|-------------------------|---|
| 숙박형 | 수학여행, 수련활동, 국외체험학습 | 2박 이상 장기 활동(수학여행),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수련활동) |
| 1일형 | 관람, 견학, 강의, 소풍, 교과연계 활동 | 1일 동안 이루어지는 비숙박 체험활동. 자연 관찰, 역사 유적 탐방, 과학관 견학 등이 포함 |
| | 기타 전일제 활동 | 진로체험, 봉사활동 등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적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었다면 현장체험학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 출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2024). 2024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i-iii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함.

(2) 교육적 성격에 따른 분류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성격에 따라 다양한 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활동이면서 동시에 이론 학습의 현장 적용을 통한 실천적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년(또는 학급) 단위 전일제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수학여행·수련활동·1일형 체험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교사들은 교과 연계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진로체험, 봉사활동 등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적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면 현장체험학습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3)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의의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교육과 실생활을 연계하며, 집단 활동을 통한 사회성 함양과 창의성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이는 교실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대안적 교육 방법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23.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4; 박재향, 2002; 문재원, 나지연, 2019).

첫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공동생활을 경험하며 협력, 자율성, 집단 규범의식을 기를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역량 및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실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교육방법론을 제시한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방법론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4) 현장체험학습의 정책적 중요성 및 법제화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현장체험학습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교육적 의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공통적 방향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이 단순한 체험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아닌 교육과정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활동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23.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4).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관련 제도 아래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의 법적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학교안전법」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준의 구체성과 현장 적용성이 부족하며, 법령상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및 정의, 범위, 그리고 교사의 관련 직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 간 운영기준의 차이와 지원 체계의 미흡 문제 또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고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며 운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기준, 안전 지침, 인력 지원 체계 등을 포괄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법률안에는 목적, 정의, 교원 및 보조인력의 법적 책임 범위,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예산 및 행정 지원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령의 법제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유익한 공동생활을 경험하며 협력, 자율성, 집단 규범의식을 기를 수 있고, 이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역량 및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교육 본연의 역할 수행을 구체화할 수 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학습 경험을 직접 설계하고 지도하는 ‘교육활동 그 자체’로 인식한다(FGI 조사 결과 참조).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제(안)은 교사가 행정적·안전 관리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지도와 관리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한다. 관련 법령 제정 등 현장체험학습 관련 시스템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 및 관련 종사자의 과도한 책임과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 학습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개념과 유형을 국내외 법령 및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이 갖는 교육적 가치와 정책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요 논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의 개념은 단순한 학교 밖 활동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공적 교육활동’으로 재정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장의 허가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 체험 학습(교외체험학습)과 학교 주관 활동(수학여행 등)이 혼재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Field Trip), 영국(Educational Visits), 일본(학교행사) 등 주요국은 이를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엄격한 승인 절차와 교육적 목적성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학교가 기획·승인·운영하는 구조화된 학습 경험’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적 책임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물리적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체험까지 확장되는 추세임을 파악하였다. 호주의 사례(virtual excursions)와 같이

기후 위기나 감염병 등 외부 환경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의 체험학습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고 있다. 이는 국내 현장체험학습의 범위 또한 물리적 장소 이동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활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현장체험학습의 정책적 의의는 ‘학생 주도성 함양’과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의 균형에 있음을 규명하였다. 체험 중심의 학습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핵심 기제이지만, 이는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만 지속 가능하다. 영국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 기반 관리나 일본의 체계적 사전답사 제도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을 ‘규제’가 아닌 ‘필수 인프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2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8. 현장체험학습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 구분 | 주요 내용 | 시사점 |
|---------|--|--|
| 개념의 공공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학습은 단순 여가가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교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공식적 교육활동’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정 시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 유형의 확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형/일일형의 물리적 구분을 넘어, 호주 사례와 같이 가상·온라인 체험 등 미래형 학습 모델로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등 비상시에도 교육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 도입 검토 |
| 교육적 가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협동심,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기능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학습이 단순 행사가 아닌 ‘필수 교육과정’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 국의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국은 체험학습을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명문화하고, 전문 인력(EVC 등)과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적 효과와 안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의 지원체계와 표준 운영 모델 개발 필요 |

○ — 제3장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및 제도적 쟁점

- 1.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비교
- 2. 국내외 법령 및 안전관리 시스템 분석
- 3.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상 한계 및
제도적 개선 과제
- 4. 요약 및 소결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 실태와 법적 기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현황과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쟁점을 도출한다.

1.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비교

1) 국내

체험학습과 교육여행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과정 연계 학습을 위한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교사들이 체험학습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부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리하도록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현황

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는 「학교안전법」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이 장의 1.~3.은 남화성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전명기 박사(청소년과 미래활동)가 집필하였고, 4.는 권오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① 책임 체계 및 운영 원칙

- 교장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현장체험학습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는 주요 책임을 담당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4).
- 현장체험학습 참여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4).
-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대책이 뒷받침된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경기도교육청, 2023.6.).

② 안전관리 체계

- 학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 예방 및 학생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충청북도교육청, 2024).
- 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의 경우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50명당 1명 동반해야 하며, 사전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충청일보, 2024.4.21.).
- 교육 여행 활성화 위원회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다양한 검토와 지원이 이루어진다(충청북도교육청, 2024).

③ 사전교육 및 준비

-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의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안전교육 및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2024).
- 각 시·도교육청별로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 활동 운영 방향」을 반영한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19).

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는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교사 업무 부담의 실태

가. 교사 업무 부담의 일반적 원인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 부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복잡성과 전인적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더욱 거대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학생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전인적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교사들에게 단순 교과 지도 이상의 과업을 요구하며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김대현 외, 2013).

둘째,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층적으로 확장되었다. 교사의 전문성 영역이 기존의 교과 지도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으로 복잡하게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역할 수행 자체가 교사들에게 큰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강정은, 송다영, 2024; 김이영, 2023).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두 연구자의 논문은 각각 보육교사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 영역의 확장이 교사 효능감 저하와 소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초·중등교육 현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통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잦은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적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빈번한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는 업무 절차의 재정립과 새로운 역량 함양을 요구하며, 이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넷째, 학교 기능의 물리적·기능적으로 확장되었다.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되면서 평생교육 활성화와 같은 비전통적 업무가 더해졌고, 이는 교사들의 업무 범위를 학교 울타리 밖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관련 교사 부담의 구체적 실태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여행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겪고 있는 부담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다. 교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 시 개인이 져야 하는 민·형사상 책임이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대구 MBC, 2025.4.12.).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충청투데이, 2025.2.28.). 2025년 6월 21일부터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학교안전법」 개정안²⁾이 시행되었다(부산일보, 2025.6.24.). 현재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의의무’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뉴시스, 2025.4.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의무’의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의 실질적인 부담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잡한 행정업무 처리 부담이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자 보험이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신청 처리 업무,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행정절차, 사전 컨설팅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된다(교육희망, 2024.5.16.). 특히 학교에 돌아와서도 각종 사후 처리 업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 인솔 및 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교내 각종 행사(수련회,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등) 실시 및 사후 처리에 대한 업무 부담이 교사들의 전반적인 업무 과중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무한 책임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교사도 인간으로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교육언론[장], 2025.3.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교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압박감은 교사들로 하여금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부담 증가이다. 최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교사 개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이 속속 취소되거나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²⁾. 이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으로 인해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출처: <https://21erick.org/column/15670/> 에서 2025년 9월 3일 인출.

(3)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부담 해소를 위한 방향 모색

가. 법적·제도적 개선

첫째, 현재 '안전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부산일보, 2025.6.24.). 교사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해석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판례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개인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EBS, 2025.7.23.).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안전 지원체계 강화 방안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24).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경비를 전체 학교에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교육적 측면에 집중하고, 안전관리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도권 교육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교원 부담이 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대신 당일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각 학교를 묶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호일보, 2024.3.11.). 이는 개별 학교가 부담하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다.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

첫째, 관리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안전교육 개선 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안전한 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리자용 체험 중심 안전연수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 안전관리 교직원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제도 변화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체계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같이,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 형식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부터 실행,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현장 지원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사 부담 완화 및 안전 보조인력 배치, 철저한 사전사고 예방 교육과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³⁾.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개선과 현장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과 교육여행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과정 연계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부담은 이러한 교육활동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들의 부담은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인한 불안감, 복잡한 행정업무, 무한 책임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 다층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기준 설정, 체계적인 제도 개선, 전문 안전 인력 배치 및 지원,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합 운영,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의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안전에 대한 과도한 부담 없이 교육적 측면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은 안전하고 의미 있는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 주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정책적 의지가 결합될 때 가능하다.

3) 출처: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3862982532?trackingCode=rss> 에서 2025년 9월 5일 인출.

2) 국외

(1) 일본

일본의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정규적인 학교행사로 편성되며, 운영의 중심에는 교사의 기획과 안전관리가 놓여 있다. 일본의 현장체험학습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내 정규 행사로 편성되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기획-준비-실행-사후 학습의 체계적인 단계적 절차로 구체화되어 운영된다(東京都教育委員会,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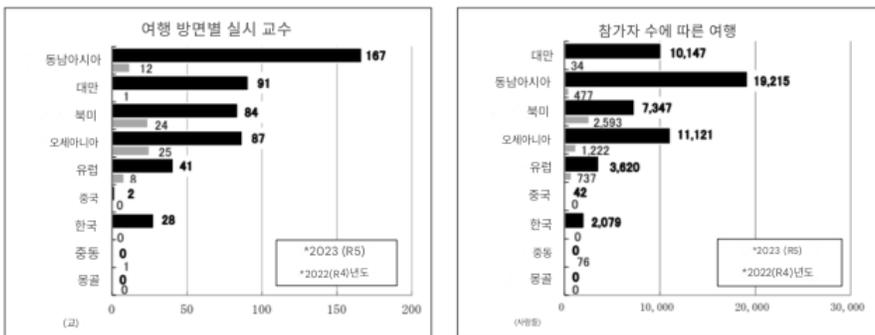
도쿄도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단계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東京都教育委員会, 2019). 먼저, 기획 단계에서 교사는 학년별 목표와 발달 수준에 맞는 활동 목적지를 설정하고, 교장이 이를 승인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교사가 사전답사(下見)를 통해 교통·숙박·응급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일정과 안전 대책을 공유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인솔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조 편성·위험 점검표·응급 연락망을 활용하여 안전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사후 학습 단계에서는 보고서 작성, 발표, 토론 등을 통해 경험을 학습 성과로 환류한다. 이 네 단계 구조는 단순한 운영 절차가 아니라,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 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운영 원리라 할 수 있다(東京都教育委員会, 2019).

이처럼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운영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都道府県·政令指定都市) 교육위원회가 제정하는 '실시기준(実施基準)'에 의해 규정된다. 실시기준은 수학여행이나 숙박행사 운영 시 사전답사 실시, 학부모 설명회 개최, 인솔 교사 배치 기준, 응급 대응체계 수립, 여행 기간·비용 상한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수학여행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修学旅行等の実施に関する指針)'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며, 각 학교가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 실시기준은 공익재단법인 일본수학여행협회(公益財団法人 日本修学旅行協会)나 전국수학여행연구협회(公益財団法人 全国修学旅行研究協会)와 같은 조직을 통해 매년 취합되어 공표되고 있다(日本修学旅行協会, 2024). 이를 통해 학교는 개별 지침뿐 아니라 전국적 기준의 흐름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수학여행은 일본 현장체험학습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전관리가 중요한 행사로, 전국 단위의 현황 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공익재단법인

전국수학여행연구협회는 매년 「전국수학여행실시상황조사(全国修学旅行実施状況調査)」를 진행하여 ‘수학여행정보센터 수학여행닷컴(修学旅行情報センター 修学旅行ドットコム)’이라는 웹사이트⁴⁾를 통해 조사 결과와 연구 보고를 공개하고 있다(全国修学旅行研究協會, 2025). 전국수학여행조사 자료에는 국내·해외 수학여행의 실시 현황과 참가 학생 수, 목적지 분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각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 발간된 2023년도 현황 조사 결과에서는 해외 수학여행 관련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전국 47개 시도부현 중 43개 시도부현에서 총 359개 고등학교(공립 123교, 사립 236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실시하였으며, 참가 학생은 49,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全国修学旅行研究協會, 2025).

한편, 일본수학여행협회에서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인 「교육여행조사(教育旅行調査)」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여행연보 데이터북(教育旅行年報データブック) 등 유료 간행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日本修学旅行協會, 2024).



* 출처: 全国修学旅行研究協會(2025). 2023(令和)5年度 全国修学旅行実施状況調査. p.74의 그래프를 번역하여 제시함.

그림 III-1. 일본 2022~2023학년도 해외 수학여행 방문 국가별 현황

4) 수학여행정보센터 수학여행닷컴 사이트는 <https://shugakuryoko.com/> 이다.

(2) 영국

영국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과 학습을 확장하고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적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은 학교 밖 교육활동(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을 장려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의 위험도에 따라 승인 절차를 차등화하는 합리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특히 각 활동에는 ‘현장체험학습 지도자(Visit Leader)’가 지정되어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교장과 지방 교육청의 단계적 승인을 통해 관리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영국 교육부와 보건안전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 작업보다 ‘실제 위험(real risks) 관리’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이처럼 영국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 지도자-학교장-지방 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는 학교 자율성과 공적 책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운영 체계를 할 수 있다.

특히,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School Trips」에서 학교와 교직원들은 “불필요한 서류 작성보다 실제 위험(real risks)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 예컨대, 도보 이동이나 짧은 지역 방문과 같은 저위험 활동은 간단한 확인과 승인으로 충분하지만, 수상 활동이나 해외 방문처럼 고위험 활동은 상세한 위험평가와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이 원칙은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실질적 안전 확보에 집중하는 운영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영국 교육부(DfE)의 지침은 간결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표준 지침으로 자리 잡은 것은 지방 교육청과 야외활동(outdoor education)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인 Outdoor Education Advisers' Panel(이하, OEAP)가 제공하는 「National Guidance」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별 책임(현장체험학습 지도자, 교장, 교육청, 거버넌스 등), 활동 유형별 위험관리, 정책·평가 양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AP의 지침에서는 모든 학교가 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며, 실제로 많은 지방 교육청이 이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다(OEAP, 2023). 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는 교장이 임명하며, 부교장이나 수석 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고, 만약 학교에

5) 출처: <https://www.hse.gov.uk/education/school-trips.htm> 에서 2025년 9월 4일 인출.

별도의 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가 없을 경우, 교장이 직접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OEAP, 2023). 이들의 주요 임무는 학교 차원의 현장체험학습 정책 수립·갱신, 현장체험 학습 지도자가 제출한 계획과 위험평가 검토, 교직원 훈련·자문, 외부 제공기관의 안전성 검증, 방문 종료 후 평가·사고 기록 관리 등이다(OEAP, 2023). 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는 학교 내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질을 보장하는 감독자 역할을 하며, 지방 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의 훈련과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OEAP, 2023).

위와 같은 영국의 현장체험학습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은 학교 및 지역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이나 관리 체계를 통해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런던 해머스미스와 풀럼 자치구(London Borough of Hammersmith & Fulham) 교육청에서는 OEAP의 국가 지침을 반영한 자체적인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지침(Guidance for Off-Site Visits and Related Activities with National Guidelines and EVOLVE)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침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인 'EVOLVE'⁶⁾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London Borough of Hammersmith & Fulham, 2024).

EVOLVE는 영국의 현장체험학습 관리 전문 민간 기업인 eduFOCUS가 개발하여 영국 전역 19,000여 개 이상의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온라인 정보 관리 시스템이다. EVOLVE는 온라인상에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교장과 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 필요시 교육청이 이를 단계별로 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 유형별 위험평가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교사가 안전 관련 요소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학부모 동의서, 보험 증서, 응급 연락망 등 관련 문서 역시 시스템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사고나 사고 직전 상황(near miss)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 교육청에서 수집·집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London Borough of Hammersmith & Fulham, 2024). 이 사례는 현장체험학습 분야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교육청이 데이터 기반 현장체험학습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EVOLVE 웹사이트는 <https://evolve.edufocus.co.uk/> 이다.

(3) 미국

미국의 현장체험학습(Field Trips, Excursions)은 연방 차원의 단일 지침이 아니라 주와 학군의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학생 안전 확보, 학부모 동의, 교사 지도 책임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현장체험학습 현황과 관련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시애틀 공립학교와 뉴욕시 교육청, 캘리포니아주 등의 사례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워싱턴에서 가장 큰 공립 학군인 시애틀 공립학교(Seattle Public Schools)(이하, SPS)는 「Administrative Procedure 2320-A」의 'FIELD TRIPS AND EXCURSIONS: General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All Field Trips'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교장이 승인하며, 위험도와 활동 유형에 따라 당일 활동은 교장 승인으로 충분하지만, 숙박형 활동은 교육청의 추가 승인을 거쳐야 하고, 해외 활동은 교장과 교육청의 검토에 이어 교육감(superintendent)의 최종 승인을 필요로 한다(Seattle Public Schools, 2018a). 또한 계획서 제출 시한을 활동 유형별로 달리 규정하여, 당일 활동은 최소 4주 전, 숙박형이나 국제 활동은 12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1일형, 숙박형, 해외형 활동 각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와 체크리스트가 다르게 적용된다(Seattle Public Schools, 2018a). 또한, 모든 활동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수적이며,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인솔자(chaperone)는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보조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원 조회(background check)를 거쳐야 하며, 시애틀 공립학교(SPS)의 교직원(staff member)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Seattle Public Schools, 2018a).

표 III-1. 미국 시애틀 공립학교 procedure 2320-A의 Field Trip 유형별 승인 절차

| 유형 | 주요 활동 예시 | 계획서 제출 시한 | 승인 단계 |
|---|---------------------------|-----------|-------------------|
| 당일형 현장 학습 (Day Field Trip) | 지역 과학관 견학, 시립 도서관 방문 등 | 최소 4주 전 | 교장 승인 |
| 숙박형 현장 학습 (Overnight Field Trip) | 자연캠프, 주 내 탐방학습 등 | 최소 12주 전 | 교장+교육청 승인 |
| 해외형 현장 체험 (International Field Trip) | 해외 문화교류, 자매학교 방문 등 | | 교장+교육청 +교육감 승인 |

* 출처: Seattle Public Schools(2018a). FIELD TRIPS AND EXCURSIONS: General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All Field Trips의 내용을 번역·정리함.

뉴욕시 교육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이하, NYC DoE)는 「Chancellor's Regulation A-670: School Trips」을 통해 체험학습을 관리한다. 모든 활동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 방문은 지역 교육청 교육감(superintendent)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사·학생의 비율은 교급에 따라서 초등학교 1대 10, 중학교 1대 15, 고등학교 1대 25로 설정되어 있으며, 고위험 활동에는 추가 인력이 배치된다(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또한, 해외 활동의 경우 학생과 인솔자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외부 기관을 활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수반되는 교통, 보험, 계약, 지출 등록은 의무적으로 뉴욕시 교육부(NYC DoE)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앙에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35330조(Education Code § 35330)」를 통해 학군 이사회가 교과 과정 또는 학교 관련 활동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주 내·타주·해외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에서는 교원 자격을 가진 직원이 반드시 학생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한다. 특히, 다른 주(out-of-state) 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와 보호자로부터 '면책 동의서(waiver)'에 대한 서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서류는 사고, 상해, 질병, 사망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군이나 학교,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waiver는 교사와 학교, 학군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운영 주체가 사전에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안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압박하는 제도로 작용한다.

(4) 호주

호주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state) 단위에서 교육정책을 수립·운영하는 체제이므로, 현장체험학습(excursions)의 정의와 운영 방식 역시 각 주 교육부 지침에 의해 규율된다. 그중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의 정책은 대표적 사례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NSW DoE) 정책문서 「Excursions and variations of routine」에서 제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승인 체계, 위험평가, 감독

책임, 보호자 동의, 사고 보고이다. 모든 활동은 교장(principal)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활동 범위와 성격에 따라 승인 단계가 확대된다(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2025b). 특히 주 간(interstate) 이동이나 해외(excursions overseas) 활동은 지역 교육장(director, educational leadership)과 주 교육부 본부 상급 관리자(executive director)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2025b). 이와 같은 다단계 승인 구조는 안전 확보와 교육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⁷⁾.

또한, 모든 활동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2025b). 학교는 교통, 숙박, 응급 의료 체계 등 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은 학생에 대한 돌봄 의무(duty of care)를 가지며, 학생 보호자(parent/carer)의 '서면 동의(consent form)'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2025b). 특히, 활동 중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기록 관리 및 사후 대응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운영 체계는 학교 단위 정책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예컨대, Kariong Mountains High School은 2025년 제정한 자체 학생 현장체험학습 정책(Student Excursion Policy)에서 숙박형 및 해외 활동 시 교장 승인, 위험평가, 인솔자 책임, 보호자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Kariong Mountains High School, 2025), Irrawang Public School 역시 2024년 정책에서 해외 견학에 대한 교육부 승인 절차와 기록 보존, 사고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Irrawang Public School, 2024). 이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 지침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 절차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기존의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상 견학(virtual excursions)'이 학교 현장에서 보완적으로 활용되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NSW DoE)는 「Virtual excursions bring the world to the classroom」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가 제공하는 DART(Distance and Rural Technology) Learning 플랫폼⁸⁾을 통해 학생들이 박물관, 도서관, 자연환경 기관과 연결된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⁹⁾. 이는 정책 문서에 명문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디지털

7) 출처: https://california.public.law/codes/education_code_section_35330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8) 2025년 9월 현재 페이지 폐쇄 후 Virtual Excursions Australia 활용하고 있다.

9) 출처: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virtual-excursions-bring-the-world-to>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현장체험학습의 형태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현재에는 가상 견학과 관련된 호주의 문화·교육기관 협력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Virtual Excursions Australia¹⁰⁾를 통해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호주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주 단위 분권 체제 속에서 안전과 감독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승인 절차, 위험평가, 보호자 동의, 사고 보고 체계를 기본 축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을 계기로 가상 견학(virtual excursions)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의 개념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he-classroom 에서 2025년 9월 7일 인출.

10) Virtual Excursions Australia 사이트는 <https://www.virtualexcursionsaustralia.com.au/> 이다.

2. 국내외 법령 및 안전관리 시스템 분석

1) 국내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상위법을 근간으로 하며, 「학교안전법」에서 안전과 보상 규정을 보완한다. 이에 더해 시행령·시행규칙들이 세부 운영 절차와 안전관리 요건을 구체화하고, 시·도교육청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최종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운영 매뉴얼과 각 학교별 규칙을 통해 현장 맞춤형 운영과 안전 교육을 실행하여 학생 안전과 교육 효과를 확보하는 체계적 위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 |
|----------------|--|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 현장체험학습의 최상위법적 근거 제공 |
| 시행령/시행규칙 | ■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위법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세부기준 규정 (교육부에서 운영지침 마련) |
| 사도교육청 조례 | ■ 실무진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 제시 (교육부 운영지침 반영) |
| 사도교육청 운영 매뉴얼 |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체험학습 운영기준 마련 |
| 학교별 규칙 | ■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 |

그림 III-2. 현장체험학습의 법령 및 규칙 체계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조문

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 교육과정 중 교과(군) 외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칭한다.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른 ‘교외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이 교육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면 이를 허가하고 학칙에 의거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박물관이나 유적지 탐방과 같은 학습 목적의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 여행이나 경조사 참여 등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공식적인 학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교육부의 운영 지침 등과 각 시·도교육청의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되며,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의 법적 및 제도적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법적 기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이 핵심 근거이다. 이 조항은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이를 학칙에 따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제도적 구체화: 법령의 기본 원칙은 교육부의 지침과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규정들은 현장체험학습의 유형(1일형, 숙박형)을 정의하고, 운영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 ③ 핵심 강조 사항: 모든 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학생 안전관리이다. 각 교육청은 '학생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안전교육, 인력 배치, 비상 대응 계획 등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를 지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이 부여한 학교장의 재량하에, 교육청이 마련한 안전관리 지침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일부인 교육활동이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고시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 밖 교육활동 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의 책임 및 교원 면책, 보조인력 배치 근거를 신설하여 교육현장의 안전과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연 2회 이상의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 훈련을 의무화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각 조문과 세부 시행지침들은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보상 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역할을 한다.

가. 법률의 개요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문¹¹⁾

「학교안전법」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률 제1조).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학교 등을 포함하며, ‘교육활동’에는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학교장 등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 노력을 다해야 하며(법률 제5조),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법률 제8조). 2024년 12월 신설된 법률 제10조의4에 따라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인솔 교원을 보조하는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보조인력의 배치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10조의4 제3항). 법률 제10조 제5항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심리 상담 등의 신속한 보상은 법률 제10조의3과 제11조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나. 시행령의 주요 조문¹²⁾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는 교육활동 시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등·하교 시간, 휴식 및 교육활동 전후 시간, 직업 체험·현장실습 시간 등을 교육활동 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어 현장체험학습의 전 과정이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11) 출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1.21. 일부개정, 법률 제20669호).

12) 출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7.2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58호).

학교장의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0조의2는 학교장이 매 학기 교육활동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 밖 활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시설의 사전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¹³⁾

시행규칙과 고시에서는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교육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은 교직원의 이수 기준과 실적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교직원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3년 미만 계약직 종사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또는 6개월마다 2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시 제5조에 따라 학교는 학기 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교육 기관 등 모든 교육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13) 출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7.22.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63호).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3.10.16. 일부개정, 교육부고시 제2023-33호).

(3) 시·도교육청 조례

각 시·도교육청은 목적, 안전교육, 현장답사 방식, 지원계획 등에서 공통점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실정 및 정책방향에 따라 각각 조문을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II-2.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조례별 주요 조문 비교

| 구분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
|---------|--------------------------|---------------------------|--------------------------|
| 목적 | 학교 밖 교육활동 통한 적성·창의성 함양 | 학생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 학생안전관리 위한 사항 규정 |
| 정의 | 소규모 테마형·숙박형, 1일형 등 유형 명확 |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1일형 등 |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1일형 등 |
| 교육감 책무 | 효과적 운영 위한 지원시책 마련 | 안전사고 예방 위한 행정·재정 지원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책임 |
| 지원계획 | 지역·장애학생 등 포괄, 협력체계 구축 |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지역 금지 등) | 학생보험, 위험지역 금지 등 포함 |
| 안전교육 | 학교장이 체험 전 안전교육 필수 | 체험 전 교사·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 체험 전·중 안전교육, 매뉴얼 제작 |
| 현장답사 | 온라인·현장답사 모두 인정 | 위험시설, 경로 등 직접 현장답사 원칙 | 학교장이 필수로 현장답사 수행 |
| 긴급상황 조치 | 별도 명시 없음(학생안전관리에서 규정) | 인솔자 등 응급처치, 학교장 보고 의무 | 비상연락망, 응급처치 기준 명시 |
| 기타 특이사항 | 민관 협력, 장애학생 안전환경 중점 | 위험시설 접근 금지, 현장답사 생략 조건 명시 | 현장체험학습위원회 운영, 학교 교육계획 연계 |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7.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9692호),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2025.7.31. 전부개정, 경상남도조례 제5891호),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2025.6.26. 일부개정, 전라남도조례 제6328호)의 내용을 정리함.

(4) 시·도교육청 운영 매뉴얼

시·도교육청은 매년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포괄적인 안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법적 근거로 하여,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및 체육·수영·야영 등 생존수업을 대상으로 한다. 매뉴얼의 핵심 목적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체험학습 등 학교 밖 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절차, 기준,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체험학습 유형 분류

매뉴얼은 현장체험학습을 숙박 여부, 참가 규모, 지역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숙박형은 1박 2일 이상의 교육과정 연계 주제별 체험활동으로 수학여행을 포함하며, 1일형은 당일치기 비숙박 활동으로 정의된다. 국외형은 해외 연수 및 문화체험활동이며, 소규모는 3학년 이하 또는 참가학생 100명 미만의 활동으로 구분된다. 참가 규모에 따라서는 100명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규모로 나뉘며, 이러한 분류는 각각 다른 안전 기준과 운영 절차를 적용받는다.

나. 운영 절차의 체계화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9단계의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반영과 안전대책 포함이 필수이며, 숙박형의 경우 세부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활성화위원회는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5~11명 이내로 구성되며, 1일형의 경우 답사 시에만 필수적으로 운영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모든 유형에서 필수이며, 현장답사는 숙박형과 대규모에서 1회 이상 의무화되어 있다. 학부모 동의는 숙박형에서 90% 이상, 1일형은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 안전관리

① 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보험가입은 숙박형과 고위험활동을 포함한 1일형에서 의무사항으로, 여행자 보험 또는 여행자 안심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전안전교육은 전체 학생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차량안전, 성범죄예방,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교육도아 시스템을 통한 사전·사후 정보 입력은 숙박형에서 의무이며, 1일형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교육지원청 컨설팅은 대규모, 국외, 고위험활동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소규모는 필요시에만 실시한다.

② 인솔 및 안전인력 기준

인솔자는 학급당 2명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교사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소규모에서는 50명당 1명 권장, 대규

모와 국외에서는 50명당 1명이 의무사항이다. 수련활동 시에는 수련원 지도사가 50명당 1명씩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안전요원과 인솔자는 안전연수 이수자에 한해 겸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③ 차량 및 운송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버스 이용이 필수이며,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운전자는 당일 출발 전 음주측정 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며, 운전자자격증과 버스운수종사자보험을 확인받아야 한다. 학교는 보유 장비로 당일 재측정을 권장하며, 음주측정 기록지 미제출 시에는 의무사항이 된다. 계약서, 실제 차량, 번호판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도록 하여 차량 안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④ 식품안전 및 감염병 예방 체계

식중독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이용업체 선정·사고발생 시의 3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급식소와 식당 정보를 통보하고, 최근 1년 이내 소방·전기·가스·위생 점검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업체 선정 시에는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적정' 이상 등급을 받은 수련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수련시설과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사고 발생 시 2명 이상의 유사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 보건소 신고, 학교장 보고 순으로 대응해야 한다.

⑤ 고위험활동 안전 기준

수상, 항공, 산악, 레포츠 등 고위험활동에서는 인증된 시설과 강사를 이용하고, 안전장비 착용과 응급처치요원 상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야영과 야외취사 활동에서는 소방서 협조, 화재예방교육 실시, 소화기 비치기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기준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다.

⑥ 국외 현장체험학습 특별 관리

국외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의무 컨설팅을 계획단계부터 실시 전까지 받아야 하며, 학부모 동의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답사는 1회 이상 실제 인솔자 중심으로 실시하되, 매년 동일 노선의 경우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대사관, 영사관, 여행사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하며, 병원비와 항공료 변경 등에 대비한 예비비를 학교 예산으로 선지급한 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⑦ 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사고발생 시에는 5단계 대응 절차를 따르도록 하였다. 즉시 119, 경찰, 보건소에 신고하고, 학교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교장에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순으로 보고한다. 경비는 학교에서 선지급한 후 보험이나 공제로 처리하여 정산하며, 식중독과 집단감염의 경우 보건소 의무신고를 실시한다. 사후에는 교육지원청을 거쳐 도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되, 국립학교는 교육부에도 동시 보고해야 한다.

⑧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

반부패와 청렴 조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업체, 인솔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음, 편의 제공을 금지하며, 계약 투명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학생 무료입장 시에는 사전계획서에 선정기준과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모든 경비는 학교 예산으로 지출하고, 인솔 교직원의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무 명령을 통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시도별 차이점 및 특색

공통된 기반 위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특색 있는 지원책을 운영한다.

- 서울특별시: 1일형과 숙박형(수련활동·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하여 유형별 맞춤형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 경기도: ‘안전 매뉴얼’을 별도로 편찬하여, 현장체험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 인천광역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내실 있는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합동 사전답사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학교 지원책을 운영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길라잡이’ 및 ‘안내서’ 형태: 강원, 충남, 전북, 제주, 경북 등 다수 교육청은 ‘매뉴얼’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길라잡이’ 또는 ‘안내서’ 형태로 자료를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025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은 안전을 전제로 한 교육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소규모 중심의 단계별 절차, 사전 예방,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지침으로서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활성화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며, 법적 기준과 도교육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매뉴얼들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5)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와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와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가 도입된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이 단순 관람에서 체험, 레포트, 해외 활동으로 확대되면서 규모와 위험도가 급증하고 사고 유형도 다양화되고 중대화되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법」, 행정소송 판례 등이 학교에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안전무한책임’이 강화되었다. 셋째, 여행사와 수련업체의 90% 이상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품질과 안전 수준의 편차가 심화되었다. 넷째, 「지방계약법」과 청렴법에 따른 반부패와 투명성 압박으로 수의계약 요건을 객관적 인증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다섯째,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일일이 허가하는 방식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025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법적 근거로 하여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와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학교 밖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품질과 안전을 사전에 검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보함으로써 학교가 민간업체와의 위탁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로,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을 국가가 공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인증된 활동은 ‘인증수련활동’으로 명명되며, 참여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증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성 및 유익성 보장

이 제도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내용, 수준, 안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만을 인증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② 활동 기록의 체계적 관리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은 국가가 유지·관리하며, 이러한 기록은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 가능한 포트폴리오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증된 프로그램은 e-청소년 사이트를 통해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양한 영역의 활동 포괄

인증 대상이 되는 청소년활동은 건강/스포츠, 모험개척, 역사탐방, 봉사협력, 진로탐구,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지원을 지향한다.

④ 신청 및 운영 주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의 신청은 청소년 지도자, 개인, 법인, 단체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가 할 수 있다. 신청 및 심사 과정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 기관이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볼 때, 인증제는 학교 밖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품질과 안전을 국가가 사전에 검증하여 학교와 교육청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은 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범주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국제교류활동 등으로, 인증 기준은 운영기간 2일 1박 이상, 참가인원 1회 20명 이상, 전문강사 1명 이상 배치, 위험활동 시 안전장비와 보험 가입,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 계획서 제출, 금품과 향응, 편의제공 금지 서약 포함 등의 구체적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당일형 프로그램은 총 운영시간이 2시간 이상이며, 활동이 실시된 날에 종료되거나 1일 1시간 이상의 각 회기(세션)로 1일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기본형 인증활동으로 인증 대상이 된다. 이는 숙박형 활동과 달리, 당일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숙박 없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한 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제도의 운영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서면 심사와 필요시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결과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의 '인증 프로그램'으로公示된다. 사후 관리로는 매년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자 만족도와 안전사고 유무 등을 보고해야 한다. 사고 발생, 허위신고, 금품수수 등의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둘째, 학교가 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적 편의를 가질 수 있다. 대규모 숙박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증서상 이미 안전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어 안전요원 배정 의무가 감면된다. 특히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증프로그램 이용 시 공공입찰을 면제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예산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나.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는 인증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도 학교가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관할 기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는 '인증 없이 1회성 위탁운영'의 문을 열어두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설계이다. 신고 대상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편입되며 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1회성 또는 시범운영이며 20명 이상이 참가하는 활동이다.

① 신고제의 절차와 제출 서류

신고제의 신고 절차는 활동 개시 14일 전까지 운영자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시도에서 3일 이내에 접수와 확인을 하고, 증빙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한다. 활동 7일 전까지 결과를 통지하며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신고 프로그램' 탭에 공개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사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출 서류로는 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운영인력 명단, 학교 위탁계약서 또는 학교확인서, 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하다.

② 신고제 활용 시 학교의 주의사항

신고필증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이 의무화되며, 신고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도 책임을 져야 하고 사후 7일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고제도가 단순한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 학교의 안전 책임과 직결된 중요한 안전관리 도구임을 보여준다.

다. 인증제와 신고제의 비교 및 적용

인증제는 품질과 안전을 사전 검증하는 2년 유효의 종합적 품질보증제도로, 서면과 현장 심사를 거쳐 최소 30일의 심사기간을 요구한다. 반면 신고제는 일회성 프로그램의 안전 최소 확인제도로, 14일 전 신고 후 7일 전 통지하는 서면 확인 절차만을 거친다. 학교 혜택 면에서 인증제는 컨설팅 면제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신고제는 신고필증이 없으면 컨설팅이 의무화된다.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할 때는 먼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의 '인증프로

그램'을 검색하여 예산과 절차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인증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업체에 '신고제' 활용을 요청하되 14일 전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필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이 의무가 되므로 세부계획서와 자체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사후감사에 대비하여 계약서, 보험가입증, 음주측정기록지 등의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라. 두 제도의 운영 매뉴얼 반영 합의

인증제와 신고제의 본질은 '학교가 민간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전제로, '안전 책임은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민간의 품질과 안전을 검증하고 공개'하는 '선 검증-후 이용'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모든 숙박형 체험활동에 대해 품질과 안전을 사전에 검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의 행정적 법적 부담을 줄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시장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인증제와 신고제는 시·도교육청 운영 매뉴얼 핵심 원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규모 중심 운영 원칙에서는 인증프로그램이 대규모 고위험도 활동을 사전 검증하여 소규모로 분할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법령과 조례 준수 측면에서는 두 제도 모두 「청소년활동법」에 근거하여 학교의 책임 위험을 감소시킨다. 사전 안전교육과 보험 가입에서는 인증과 신고 모두 보험 가입과 응급요원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여 사고에 대비한다. 투명성과 공개성에서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한 일괄 공개로 학부모와 학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반부패와 청렴성에서는 인증이 객관적 선정기준을 제공하여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입찰 전횡과 금품수수를 원천 차단한다. 사고 시 신속대응에서는 인증과 신고 정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업체, 시설, 인력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매뉴얼 전체 구성에서 두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학교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인증프로그램을 우선 검색하도록 안내하고, 위원회 심의에서는 활성화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증서나 신고필증을 확인한 후 선정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계약과 컨설팅 단계에서는 인증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신고의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의무 면제는 불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에는 도교육청과 보건소가 인증이나 신고 번호로 업체, 시설, 인력을 즉시 추적할 수 있으며,

사후평가에서는 만족도와 사고 이력이 다음 연도 인증 연장이나 신고에 반영된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와 신고제는 매뉴얼 전체가 추구하는 ‘소규모, 안전, 투명, 청렴’이라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인증제는 품질보증과 행정절차 감면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하고, 신고제는 1회성 시범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학교는 인증프로그램 우선 활용, 신고제 활용, 직접계획 순으로 고려함으로써 행정 부담은 감소시키고 안전성은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 국외

(1) 일본

일본의 현장체험학습은 법률, 교육과정 지침, 행정계획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층적 제도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적 효과를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 내의 활동 전반에서 학생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일본은 「학교보건안전법(学校保健安全法)」, 「학교안전 지침(学校安全指導)」, 그리고 최근 채택된 「제3차 학교안전추진계획(第3次学校安全の推進に関する計画)」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의 안전 확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22).

가장 상위의 법적 근거는 1958년에 제정되어 이후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온 「학교보건안전법(学校保健安全法)」¹⁴⁾으로,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주관하는 문부과학성과 보건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양 부처와 관련된 법령이다. 이 법 제1조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학교장이 보건·안전관리 체계를 조직적으로 마련할 의무를 지니며, 교직원은 학생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발생 시 응급조치를 포함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규정은 교내 활동뿐 아니라 교외 체험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장체험학습이 법률적 안전 확보 의무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14) 출처: <https://laws.e-gov.go.jp/law/333AC0000000056>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그리고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보건안전법 시행규칙(学校保健安全法施行規則)」¹⁵⁾은 건강진단, 환경위생검사, 시설 안전 점검과 같은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매 학년 정기적으로 학생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시 임시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급식시설, 음용수, 교실 환경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과 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점검 결과는 교외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의 안전계획에 반영된다. 이처럼 법률과 시행규칙은 학생의 건강 상태와 교육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활동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행정 차원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수립한 「학습지도요령(学習指導要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7년 개정된 특별활동 편은 현장체험학습을 소풍, 수학여행, 숙박형 체험활동 등과 함께 정규 학교행사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교육 목표와 연계된 계획-실행-평가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다(文部科学省, 2017b). 이 지침은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사실상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기능하며, 체험학습의 교육적 정당성과 제도적 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2022년에 발표된 「제3차 학교안전추진계획(第3次学校安全の推進に関する計画)」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문부과학성은 동 계획을 2022년 3월 각의 결정으로 확정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22). 계획의 기본 목표는 학교 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아동 사망사고를 제로에 가깝게 줄이고, 장애나 중상을 초래하는 사고를 포함한 전반적 사고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文部科学省, 2022). 이 계획에서는 안전한 학교환경 정비, 조직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재교육,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3차 학교안전추진계획(第3次学校安全の推進に関する計画)」에서는 학교안전 계획과 위기 대응 매뉴얼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는 매년 기존 안전계획과 위기대응 매뉴얼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과 최근 사고 사례를 반영하여 갱신해야 한다. 지역 교육위원회는 이를 감독·지원할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15) 출처: <https://laws.e-gov.go.jp/law/333M50000080018>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사회, 보호자는 학교 안전관리와 위기대응 훈련에 참여하는 협력자로서 역할한다(文部科学省, 2022). 이와 같은 체계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학교활동에서 안전교육과 위기관리가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절차로 운영되도록 만든다.

종합하면 일본은 법률 차원에서 학교장의 안전관리 의무와 교직원의 학생 안전 확보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을 통해 건강검진과 환경위생검사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지침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정규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학교안전추진계획을 통해 안전 확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문부과학성은 법과 정책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해 주는 실무 지원 체계로 기능한다. 따라서 일본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효과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법률, 정책, 지침, 자료 제공 체계가 결합된 다층적 운영 기반 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안전관리 체계에 근거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교장, 교원, 교육위원회, 보호자 및 지역사회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체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영국

영국에는 현장체험학습을 규율하는 단일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여러 수준의 법령과 지침, 권고, 그리고 민간 전문기구의 표준 지침이 상호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제도가 형성된다. 이러한 다층적 체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과 행정 지침, 권고와 민간 전문기구가 제시하는 사실상의 표준 지침이 결합하여 운영된다.

가장 상위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이하, HSAWA)으로,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은 학교와 교직원에게도 적용되며, 학생들이 교외 활동에 참여할 때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학교장과 교육 당국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한다(UK Parliament, 1974).

이 법을 기반으로 관련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영국 교육부(DfE)는 2018년에 「Health and Safety on Educational Visits」라는 행정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문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외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지침은 활동의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평가의 범위와 절차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이 이러한 절차를 승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School trips and outdoor learning activities: Tackling the health and safety myths」를 통해 해석적 기준을 제공한다. 이는 법률이나 지침과 달리 규범적 구속력은 없으나, '비례적 위험관리(proportionality principle)'라는 원칙을 제시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과도한 절차를 줄이고 실제적 위험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중시하도록 유도한다(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1). 따라서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권고는 정책 해석의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문서로 기능한다.

중앙정부의 법령 및 지침과 더불어, 현장체험학습 관련 전문가인 OEAP가 제공하는 「National Guidance」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사실상 국가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학교가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Educational Visits Coordinator)(이하, EVC)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각 방문에는 책임자가 되는 현장체험학습 지도자(visit leader)를 배치하도록 규정한다(OEAP, 2023). 현장체험학습 지도자는 활동 전체의 법적·실무적 책임을 지고 위험평가 작성, 일정 관리, 현장 안전 확보를 총괄한다(OEAP, 2023). 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는 학교 차원에서 모든 체험학습이 지침에 맞게 준비되고 승인되도록 조정하며, 지도자가 필요한 자원과 훈련을 지원한다(OEAP, 2023). 보조 지도자(assistant leaders) 및 교직원(supporting staff)은 학생 그룹을 관리하고, 현장체험학습 지도자의 지휘 아래 안전 확보와 행동 지도를 담당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학생 보호 의무를 수행한다(OEAP, 2023).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교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법적 책임은 단독으로 지지 않는다(OEAP, 2023). 이러한 역할 규정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책임 공백을 예방하고, 각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 교육청(local authority)은 「산업안전보건법(HSAWA)」의 적용 주체로서, 지역 내 학교의 안전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필요에 따라 교외 활동에 대한 추가 승인이나 제한을 부과하기도 한다. 여러 지방 교육청들은 OEAP 지침을 자체 승인 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온라인 플랫폼인 EVOLVE와 같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승인 절차, 위험평가 기록, 학부모 동의 관리 등을 일원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현장체험학습 제도는 일반 안전법을 근간으로 하고, 중앙정부 지침이 운영 원칙을 제시하며, OEAP와 같은 전문기구가 사실상 표준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감독·지원하는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법적 구속력과 행정 지침, 실무 표준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학교 외부 활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의 현장체험학습은 연방 차원의 단일 특별법이 아니라 주 교육법과 학군(district) 행정규정이 기본 규율 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위계는 주법이 활동의 실시 권한과 책임 법리를 설정하고, 학군 규정이 안전·승인·문서화의 절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주법의 대표적 사례인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35330조(California Education Code §35330)」는 공립학교가 현장체험학습(Field Trip, Excursion)을 실시할 권한을 명시하는 동시에,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교직원에 대한 ‘법정 면책(waiver)’을 명시한다¹⁶⁾. 이 조항은 현장체험학습 중이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질병·사망에 관하여 참가자가 학군, 공립학교, 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waived all claims)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언을 통해, 민사상 배상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법률로 사전에 제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는 다른 주(out-of-state) 현장학습의 경우 성인 참가자 및 학생의 보호자가 서면 진술서(statement)에 서명하여 면책을 명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책임 제한의 효력을 명시적 동의와 결부시키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waived all claims가 학교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안전 책임을 학부모·학생에게 전가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의 핵심은 일반적 과실(negligence)에 기초한 민사상 청구의 외연을 좁히는 데 있으며, 고의(intentional misconduct) 또는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에 대해서까지 면책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 해석에서도 확인된다(Wolfe v. Dublin Unified School District, 1997; Casterson v. Superior Court, 2002). 다시 말해, 학교와 교직

16) 출처: https://california.public.law/codes/education_code_section_35330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원의 합리적 안전관리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면책은 그 민사적 책임 추궁의 범위를 조정하는 규범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Wolfe v. Dublin Unified School District, 1997; Casterson v. Superior Court, 2002).

학군별 규정은 이러한 주법의 틀을 운영 표준으로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시애틀 공립학군은 공식 절차에서 여행 책임자가 해당 활동을 학교 내 활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responsible as if conducted at school)진다고 명시하여, 현장학습을 정규 교육활동의 연장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Seattle Public Schools, 2018a). 같은 틀에서 시애틀은 인솔자 연령 하한선(초·중 21세, 고 25세)과 자원봉사자 사전 심사(volunteer screening) 및 응급 대응계획, 보험 증빙 등 필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인적 안전장치(자격, 검증)와 절차적 안전망(문서화, 승인)을 제도적으로 다루고 있다(Seattle Public Schools, 2018a).

다른 학군의 사례로, 시카고 공립학군은 현장체험학습 정책에서 인솔자(chaperone)의 최소 연령으로 18세를 명시하고, 특히 숙박형 활동의 경우 범죄경력조회(criminal background check)와 결핵 검사(tuberculosis check) 등 요건을 필수로 요구하여 인솔자 선발과 관리의 객관성과 안전성을 제도화하였다(Chicago Public Schools, 2021). 또한, 뉴욕시 교육청의 「학교여행 규정 A-670」은 현장학습의 정의, 계획·승인, 감독 비율, 위험관리·문서화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군 차원의 규범이 학교 운영에서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4) 호주

호주의 현장체험학습 또한 연방 차원의 단일법이 아니라, 「작업건강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이하, WHS)이 요구하는 사업 또는 업무 주체(학교·교육청 등)의 기본 주의의무 위에 각 주·준주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excursions, camps) 규정이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추가하는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Safe Work Australia, 2025). 이 구조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을 포함해 활동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안전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as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에서 확보해야 하며, 이 원칙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afe Work Australia, 2025).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주 교육부 웹사이트의 「Excursions and Variations of Routine」 지침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계획·승인·운영하도록 하고, 교장에게 위험평가 작성·기록 보존·사고 대응 등 핵심 책임을 부여하며, 교사에게는 모든 학생에 대한 주의의무와 사전 위험관리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¹⁷⁾.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의 승인 권한(국내는 교장 승인, 해외는 교장·지역 교육청장·주 교육부 단계적 승인), 감독·동의·아동보호 요건, 보험 및 문서화 요건을 절차별로 제시해 실무 판단의 기준선을 제공한다.

다른 사례인 빅토리아(VIC)주 또한 주 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정책과 지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빅토리아주의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은 승인·동의·위험관리·응급대응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활동유형별 지침을 세분화하고 있다. 특히 「Liability, waivers and indemnities」 지침은 과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용의 면책·보상약정에 대해 학교가 동의하거나 학부모 서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해, 교육활동의 주의의무가 서류상으로 양도·약화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¹⁸⁾. 또한 「Overseas travel」 지침¹⁹⁾과 「External providers」 지침²⁰⁾은 해외 활동 시 호주 외교부 여행경보 준수, 주 정부 보험기관(VMIA) 여행·의료보험 가입 의무, 외부 제공자 보험 의존 금지, 위험평가 갱신 등을 요구해 고위험 상황의 관리 수준을 높인다.

또 다른 사례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에서는 「Camps and Excursions Policy」를 통해 사전 승인, 감독 비율, 응급계획, 기록관리 등 운영 표준을 의무화하고, 모든 문서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된 후에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South Australia, 2025). 이 정책 구조는 학교 현장에 실질적 규범으로 작동하는 절차적 안전망을 형성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South Australia, 2025).

한편, 호주 정부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차원의 「아동 안전

17) 출처: <https://education.nsw.gov.au/policy-library/policies/pd-2005-0290-04>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18) 출처: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excursions/guidance/liability-waivers-indemnities>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19) 출처: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excursions/guidance/overseas-travel>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20) 출처: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excursions/guidance/external-providers>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조직을 위한 국가 원칙(National Principles for Child Safe Organisations)에서 제시하는 아동안전(child safe) 체계는 각 주의 교육 정책과 맞물려 현장체험학습의 권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8).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에서는 주 차원의 법령인 「교육훈련개혁법(Education and Training Reform Act 2006)」을 근거로 한 장관령 1359호 「아동 안전 기준 시행: 학교 및 학교 기숙 시설 내 아동 학대 위험 관리(Implementing the child safe standards: Managing the risk of child abuse in schools and school boarding premises)」를 통해 학교의 최소 준수요건(정책·교육·신고·인력 검증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의 이행과 감독은 ‘빅토리아주 등록·자격 관리청(Victorian Registration and Qualifications Authority)’이 담당하며,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기준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숙박형 활동이나 홈스테이처럼 직접 감독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교가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아동 참여·불만 신고·자원봉사자 검증 절차를 문서화하도록 요구된다²¹⁾.

요약하면, 호주의 제도는 「작업건강안전법(WHS)」이 학교와 교육청을 포함한 사업 또는 업무 주체에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안전 확보를 최상위에서 요구하고, 주·준주 교육부 규정이 이를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승인, 감독, 문서화 등으로 구체화하며, 아동 안전 체계가 거버넌스, 인력 검증, 신고, 문화 측면을 보강하는 삼중 구조로 정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빅토리아주의 면책·보상약정 금지 원칙은 미국의 ‘법정 면책(waiver)’과는 반대로 ‘주의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라는 핵심 내용을 제도에 내재화해 위험을 학부모 동의로 이전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학교 책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 출처: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excursions/policy>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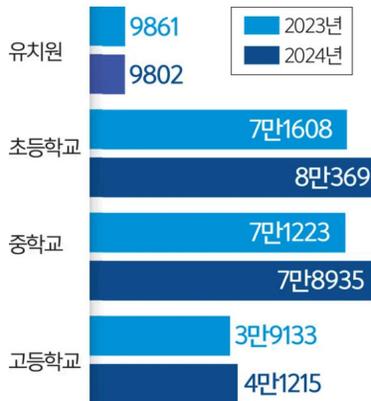
3.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상 한계 및 제도적 개선 과제

1) 국내

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확보 역할 및 법적 책임은 최근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침대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도입되어 변화하고 있다(뉴스1, 2024.11.28.). 그러나 그 이행 기준의 구체성과 현장 적용성 부족으로 교사의 법적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ubc뉴스, 2025.6.23.).

(1) 2024년 학교 안전사고 현황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에 전국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11,650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 193,177건 대비 18,473건(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사자 중 학생이 99.8%인 211,148명을 차지했으며, 교직원 184명과 교육활동 참여자 318명이 포함되었다(학교안전공제회, 2025).



* 주: 단위(건)

* 출처: 학교안전공제회(2024). 2023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통계(통계표).
학교안전공제회(2025). 2024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통계(통계표) 자료를 취합하여 그래프로 제시함.

그림 III-3.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학교급별 사고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80,369건(38.0%)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중학교 78,935건(37.3%), 고등학교 41,215건(19.5%), 유치원 9,802건(4.6%), 특수학교 672건(0.3%), 기타학교 657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점별로는 교육과정 중 발생한 사고가 54.0%인 114,27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육과정 외 학교체류 중 80,144건, 등하교 중 9,592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육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74,530건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로 범위를 한정하면 이 비율은 37.0%까지 상승했다.

활동 유형별 분석에서는 사고자의 56.1%가 스포츠(운동)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구기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88,489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 9,549건, 라켓 스포츠 6,017건, 체조·무용·매트 운동 2,256건, 무도 1,772건이 뒤를 이었다. 일상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43,789건(20.7%)이었으며, 이 중 장난·놀이 23,709건, 휴식 중 8,688건, 식사 중 3,372건으로 구분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등 ‘부딪힘’이 90,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염좌·뺨 등 ‘스스로 신체에 충격을 가함’이 48,640건, ‘낙상’이 47,396건, ‘굽힘·베임·절단·찔림’이 9,868건, ‘끼임·눌림’이 5,112건, ‘열·전기에 의한 손상’이 1,7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도 두드러졌는데, 모든 학교급에서 남학생의 사고율이 여학생보다 현저히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사고가 28,724건으로 여학생 12,429건의 2.3배에 달했으며, 중학생도 남학생이 53,299건으로 여학생 25,549건의 2배를 넘었다. 초등학생은 남학생 50,982건, 여학생 29,212건이었고, 유치원생도 남아 5,652건, 여아 3,996건으로 같은 패턴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11,058건(5.2%)에 달한다는 것이다. 교외 사고 발생 장소로는 문화·체육공간이 6,9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쿨존 내 교통구역 1,547건, 스쿨존 외 교통구역 887건, 자연환경에서 478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통계와 함께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교통사고 관련 법원 판결에서 담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많은 학교가 1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개정 「학교안전법」에서는 학교장과 교직원인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 112명 중 25%만이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교사노조 설문에서도 55.2%의 교사만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불안하다는 교사들은 ‘책임 면제 요건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다’(88.8%)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세계일보, 2025.7.1.).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 및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는 높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법적 면책 장치나 안전 운영기준이 미비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운영자인 교사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III-3. 학교 안팎 안전사고 실태와 교사 인식

| 구분 | 내용 |
|----|---|
| 1 | 학교 안전사고 현황 (2024년) 총 211,650건 발생(전년도 193,177건 대비 9.6% 증가) |
| 2 | 사고 발생 시점별 교육과정 중 사고가 54.0%(114,278건)를 차지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함 |
| 3 | 학교 밖 사고 비율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는 약 10,558건(5.2%)에 달함. 이는 일반 교내 활동 대비 약 9배 이상의 높은 사고 발생 비율임 |
| 4 | 교사 안전 인식 (2025년 설문) 교사 9,692명 중 96.4%가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으로 교사·학생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함 |
| 5 | 교육활동 위축 (2025년 설문) 교사 6,111명 중 81.8%가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7%의 학교가 2025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주: 단위(건)

* 출처: 1. 학교안전공제회(2025). 2024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통계(통계표).
2. 학교안전공제회(2025). 2024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통계(통계표).
3. 전북미래교육신문(2025.3.14.) & 세계일보(2025.7.1.).
4.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2025.3.4.).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 발표.
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2025.3.19.). 주요 교육현안 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

(2) 교사의 법적 책임과 부담

2025년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지침대로 실행 시 면책’ 조항이 명문화됐으나, 현행 ‘안전조치 의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교사의 법적·심리적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한국교육신문, 2025.6.19.). 특히, 교사의 과도한 법적 부담과 무거운 책임 구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활동이 위축되고, 체험학습 취소·연기가 잇따르며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춘천지법 초등생 사망사고 판결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2년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2025.2.11.).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했다(경향신문, 2025.2.11.). 이 판결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교사들이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G1 TV, 2024.6.3.). 이는 교사 개인의 주의의무만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법적 부담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다.

해당 판결은 현행 면책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교사가 학생 이동·안전관리 등 통상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대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에 만연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불안은 교원의 방어적 교육 행태와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으로 귀결되는 위험 요인이 된다.

(3) 교사의 현장체험학습 업무 부담의 구조적 원인 분석

앞서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를 지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 부담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교육 본질을 압도하는 ‘과도한 행정 업무’ 구조이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적 기획 외에도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버스 차량 점검, 운전자 음주 측정, 여행자 보험 가입, 정산서 작성 등 전문적인 행정 업무가 수반된다. 이러한 업무들은 교사의 교육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행정·회계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에게 전가되어 수업 연구와 학생 지도 시간을 잠식하고 있다.

둘째, 비전문가에게 부과된 ‘안전 확보’ 역할의 한계이다. 교사는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이지 시설 안전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교사가 사전 답사를 통해 숙박시설의 소방·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이동 경로의 교통 안전성을 판단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장비 없이 육안에 의존한 점검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에는 ‘사전 점검 소홀’의 책임을 교사가 떠안아야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포괄적인 ‘보호 감독 의무’를 묻는 법적 환경이다. 특히 최근 판례들이 교사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교사들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져야 할 안전 책임을 교사 개인의 ‘무한 헌신’으로 대체하려는 낡은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4) 개선 방안의 모색

앞에서 살펴본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교사의 업무 부담 실태와 교사들의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장애가 되는 현실적 문제는 교사 업무 경감 방안, 행정 업무의 업무 이관과 전문 인력 배치, 안전관리 역할의 분담과 명확한 책임 규정 마련, 그리고 심리적·법적 보호장치의 설계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은 다음 세 방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구체적 법적 기준 마련이다. 현장 교사의 면책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법령 및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책임 분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을 학교 관리자, 교육청 등으로 분담하고, 전문적인 법률·행정·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법적 보호장치 설계가 필요하다. 담당교사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고 발생 시 법률·심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 설계가 필요하다.

2) 국외

앞서 살펴본 일본, 영국, 미국, 호주의 현장체험학습 개념, 현황, 법·제도 현황의 내용들은 실제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의 원인과 대응 방법들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4개국의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외부 제공자의 안전 역량이 국가 제도나 학교 절차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이동·교통 단계에서 표준 운영절차(SOP)가 부재하여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 산악·폭염 등 기상 환경 위험을 정량적으로 관리할 기준과 즉각적인 실행 체계가 없는 경우이다. 넷째, 학생의

능력이나 건강정보 등이 수집되더라도 이를 외부 시설이나 현장 지도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안전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영국, 미국, 일본, 호주의 대표적 사고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영국에서는 1993년 라임베이(Lyme Bay)에서 플리머스 사우스웨이 학교 학생들이 외부 활동센터(St Albans Outdoor Centre)와 함께 카약 체험을 하던 중 학생 네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House of Commons Library, 1995). 조사 결과, 제공자는 기본적인 안전 준비와 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구조 요청도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 이 사건은 영국 의회가 「Activity Centres(Young Persons' Safety) Act 1995」를 제정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보건안전청(HSE) 산하 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Authority (이하, AALA)가 설립되어 만 18세 미만 대상 고위험 모험활동 제공자에 대해 국가가 면허를 점검하도록 하였다²²⁾. 의회 교육기술위원회는 이 사건을 '적절한 감독과 훈련된 직원의 부재'로 규정하고, 학교 체험학습 안전관리 제도의 필수성을 강조하였다(UK Parliament Education & Skills Committee, 2005). 따라서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외부 제공자의 자격과 점검 결과를 계약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내부적으로도 EVC를 지정하여 승인·사후평가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도출된다.

2018년 뉴저지주 I-80 고속도로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나선 학교 버스가 출구를 놓친 뒤 불법 U턴을 시도하다 대형 트럭과 충돌하여 학생과 교사가 사망하였다(Morris County Prosecutor's Office, 2020). 운전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사건의 본질은 이동 단계에서 경로 이탈 금지, 환승·정차 지점 통제, 운전자 자격 검증 같은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에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사례는 학교가 현장체험 이동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일부 미국 학군은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뉴욕시 교육청은 「Chancellor's Regulation A-670」을 통해 숙박·국제 현장체험의 승인 절차, 감독 비율, 비상연락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시애틀 학군은 국제·야간 활동의 경우 동행자의 범죄경력 조회와 지문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Seattle Public Schools, 2018b). 이러한 규정들은 뉴저지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위험 유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17년 도치기현에서 고등학교 산악강습 중 표층 눈사태가 발생하여 학생

22) 출처: <https://www.hse.gov.uk/education/school-trips.htm> 에서 2025년 9월 4일 인출.

과 교원이 사망하였다. 검증위원회는 사전에 기상·지형·적설량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장 지휘와 통신 체계도 결함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栃木県教育委員会, 2017). 또 다른 사례로 2018년 초등학교 교외학습 중 폭염 상황에서 학생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²³⁾이 있다. 당시 온열지수(WGBT)가 '위험' 수준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일본은 이후 온열지수 31 이상일 경우 야외 활동을 원칙적으로 중지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문부과학성은 '사고정보 공유·주의환기' 웹페이지²⁴⁾를 통해 열사병·낙뢰·수영사고 등 사례를 전국 학교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23). 이는 학교가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에 발생하는 기상 위험에 대해 명확한 수치 기준과 유사시 즉시 중지 결정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보여준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2021년 포트페어리의 Belfast Aquatics 수영시설에서 초등학교 캠프 중 학생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법원은 2024년 주 교육부와 시설 운영자에게 총 18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는 보호자로부터 수집한 학생의 수영능력 정보가 외부 수영시설에 전달되지 않아 적절한 감독 배치와 구역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⁵⁾. 이 사건은 학생 정보의 수집·공유·현장 적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연쇄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빅토리아주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이후 모든 캠프·수상 활동 책임 교직원에게 온라인 e-learning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위험평가, 수영능력 평가 및 정보 공유, 현장 감독 배치 절차가 포함된다²⁶⁾. 이는 학생 정보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이상의 사례는 각각 다른 맥락에서 발생했지만,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영국의 사례는 외부 제공자 역량 검증의 부재, 미국의 사례는 교통안전 SOP 미비, 일본의 사례는 기상·환경 위험의 정량 기준 및 실행 체계 부족, 호주의 사례는 학생 정보의 공유·적용 단절이 각각 핵심 문제였다. 따라서 한국의 제도 보완 시에는 학교 차원에서 외부 제공자의 면허·점검 확인, 교통 SOP 수립, 기상 위험 임계값 설정, 학생 정보의 연쇄적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23) 출처: <https://anzenkyouiku.mext.go.jp/heatillness/data/jikojirei-1.pdf>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24) 웹페이지 주소는 <https://anzenkyouiku.mext.go.jp/guideline-jikotaiou/jikojoho.html> 이다.

25) 출처: <https://www.worksafe.vic.gov.au/news/2024-05/180000-fines-after-student-drowns-school-camp>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26) 출처: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excursions/policy>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무한한 헌신과 개인적 책임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여,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판례에서 담임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2심 진행 중)는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판결은 현행 면책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교사가 학생 이동·안전관리 등 통상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대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현장에 만연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안은 교원의 방어적 교육 행태와 현장체험학습 위축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고, 이미 교육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과 소극적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외 사례는 한국의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의 경우, 외부 활동 제공자의 자격 미비로 1993년에 발생한 라임베이(Lime Bay) 사고를 계기로 고위험 모험활동 제공자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면허 및 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관리 영역으로 확장했다. 또한, 호주의 2024년 학교 캠프 익사 사고 사례는 학생의 건강 및 특이사항 정보가 현장 활동을 진행하는 외부 시설 관계자에게까지 차질 없이 전달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정보 흐름을 보장하는 연속적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이 교사 한 명의 주의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외부 위탁 기관의 역량 검증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구조적 과제임을 입증한다.

앞서 제3장에서 상세히 분석한 각국의 법적 기반과 안전 관리 시스템,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각국은 교사의 무한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적 분산(영국)’, ‘조건부 면책(미국)’, ‘데이터 기반 지원(일본)’ 등 다양한 기제를 제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체계 및 특성 비교

| 구분 | 한국(현행) | 일본 |
|---------|---|--|
| 법적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법 시·도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보건안전법 학습지도요령 학교안전추진계획 |
| 개념 및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활동 중심 수학여행, 수련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행사(특별활동) 소풍, 집단숙박 |
| 책임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개인 중심의 책임 경향 면책 규정의 모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및 설치자 책임 매뉴얼 준수 시 면책 |
| 안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절차 중심(서류 위주) 사후 보상 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데이터 공유 사전답사 및 위생검사 의무화 |
| 특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기반 관리 도입: 전국 단위 사고 정보 공유 및 표준화 |
| 구분 | 영국 | 미국 |
| 법적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법(HSAWA) 교육부(DfE)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State) 교육법(예: 캘리포니아 교육법) 학군 규정 |
| 개념 및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ucational Visits 일상적 활동 vs 고위험 활동 구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eld Trip 교육과정의 연장선 |
| 책임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VC(코디네이터) 지정 책임 분산(지도자-EVC-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책(Waiver) 제도 활용 일반 과실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
| 안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 위험평가 온라인 통합 관리(EVOLV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 절차 총위회(당일/숙박/국외) 인솔자 자격 검증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지원 체계 구축: 전문기구(OEAP) 및 담당자(EVC) 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면책 법리 적용: 경과실/중과실 구분 명문화 |
| 구분 | 호주 | X |
| 법적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건강안전법(WHS) 주 교육부 정책 아동안전원칙 | |
| 개념 및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cursions 교내 초청(Incursion) 및 가상(Virtual) 포함 | |
| 책임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책 금지(주의의무 양도 불가) 시스템적 책임(승인·검증) 강화 | |
| 안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정보의 연속적 전달 외부 제공자 엄격 관리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연계 시스템 의무화: 온라인 체험 인정 및 정보 연계 의무화 | |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의 정착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제도적 개선 과제와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에 의한 책임 분산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학교 관리자, 교육청, 외부 위탁 기관 등 교육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 조치의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책임의 합리적 분산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직무를 ‘교육 본연의 활동’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경험을 이끄는 ‘교육’ 자체에 집중되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설 안전 점검, 업체 선정 등 행정적·기술적 업무는 교사의 직무에서 분리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원 인력이나 전담 기관(가칭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이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 위탁 기관 관리 및 정보 연계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영국과 호주의 사례와 같이 외부 활동 제공자의 안전 역량을 검증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의 건강 및 특이사항 정보가 현장 지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기술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합리적 면책 기준의 구체화 및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막연한 ‘주의의무’가 아닌,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합리적 안전 조치를 준수한 경우에는 교원이 부당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4.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과 관련 법령을 비교 및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쟁점을 진단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핵심 문제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2024년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체험학습 중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들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교육활동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2025년 판례(춘천지법)는 교사의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현장의 위축을 가속화시켰다. 반면 미국(면책 제도), 영국(EVC 시스템), 호주(책임 분산) 등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사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 도입이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현행 법령 체계는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보상에 치우쳐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 인프라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학교안전법」은 보상 중심의 법률로 사전 안전 관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 역시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일본(전국수학여행연구협회 데이터), 영국(EVOLVE 시스템) 등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와 플랫폼을 통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한국형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의 업무 부담은 비본질적 행정 업무의 과중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규명되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설 점검, 보험 가입 등 행정·기술적 업무까지 전담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안전관리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외 사례와 같이 행정 업무를 전담할 지원 조직(센터)이나 보조인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상의 고찰 내용을 종합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및 제도적 쟁점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5.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및 제도적 쟁점

| 구분 | 주요 내용 | 시사점 |
|------------|--|---|
| 책임 구조의 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는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해 교육활동이 위축됨 (2025 춘천지법 판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실효성 있는 면책 조항'의 법제화 시급 |
| 국외의 대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면책 제도), 영국(관리자 책임 분산) 등은 시스템으로 개인의 위험을 방어하는 법적 장치를 보유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주의력이 아닌 시스템(매뉴얼, 인증 등) 준수 여부를 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법리적 전환 필요 |
| 지원 인프라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개 시·도교육청 매뉴얼은 존재하나, 이를 실행할 전담 기구(지원센터)나 인력 지원 근거가 미비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교육청 산하에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안전 업무를 이관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 행정 업무 과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보험, 시설 점검 등 비교육적 업무가 교사에게 집중되어 교육력 낭비 초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인력 배치 및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실질적 업무 부담 경감 |
| 안전관리의 비과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과 육안에 의존한 관행적 안전 점검으로 실질적 위험 요인 파악에 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차원의 '체험처 안전 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기반의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시스템' 도입 |
| 데이터 기반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영국 등은 사고 데이터 및 위험평가 DB를 공유하여 과학적 예방 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인증제 의무화를 통해 민간 시설의 안전성 검증 강화 |

○———— 제4장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의 근거

- 1.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제화의 타당성
- 2. 이해관계자 심층조사를 통한 입법 요구 분석

4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의 근거*

현장체험학습의 정상화는 단순한 매뉴얼 개선을 넘어선 입법적 결단을 요구한다. 본 장에서는 문헌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법적 제도 보완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심층면담(FGI)을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1.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제화의 타당성

1) 국내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은 교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와 학생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는 현행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현장의 불안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안전 확보를 위한 교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확보 역할 및 법적 책임은 최근 「학교안전법」 개정¹⁾에 따라 ‘지침대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도입되어 변화하고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5.1.21. 일부개정, 법률 제20669호). 그러나 그 이행 기준의 구체성과 현장 적용성 부족으로 교사의 법적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이 장의 1. 1)~3)은 남화성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전명기 박사(청소년과 미래활동), 4)는 권오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또한 2.는 권오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분석·집필하였음.

가. 현장체험학습에서의 교사 안전 확보 역할

- 사전 안전교육 및 안내: 체험활동 전 이동 경로·주의사항·응급조치법 등 학생 대상 안전교육과 학부모 사전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 위험요소 사전 점검 및 계획: 현장답사와 시설, 위생, 의료 접근성 등 위험요소를 사전 조사·점검하고, 구체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학생 건강 및 인원 관리: 학생별 건강정보와 알레르기, 지병 등 확인 및 인원 점검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적정 인솔자 및 안전요원 확보: 현행법과 「학교안전법」에 따라 체험활동별로 인솔자 인원 및 안전요원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활동 중 사고 시 효율적 대응 지침 역시 마련해야 한다.
- 현장 안전상황 확인 및 통제: 활동 중 현장 안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며, 통제 소홀은 중대 과실로 인식될 수 있다.

(2) 교사와 학교의 법적 책임과 부담

2025년 법 개정으로 '지침대로 실행 시 면책'하는 면책 기준이 도입되어 조항이 명문화됐으나, 현행 '안전조치 의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교사 현장의 법적·심리적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과도한 법적 부담과 무거운 책임 구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활동이 위축되고, 체험학습 취소·연기가 잇따르며,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한 교사와 학교의 법적 책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대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교사 개인과 학교 모두에게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가. 민사 책임

①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책임의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교사 개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② 교사의 개인 책임

일반적으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교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일정 수준의 재량과 보호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교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박재향, 2002).

③ 학교의 책임

학교는 시설 관리 및 설치상의 하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이때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다(김소연, 2006). 학교의 민사 책임은 교사 개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나. 형사 책임

① 형사 책임의 성립 요건

교사의 형사 책임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 「형법」상 처벌 가능한 수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적용 범조와 절차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주로 적용되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구체적 과실의 내용과 인과관계가 판단된다. 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과 달리 엄격한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박재향, 2002).

다. 행정적 책임

① 징계의 종류와 절차

교사는 사고 발생 시 행정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는 경고에서부터 해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구분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적 징계는 민사 및 형사 책임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② 책임의 중복 가능성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세 가지 책임이 모두 중복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교가 다층적인 법적 부담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중대과실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체계는 민사, 형사, 행정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책임과 절차는 교사의 주의 의무와 학교의 안전관리 의무가 사고 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교사 개인의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는 시설 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적 책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되며, 사고 예방과 적절한 대응 방안 수립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3) 관련 판례

가. 현장체험학습 관련 주요 판례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 체계에서는 다양한 판례와 해석례가 반영되어 안전관리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제44조 등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교원 면책 기준, 구상권 행사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안전법」 개정과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보조인력 배치와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관련 보상 및 구상금 지급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12다75642) 등의 법적 해석례에서 사고 책임 범위와 교사 면책 여부 판단 기준이 반영되었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은 교사의 주의의무와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2377 사건에서는 고등학생 물놀이 익사 사고에 대해 교사들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교육청 사용자인 교육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한국교육신문, 2023.10.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고단48 사건에서는 하천 익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일부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시사IN, 2025.3.30.). 반면 제주 초등학교 수영장 익사 사고에서는 교사가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시사IN, 2025.3.30.).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교통사고의 경우 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금고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교사의 구체적 주의의무 이행 정도가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보여준다.

나. 2025년 판례 분석: 춘천지법 초등생 사망사고 판결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술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5년 2월 춘천지방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KBS뉴스, 2025.2.14.). 재판부가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교사들이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는 교사 개인의 주의의무만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법적 부담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다.

(4) 현행 법·제도의 한계

가. 「학교안전법」 개정의 실효성 문제

최근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었으나,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근거는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불안감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교원 단체는 구체적인 면책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 지역별 대응의 한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생 안전관리 조례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일된 기준이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라. 사후적·소극적 대응의 문제

현재의 법적 보완 논의는 사고 발생 후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적·소극적 대응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충분한 안전 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로 인해 안전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하는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둘째, 교사가 잠재적 피의자라는 방어적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면책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예방 기능의 부재 문제가 있다.

(5)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모색

가. 교육 공동체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책임 문제에서 벗어나 교육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교권을 권한, 권리, 권위의 체제로 보고 다각적 요인을 분석하는 생태학적 관점과 일치한다.

나. 역할과 책임의 재분배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 교육청, 외부 위탁기관 등 관련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의 분산과 체계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 표준화된 안전 매뉴얼 마련

활동 유형별, 장소별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안전 조치 사항을 담은 국가 수준의 표준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여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라. 지원 시스템 강화

현장체험학습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안전 컨설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은 단순한 면책 규정 마련을 넘어 교육 공동체 전체의 안전 의식 제고와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학교안전공제회와 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지침 마련, 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 보상,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와 교육, 사고 대응 및 보고 절차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역할을 하며,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운영함
-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교육부에서 제정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상황 파악, 안전 조치,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원함. 이에 따라 교직원이 지침을 준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
- 현장체험학습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체험학습 및 교외 활동 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사고에 따른 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등 다양한 보상항목을 포함함
- 사고 통보 및 보상 신청 절차를 관리하며, 체험학습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 사업도 수행함
- 특히, 숙박형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교와 교직원, 학생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참여 중 사고에 대해 신속한 보상과 함께 예방 활동을 병행하며, 사고 관련 지침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안전교육, 안전 컨설팅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함

* 출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1.21. 일부개정, 법률 제20669호)의 내용에 적용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2) 국외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등 국외의 현장체험학습 또한 우리나라의 맥락과 마찬가지로 교실 수업을 확장하는 교육적 장이자, 동시에 학생 안전 확보라는 공공적 과제가 결합된 활동이다. 그러나 교사의 안전관리 책임은 각국의 법·제도적 맥락에 따라 구조적 차이를 보이며, 운영 체계 역시 정책·실무·책임의 층위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본 절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 보완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한다.

(1) 미국: 위험관리 절차와 조건부 면책을 결합한 운영 방식

미국은 연방 단일 지침이 아닌 주 교육법과 학군(district) 규정을 기반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35330조」는 학군에 현장체험학습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참가자가 학군·학교에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정 면책(waiver) 규정을 둔다. 다만 이는 일반적 과실(negligence)에 국한되며, 고의·중대한 과실(intentional misconduct, gross negligence)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학군별 매뉴얼은 이러한 주법의 틀을 세부화한다. 시애틀 공립 학군은 당일형·숙박형·국제형 활동으로 구분하여 승인 주체(교장·교육청·교육감)를 달리하고, 제출 시한·필수 서류·체크리스트·보험·응급계획 등을 유형별로 규정한다. 뉴욕시 교육청은 초등 1:10, 중학교 1:15, 고등학교 1:25의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의무화하며, 해외 활동 시 보험 가입과 재정 관리 시스템 등록을 요구한다. 시애틀 학군은 특히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내 활동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인솔자 연령 하한선·자원봉사자 신원조회·응급 대응계획·보험 증빙 등 인적·절차적 안전망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교사의 합리적 안전관리 의무는 유지하면서도, 면책은 일반 과실에만 한정하는 법적·제도적 균형을 보여준다.

(2) 영국: EVC 제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체계적 관리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HSAWA)」을 근간으로, 교육부(DfE) 지침(2018), 보건안전청(HSE) 권고와 OEAP의 National Guidance가 결합한 다층 구조를 갖는다. 교육부의 지침은 활동을 ‘일상적 방문(routine visit)’과 ‘위험평가 및 별도 계획이 필요한 여행(trip requiring extra planning)’으로 구분하여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준비를 요구하며, 보건안전청 권고는

‘실제 위험(real risks) 중심, 불필요한 서류 지양’의 원칙을 강조한다.

실무적으로는 각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EVC)’를 두어 전체 정책을 관리·검토하게 하고, 현장체험학습 지도자(visit leader)와 교장, 지방정부가 승인·감독의 사슬을 형성한다. 최근에는 EVOLVE라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 위험평가, 승인, 학부모 동의, 보험, 사고 보고까지 디지털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책임 구조 면에서, 영국은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공백을 방지한다. 교사와 학교는 정책과 매뉴얼을 준수하는 한 법적 책임이 분산되지만, 지침의 현저한 위반은 중대 과실로 간주되어 책임이 부과된다.

(3) 호주: 면책 금지 원칙을 통한 책임 강화 구조

호주는 「작업건강안전법(WHS)」을 근거로 모든 사업·업무 주체, 즉 학교와 교육청, 지방 정부에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as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내에서의 안전 확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이 기본 원칙을 토대로 각 주 교육부는 현장체험 학습의 계획, 승인, 위험평가, 사고보고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마다 그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 절차의 측면에서 지방 정부별 내용을 살펴보면, 뉴사우스웨일스주는 교장-지역 교육장-주 본부로 이어지는 다단계 승인 구조를 마련하고, 사전 위험평가·보호자 동의·응급 대응계획 등을 필수 절차로 명시한다. 활동의 유형은 학교 외부(off-site), 해외(overseas), 교내 초침(incursions)으로 구분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가상 견학(virtual excursions)까지 정책적 관리 범위에 포함되었다. 빅토리아주는 특히 면책·보상 약정(waiver·indemnity)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여 학교가 법적 책임을 서류상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활동 시 정부 보험 가입, 외부 제공자 의존 금지, 아동안전(child safe) 기준 준수 등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작업건강안전법(WHS)」 일반 의무, 주별 교육정책, 아동안전 체계가 삼중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나아가 공식 절차를 위반하거나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응급대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법·제도는 책임 회피를 방지하는 동시에 학교와 교사가 본질적 주의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4) 일본: 법령·지자체 지침·민간 데이터가 연동된 예방 중심 체계

일본은 「학교보건안전법」과 시행규칙을 통해 학교장의 조직적 안전관리 의무와 교직원 의 학생 보호·응급조치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요령(특별활동편)은 소풍·수학여행·집단숙박활동 등을 정규 학교행사로 규정하고, 계획-실행-평가의 절차를 의무화한다. 또한 「제3차 학교안전추진계획(2022-2026)」은 학교 안전계획과 위기대응 매뉴얼을 매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실시기준'을 통해 사전답사(下見), 학부모 설명회, 인솔교사 배치, 응급체계 수립, 기간·비용 상한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동시에 전국수학여행연구협회는 매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데이터북을 발간하여 학교와 교육행정이 참고할 수 있는 목적지·규모·참가 현황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고 정보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여 폭염·낙뢰·수영사고 등의 사례를 신속히 전파하고, 예컨대 온열지수(WBGT) 31 이상 시 야외활동 중지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제시한다. 교사와 학교는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법적 책임이 분산되나, 매뉴얼의 현저한 위반·위험 방지·응급 대응 미흡 사안은 중대 과실로 간주된다.

(5) 시사점

국의 사례를 종합하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축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가마다 활동 유형과 위험 수준, 상황별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세분화하여 운영한다는 점이다. 영국은 일상적 활동과 고위험 활동을 구분하여 비례적 위험관리를 정착시켰고, 미국은 당일·숙박·국제형 활동으로 분류하여 승인 주체와 서류, 제출 시한을 차등화하였다. 일본은 소풍, 수학여행, 집단숙박활동 등 학교행사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도적 절차로 표준화하였으며, 호주는 학교 외부 활동, 해외 활동, 교내 초청 활동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 체험활동까지 포함하여 상황별 지침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의 유형과 위험 수준, 상황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화된 안전기준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각국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도구 제공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영국의 경우 EVOLVE 시스템을 통해 계획 수립, 위험평가, 승인, 동의서 관리, 사고 보고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국 수학여행 데이터를 축적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사고 정보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례 기반의 예방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호주 역시 정책 라이브러리와 아동안전 기준을 공개하고, 민간·문화기관과 연계한 가상 체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동일한 기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통합형 관리시스템과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교사와 학교, 교육청의 법적 책임과 역할 분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영국은 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EVC)와 현장체험학습 지도자(visit leader), 교장,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책임 사슬을 제도화하였고, 미국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내 활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보건안전법」과 학습지도요령, 지자체 지침을 통해 교원과 학교장의 의무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호주는 「작업건강안전법(WHS)」과 주 교육정책, 아동안전 체계를 결합하여 주의의무를 다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제도 설계에서도 교사와 학교, 교육청 간의 책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넷째, 민과 관의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라임베이 카약 사고 이후 AALA를 통해 외부 활동 제공자의 자격을 국가가 직접 검증하고, 민간 EVOLVE 플랫폼을 공적 승인 절차에 결합하였다. 일본은 민간 협회를 통해 전국 단위의 데이터와 가이드를 제공하여 학교와 행정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는 문화·교육기관 및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여 온라인 기반 체험학습으로 확장하였다. 미국은 학부모와 지역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허용하되, 신원 조회와 교직원 감독을 의무화하여 공적 보호장치 속에서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민간기관과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되, 국가와 교육청 차원의 감독과 검증 체계를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활동 분야와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와 같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안전한 체험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안전센터) 등의 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반을 활용한 협력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법·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각국의 책임 법제 설계 방식이다. 미국은 면책(waiver)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 과실에 따른 소송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 면책을 인정하지 않아 교사의 주의의무를 유지한다. 반면 호주는 면책과 보상약정을 법적

으로 금지하여 학교 책임의 본질을 서류상 이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매뉴얼과 지침 준수를 기준으로 책임을 분산하거나 집중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교사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식 책임 제한 장치를 도입하되, 동시에 호주·영국·일본처럼 주의의무를 법적으로 유지·강화하는 장치를 결합하여 균형적인 법제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교사의 직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문헌 분석을 통한 법적 제도 보완 근거 도출의 시사점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포함 국외의 중대 과실 기준 및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각국의 중대 과실 기준 및 적용 방식

| 국가 | 중대 과실 기준 및 적용 방식 |
|-------------|---|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사 면책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함. 판례에서는 학생 이동·안전관리 등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중대 과실로 인정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cher Protection Act」 등에서 '고의(gross negligence) 또는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 있을 경우에만 교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명시. 'gross negligence'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심각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무시한 경우로 해석됨. 주별로 세부 기준이 있으나,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AWA」 등에서 'reckless disregard(무모한 무시)' 또는 'gross negligence'가 있는 경우에만 교사에게 책임을 묻음. 학교·교육청의 표준 절차(위험평가, 체크리스트 등)를 명백히 위반했거나, 안전지침을 무시한 경우가 해당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절차(위험평가, 승인 등)를 따르지 않거나,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 위험요소 방지 등 'gross negligence'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됨. 고의적 방임 또는 중대한 예방조치 미이행이 기준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매뉴얼, 역할 분담 등 절차를 무시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위험요소 방지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교사에게 책임이 인정됨. 매뉴얼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는 면책 |
| 덴마크/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며, 학교(교육제공자)·공동체·학생에 책임이 분산됨. 다만, 교사가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학생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논의될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 기준은 사회적 신뢰와 자율성에 기반해, 타국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음 |

* 출처

- 1) 한국/미국/영국/호주/일본: 본 보고서 pp.62-69와 pp.92-96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함.
- 2) 덴마크: <https://www.retsinformation.dk/eli/Ita/2025/585>
 핀란드: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1998/19980628> 및 <https://www.finlex.fi/fi/lainsaadanto/1974/412> 내용을 정리함.

중대 과실이란, 교사가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해 학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경우(예: 위험요소 방치, 안전지도 소홀, 인원 관리 부실 등)로, 각국 모두 이 경우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 과실은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정의되며, 각국은 이를 기준으로 교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한다. 한국은 그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법 조항에 ‘중대 과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판례와 현장에서는 그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의 혼란과 부담이 크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gross negligence(중대한 과실)’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사가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책임이 공동체에 분산되어 있어, 교사 개인의 중대 과실이 논의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상식적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문제시될 수 있다.

이상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 과실에 관한 한국과 다른 주요국의 관련 내용, 그리고 위에서 정리한 문헌 분석을 토대로 얻은 법적 제도 보완 근거의 시사점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초안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3)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개선 필요 사항

현재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법령은 사후적·소극적 대응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계를 위한 법령별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은 면책 규정의 모호성 및 소극적 대응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보상’에 초점을 맞추며, ‘충분한 안전 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안전 조치 적절성 판단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개인의 책임 문제를 넘어 교육청, 학교 관리자, 외부 위탁 기관 등 관련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의 분산과 체계화를 도모해야 한다. 교원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되는 구조를 명시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의 법적 책임 범위 관련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초·중등교육법」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직무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령 내용상에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계약, 정산) 및 안전 총괄 업무까지 교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직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직무를 교육 및 생활지도에 한정하고, 행정 업무(계약, 정산, 안전 관련 행정)는 행정실, 교육청, 지원센터로 분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의 역할, 행정지원 등의 관련 조문에 반영을 검토한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시·도 조례

「청소년활동법」 등 정책 분야와 주무 부처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교육정책 및 교육관계 법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인증 프로그램 활용의 제도적 연결 또한 부족하다. 현장체험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있으나, 학교가 이를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전략적 연결 체계가 법적으로 미흡하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법제 간 연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처 간 정책 검토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프로그램 우선 활용을 제도화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전문기관 지정 및 인증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품질을 공적으로 보증하고 학교의 행정 중복을 해소하는 방안을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현장체험학습 전문기관 관련 조문 등과 안전관리 및 평가체계에 관한 조문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체험학

습과 관련된 교사의 책무와 부담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교원지위법」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교사의 직무 범위가 행정·계약적 개념까지 포함되어 인식되면서, 본질적인 교육활동(생활지도, 학습지도)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교권 존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전문성 존중 및 지원 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원의 교육적 판단 권한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행정·안전 분야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확보 및 실질적인 법률·심리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목적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보조인력, 전문기관 등 신설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실무적·재정적 근거 마련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교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학교의 책임을 공적 시스템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법률안에는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도입에 필요한 실무적·재정적 근거 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인솔 교사는 교육활동 지도뿐만 아니라 학생 이동 통제, 돌발 상황 관리, 야간 생활지도 등 과중한 안전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안에는 인솔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 안전관리, 이동 지원, 응급 대응 등 현장 운영의 전문성을 담당할 ‘보조인력’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보조인력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의 자격 기준과 채용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책무로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기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계약이나 시설 안전 전문가가 아니다.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체험학습의 행정·안전·품질 관리를 일원화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현장체험학습안전지원센터(가칭)’와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예산 지원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체험학습 지원 체계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헌 분석 및 국외 사례(영국 OEAP, EVOLVE, 일본 수학여행협회 등)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핵심 기능과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장체험학습 통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체험 시설, 숙박, 교통편 등에 대한 안전 검증 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고, 복잡한 계약 및 정산 업무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인증 및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한다. 외부 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전성 평가 및 인증제를 운영하여, 검증된 프로그램만을 학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안전 컨설팅 및 위험평가 지원을 수행한다. 대규모 또는 고위험 활동(숙박형, 국외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 양성 및 사고 대응 지원도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보조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법률·행정 지원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제공하여 학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4) 요약 및 소결

본 절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둘러싼 국내 법·제도적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운영 사례 및 판례를 비교·검토하여 「(가칭)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된 핵심 쟁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법적 구조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면책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의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춘천지법의 판결(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유죄)은 교사의 주의의무를 포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는 교사의 책임을 개인의 ‘주의력’이 아닌 시스템의 ‘관리력’으로 전환해야 할 시급성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교육 본연의 활동과 행정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혼재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점검, 계약, 시설 안전 진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본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는 교사의 교육적 효능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법률 제정을 통해 교사의 직무를 '교육 및 생활지도'로 명확히 한정하고, 행정 및 안전 기술 업무를 전담할 지원 체계(보조인력, 지원센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셋째, 국외 사례 분석 결과, 주요국들은 '시스템에 의한 책임 분산'과 '합리적 면책'을 제도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고 있었다. 영국은 EVC(현장체험학습 코디네이터) 제도와 국가 차원의 외부 제공자 검증(AALA)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시스템으로 흡수하였고, 미국은 법정 면책(waiver) 제도를 통해 일반 과실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 역시 법령과 매뉴얼을 통해 학교장, 교육청,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입법 방향이 교사 개인에 대한 처벌 위주가 아닌, '과정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와 '중대 과실 중심의 책임주의'로 전환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넷째, 현행 법령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법률의 제정이 필수적임이 도출되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이나 「학교안전법」은 사후 보상이나 선언적 규정에 치우쳐 있어, 사전 예방과 실질적 운영 지원(인력, 예산, 전문기관)을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조인력 배치, 전문기관 설립, 외부 프로그램 인증 의무화, 구체적 면책 기준 등을 아우르는 특별법 성격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이상의 문헌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법적 제도 보완을 위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 문헌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구분 | 주요 결과 | 시사점 |
|---------------|--|---|
| 법적 책임의 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상 면책 규정이 존재하나 '주의의무'의 기준이 모호하여, 2025년 판례와 같이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현실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안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을 면책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중대 과실'의 판단 기준(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구체화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 확보 |
| 직무 과부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계약, 시설 점검, 안전요원 섭외 등 비전문직 행정·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교육활동 침해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 결여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직무를 '교육과정 기획 및 학생 생활지도'로 한정하고, 행정·안전 업무를 이관받을 '지원센터' 및 '보조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 |
| 국외의 시스템적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EVC, 인증제), 미국(Waiver), 호주(정보 연계) 등은 개인의 주의력 대신 시스템(검증, 승인, 데이터)을 통해 안전을 확보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교육청 주도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 (외부 체험처 안전 인증, 위험도 평가 정보 제공, 사고 대응 매뉴얼 표준화 등) |
| 사고 유형의 구조적 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사고 사례 분석 결과, 외부 제공자의 역량 미비, 학생 정보 단절, 운송·기상 기준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위탁 프로그램 이용 시 '사전 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 등)'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학교-교육청-운영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법제화 |
| 지원 인프라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학습을 전담 지원할 법적 기구와 인력 예산 근거가 없어 학교 단위의 개별적 대응에 의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교육감 산하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조인력 운영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규정 |

2. 이해관계자 심층조사를 통한 입법 요구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적·행정적·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가칭)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의 핵심 주체인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자들과 정책을 집행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포착하고자 하였다. 둘째, 심층면접과 서면조사를 병행하되 동일한 질문 구성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비교 분석하고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안전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와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연구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이하, FGI)과 전문가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설계되었다. 우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들을 대상으로는 초점집단면접 방식을 적용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사고를 확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각 직군별로 독립된 집단을 구성하여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전문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국 단위의 조례 운영 현황과 행정 지원 체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며, FGI와 동일한 맥락의 질문지를 통해 각 교육청의 현황과 정책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표집은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진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인 법제화 방안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와 실무자를 선정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 조사 절차

면접 및 서면조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연구 착수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 심의신청서, 연구참여동의서, 조사안내문 등을 제출하였고, 최종 승인을 획득하여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조사는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진은 참여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익명성 보장, 자발적 참여 및 중도 철회 권리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의 경우, 면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면담 3일 전까지 질문지를 발송하여 참여자가 집단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면담은 조사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회의실을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면접조사 진행과 동시에 면접 내용의 기록과 녹음을 병행하였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법제화 취지를 명확히 공유하기 위해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쳤다. 서면조사 시행 전,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17개 시·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담당자들과 1박 2일간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서면조사의 목적과 질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체험학습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담당자들이 사안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4) 조사 대상자

본 조사에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자인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자 및 교육청 담당자가 참여하였다.

표 IV-3. 조사 개요

| 주요 요소 | 내용 |
|------------------|---|
| 조사 참여자 섭외 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단체: 교육부 및 전문가 자문 • 학부모단체: 교육부 및 전문가 자문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성평등가족부 및 전문가 자문 • 교육청 담당자: 교육부 공문 발송 및 협조 요청 |
| 조사 참여자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점집단면접(FGI): 총 9명(교원 3명, 학부모 3명,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3명) • 전문가 서면조사: 총 20명(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
| 조사 참여자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점집단면접(FGI) 구성: 이해관계에 따른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 A(교원): 현장체험학습 정책 및 교권 보호 담당자 - Group B(학부모): 학교 운영 및 학생 안전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 Group C(시설): 청소년활동인증 및 안전관리 실무 책임자 • 서면조사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담당자 |
| 조사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한 집단 심층 토론 • 서면조사: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를 활용한 이메일 조사 |
| 조사 시간 및 횟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그룹별 2시간 내외, 총 3회 실시(필요시 비대면 추가 인터뷰 병행) • 서면조사: 1회 실시(2주간의 응답 기간 부여) |
| 조사 준비 및 조사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8월 ~ 2025년 11월 |
| 조사 기록 및 녹취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취 후 분석 |
| 면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연구진 |

먼저 초점집단면접 조사 대상자는 총 3개 그룹, 9명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교원단체 대표 그룹은 주요 교원단체 현장체험학습 정책 담당자 3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개별 교사의 입장을 넘어 교원 집단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둘째, 학부모단체 대표 그룹 역시 주요 학부모 단체의 대표 및 운영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교육적 요구를 대표하도록 하였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대표 그룹은 국립수련원, 공공기관, 민간업체의 대표 및 실무진 인사 3명으로 구성하여,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의 실무적, 제도적 쟁점을 포괄하였다. 초점 집단면접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표 IV-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 대상자

| 구분 | FGI 참여 대상자 | 소속 및 직위 | 구분 | FGI 참여 대상자 | 소속 및 직위 |
|----------------|------------|------------|-------|------------|---------|
| 교원단체 | T1 | ○○ 부장 | 학부모단체 | P1 | □□ 회장 |
| | T2 | ○○ 정책국장 | | P2 | □□ 회장 |
| | T3 | ○○ 사무처장 | | P3 | □□ 운영위원 |
| 청소년시설 관련 단체 | Y1 | △△ 과장 | | | |
| | Y2 | △△ 부장 | | | |
| | Y3 | (주)△△ 대표이사 | | | |

다음으로 전문가 서면조사 대상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 및 주무관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각 교육청당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지역별 조례 운영 실태와 행정적 지원의 한계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행정 전문가들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서면조사에 참여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다.

표 IV-5. 전문가 서면조사 참여 대상자

| 서면조사 대상자 | 소속 | 직위 | 서면조사 대상자 | 소속 | 직위 |
|----------|-------|-----|----------|-------|-----|
| E1 | ○○교육청 | 주무관 | E11 | ○○교육청 | 주무관 |
| E2 | ○○교육청 | 주무관 | E12 | ○○교육청 | 주무관 |
| E3 | ○○교육청 | 장학사 | E13 | ○○교육청 | 장학사 |
| E4 | ○○교육청 | 장학사 | E14 | ○○교육청 | 장학사 |
| E5 | ○○교육청 | 장학사 | E15 | ○○교육청 | 장학사 |
| E6 | ○○교육청 | 주무관 | E16 | ○○교육청 | 주무관 |
| E7 | ○○교육청 | 주무관 | E17 | ○○교육청 | 장학사 |
| E8 | ○○교육청 | 주무관 | E18 | ○○교육청 | 장학사 |
| E9 | ○○교육청 | 장학사 | E19 | ○○교육청 | 장학사 |
| E10 | ○○교육청 | 주무관 | E20 | ○○교육청 | 장학사 |

(5) 조사 내용

본 조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비교 및 분석하고 입법 과제를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과 서면조사의 질문지 내용과 구성을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도입, 주요 탐색, 심화, 마무리의 4단계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도입’에서는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 겪은 가장 큰 어려움과 긍정적 사례를 질문하여 현장의 실제적인 경험을 환기하였다. ‘주요 탐색’에서는 현행 조례와 지침의 실효성 및 한계, 가장 시급한 지원 체계(예산, 인력, 안전관리 등), 그리고 각 주체별(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 요구사항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화’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가칭)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교원 면책, 보조인력 제도화 등)과 법률상 교원의 직무 범위 및 책임 소재의 적정 수준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하였다.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 개선 과제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현장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제언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집단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용어는 일부 조정되었으나,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질문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본 조사에서 활용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6. 현장체험학습 법제화 관련 면접조사 및 서면조사 질문지 구성

| 구분 | 문항 내용 |
|-------|---|
|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3년 동안 선생님께서 추진한(자녀가 참여한/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시거나 지원하신/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어려움이 컸던 사례와, - 본인 스스로 혹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 주요 탐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을 준비·운영하시면서(보면서/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시면서/지원·관리하시면서) 가장 크게 인식하는 문제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사례나 배경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운영 중인 조례·매뉴얼·지침이 현장에서(학부모 입장에서/청소년수련시설 현장에서/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부분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 1~2가지, - 보완이 필요한 부분 1~2가지를 나누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선생님께서(학부모님께서/수련시설 현장의 입장에서 볼 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체계는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인력(보조인력 포함), 안전관리, 행정 간소화, 연수·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 구분 | 문항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사 개인, 학교, 학생·학부모 각각의 입장에서 달리 요구되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용) 현장체험학습 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 학교 및 교원, 학생 및 학부모 각각의 입장에서 달리 요구되는 점이 있다면... |
| 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가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예: 교원 면책, 보조인력 제도화, 안전관리 기준, 예산 지원, 행정 지원 절차, 시도교육청의 책무 등 ■ 법률에서 교사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용) 법률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책임 범위, 교사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교사가 반드시 말아야 하는 부분(교육·생활지도 등), 지원 인력이나 기관이 분담해야 하는 부분(안전관리, 행정업무 등), 법률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용) 시설이 반드시 말아야 하는 부분(프로그램 기획·운영·안전교육 등), 학교나 지자체와 분담해야 하는 부분(사전 협의, 행정절차 등), 교사가 반드시 말아야 하는 부분... ■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교과 관련 체험, 자유학기 활동, 수학여행·수련활동, 진로·봉사활동, 해외 탐방 등의 범위에 대해 포함·제외·조건부로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 주시고 구분한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법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수련시설·교육청·학교·교사의 책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사전 준비, 운영 과정, 사후 대응 등 단계별로 구분해 말씀해 주세요. ■ 법률 제정 이후, 교육청(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보다 확대·강화해야 할 역할, 혹은 경감되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마무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정책) 한 가지 이상과, -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도적 과제(정책) 한 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법률 제정·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6)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규명하고 법제안 기초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초점집단면접 녹취록과 전문가 서면조사 답변서를 바탕으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비교사례분석(Comparative Case Analysis)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첫째, 주제분석은 질적 자료 내에서 패턴(주제)을 식별하고 분석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법으로(Braun & Clarke, 2006), 본 연구에서는 4개 집단(교육청, 교원, 학부모,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술에 내재된 현장체험학습의 의미, 책임 인식, 입법 요구사항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단순한 빈도 분석을 넘어,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맥락(context)을 해석하여 '교원 면책',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핵심 주제를 범주화하였다.

둘째, 각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다중 사례연구의 논리에 기반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Yin, 2018). 교육청(E), 교원(T), 학부모(P), 수련시설(Y)이라는 네 개의 독립된 사례 집단을 설정하고, 동일한 쟁점(예: 안전사고 책임 소재)에 대해 각 집단이 어떠한 관점 차이를 보이는지 대조(contrast)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집단만의 요구가 아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과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입법 과제를 구분하여 도출하였다(Creswell & Poth, 2018).

(7)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자료의 준비부터 코딩, 범주화, 주제 도출 및 해석에 이르기까지 Creswell과 Poth(2018)과 Yin(2018)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단계적 순환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의 첫 단계로 연구진은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였다. 면접 조사(FGI)의 모든 녹음 내용은 빠짐없이 전사(transcription)하여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였으며, 전문가 서면조사의 응답 자료 역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였다. 이후 연구진은 전사된 원자료와 서면 답변서를 반복적으로 정독(immersion)하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였고, 참여자의 진술 내용에 내재된 핵심 쟁점과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메모 작업을 병행하였다.

기초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본격적인 개방 코딩(open coding)과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원자료에서 연구 문제와 직결되는 유의미한 진술을 분해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으며, 도출된 수많은 코드를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분류하여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네 집단 간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집단 간 교차 분석(cross-case analysis)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이 ‘책임 소재’나 ‘지원 체계’와 같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지점과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지점을 구체적인 주제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도출된 주제와 해석이 원자료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 및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상호 검토(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NVivo 12.0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코딩의 일관성을 점검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제들은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생생한 인용문과 함께 기술하여 결과의 실증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8) 연구 윤리 준수 및 익명성 보장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권리 보호와 생명윤리 준수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으며(승인번호: 202510-HR-수시-002), 분석 및 결과 제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첫째, 참여자 익명화(anonymity)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였다. 조사대상자 목록, 분석 결과 및 인용문에는 개인이나 소속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각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알파벳 코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담당자는 ‘E(Education Office)’, 교원단체 대표는 ‘T(Teacher)’, 학부모단체 대표는 ‘P(Parent)’,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Y(Youth Facility)’로 범주화하고, 참여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부여(예: E1, T2, P3, Y1 등)하여 구분하였다.

둘째, 자료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을 철저하게 유지하였다. 수집된 녹음 파일, 전사 자료, 서면 답변서 등 모든 원자료는 연구진의 암호화된 저장 장치에 보관되었으며, 연구진 이외의 제3자 접근은 원천 차단되었다.

셋째,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준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인 현장체험학습 법제화 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에만 활용되었으며, 연구 종료 후 규정된 보존 기간(3년)이 경과하면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될 예정이다.

2)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교육청 담당자, 교원, 학부모, 수련시설 관계자 등)로부터 수집된 면접 및 서면 자료를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실태와 입법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기술한 분석 절차에 따라 수집된 원자료를 해체 및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경험과 요구는 특정한 맥락을 가진 공통된 주제로 수렴되었다.

분석 결과,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고충 토로에 그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의 본질적 성격 규명에서 시작하여, 실제 운영상의 직무 한계와 법적 책임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법률 및 지원기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리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여 분석 내용을 총 5개의 대범주(① 현장체험학습의 정의, ② 교사의 직무 범위, ③ 책임 소재 및 면책, ④ 법률적 기반, ⑤ 전문지원기관 설립)로 범주화하였다.

이 5가지 범주는 현재 학교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제정될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를 시사한다. 도출된 대범주와 그에 따른 하위 주제(주요 쟁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7. 내용 분석의 범주와 주제

| 범주 | 주제 |
|---|---|
| 1. 현장체험학습의 정의 |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중심으로의 공통된 정의 2) 학생 안전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공적 책임 강조 3) 학교 주관 여부가 결정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정체성 4) 현장체험학습의 정의에 대한 집단별 의미의 차이 |
| 2.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의 직무 범위 | 1) 교육·생활지도 중심의 교육과정의 책임자 2) 행정·계약·안전 등 '비교육적 업무'의 외부화에 대한 합의 3) 법적 책임의 명확화와 교사 면책의 제도화 요구 4) 전문 인력·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다층적 책임체계' 구축 요구 |
| 3.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교육청, 학교의 책임 수준과 면책 범위 | 1) '결과 책임'이 아닌 '과정 책임'을 기준으로 한 면책 원칙 2) 사전-운영-사후의 '단계별 공동책임 체계'의 강화 요구 3) '면책의 조건'과 '책임의 경계'에 대한 명확화 요구 4) 교육청-학교-교원-시설 간 '다층적 역할 분담 구조'의 요구 |
| 4.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법률 내용 | 1) 교원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의 국가 규범화 2) 안전관리 기준의 법적 명확화와 표준화 요구 3)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의 제도화 필요성 4) 행정 절차의 일원화 및 간소화 요구 |

| 범주 | 주제 |
|--|--|
| 5.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내용 | 1) 행정·안전·법률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센터'의 필요성 2) 보조·안전요원 인력풀의 국가적 제도화 요구 3) 통합 행정체계와 운영의 표준화 요구 4) 사고 대응을 위한 공적 보호체계의 법제화 5) 지역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요구 |

(1) 현장체험학습의 정의

현장체험학습의 정의를 둘러싼 각 집단 간의 미세한 관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교육청·교원·학부모·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현장체험학습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공통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집단은 현장체험학습을 단순한 외부 활동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의 확장된 형태로서, 높은 수준의 안전·책임·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공공적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학교가 운영을 승인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이는 향후 법률 제정 시 현장체험 학습의 범위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적 토대가 될 것이다.

[주제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중심으로의 공통된 정의

관점은 달라도 네 집단 모두 현장체험학습이 학교 교육과정의 목적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단순한 외부 활동이나 관광·여가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의 목적·내용·성과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습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동의한다. 교육청은 이를 '정규 교육과정에 사전 편성된 활동'이라는 기준으로 구체화하면서 교육계획과 시수 편성 차원에서 엄격한 연계를 요구한다. 교원은 보다 교육현장 중심의 언어로 이를 설명하며 현장체험학습이 교육 목표와 학습효과가 명확히 설정된 교수·학습활동이어야 한다고 본다. 학부모는 학교가 교육과정의 일부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활동만을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하며,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교과, 진로, 핵심역량 등 교육 목적에 기반한 연계를 활동 인정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다.

연구자 :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E9 :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내의 수업 시수로 편성하여 학년 전체가 전일제로 운영하는 체험학습을 현장체험학습으로 규정하면 좋을 듯함. '현재' (방과후·주말 제외)

T1 : 이제 그 판단 기준이 교육과정과 연관되어 있나, 안전관리에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그다음에 교육적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과 관련 체험은 당연히 포함되고 자유학기 활동이나 진로체험활동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포함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건부로 이제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같은 경우도 안전 인증을 a 등급 받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안전요원이 학생 5명당 1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건부로 포함돼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해외 탐방이라든가 스포츠 뭐 그런... 합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별도로 규정해야 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3 : 이렇게 학교에서 주체가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대신에 교장 승인이 있었던 진로 봉사활동이라든가 해외 탐방 활동 같은 경우는 이게 교장 승인의 여하에 따라서 조건부로 현장체험학습 범위로 또 넣어서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Y3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생들의 교과 과정과 연관된 비슷한 모든 활동으로 봐야겠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과정과 연결돼. 근데 이게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솔직히 다 알 것 같아요. 그게 뭐 호연지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르신 근로 봉사는 윤리 도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교과 과정과 연계된 활동 뭐 이게 체험활동의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제 2] 학생 안전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공적 책임 강조

네 집단 모두 학생 안전, 책임 소재의 명확화,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 없이는 어떠한 활동도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교육청은 표준화된 절차, 보험 가입, 안전 매뉴얼 등을 제도적 요건으로 명시하며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현장체험학습 인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교원은 안전과 예산에 관한 기준을 개별 학교나 교사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행정 책임의 균형을

요구한다. 학부모는 안전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은 활동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 체험학습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또한 활동 범위를 확대 하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안전 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 가치만으로 정의되기보다는 공적 책임이 수반되는 제도적 공교육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 : 법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교사의 책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E7 : 교육청은 매뉴얼 안내 및 의료·법률 지원, 교사의 운영과정에 대한 매뉴얼·지침 준수 여부

T2 :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교육청에게 저는 전반적인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관이 져야 한다.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기관이 대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과정, 운영 과정, 모든 어떤 그 외의 교육활동 외의 것들은 일단 책임진다.

연구자 : 현장체험학습을 준비·운영하시면서 가장 크게 인식하는 문제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P2 : 체험학습의 질이 업체나 예산에 따라 크게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해라. 그다음에 표준화된 안전 매뉴얼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안전관리하고 보험 체계 같은 게 좀 일관되지 않아서 학부모가 좀 불안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연구자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선생님께서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체계는 무엇입니까?

Y2 : 그러면 이제 인증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인증에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교육적인 효과들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시설들은 안전한가 지도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인증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할 필요 없이... 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제 3] 학교 주관 여부가 결정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정체성

현장체험학습이 일반적인 가족여행이나 사설 캠프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육청, 교원, 학부모, 청소년수련시설 네 집단 모두 ‘운영 주체의 공공성’과 ‘학교의 책임’을 핵심적인 식별 기제로 지목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이해관계자는 장소나 활동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그것이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되고, 학교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공적 시스템’ 내의 활동인가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데 완벽한 합의를 보였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 교원은 이를 ‘교육과정 운영권’에 기반한 교육적 지도의 관점에서 해석한 반면,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학교장의 결재, 안전계획 수립, 매뉴얼 준수 등 ‘행정적·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공적 활동임이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부모는 학교 주관 활동이 갖는 ‘안전과 신뢰’를 정체성의 근거로 들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들 또한 학교의 ‘공식적 계획과 승인’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이 사적 영역이 아닌 철저한 공적 관리 체계하에서 작동하는 ‘제도적 교육활동’임을 시사한다.

연구자 :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E6 :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장소, 운영시기, 방법 등이 결정되므로 학교에서 사전 점검, 운영을 맡고 교육청은 사고처리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전담번호사 운영을 맡고 주도적으로 사후 수습을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함.

T1 :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득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장체험학습과 일반적인 여행을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3 : 그러니까 평생 학습 범위를 봤을 때 이제 저는 교과 관련 체험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과 관련 체험부터 자유학기 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까지는 현장학습의 범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로 봉사나 해외 탐방 같은 경우는 조건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해외 탐방도 저희는... 예를 들면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 팀이 중국에 이번에 공연 겸 해서 간 경우가 있거든요. 멋지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은 그것은 이렇게 학교에서 주체가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대신에 교장 승인이 있었던 진로 봉사활동이라든가 해외 탐방 활동 같은 경우는 이게 교장 승인의 여하에 따라서 조건부로 현장학습 범위로 또 넣어서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Y3 : 저희(시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학교의 계획과 승인’이 있느냐는 겁니다. (중략) 학교라는 공적 기관의 ‘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는 활동이라는 점, 그게 바로 현장체험학습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주제 4] 현장체험학습의 정의에 대한 집단별 의미의 차이

앞서 [주제 3]에서 확인된 ‘공적 정체성’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인 ‘법적 정의’와 ‘포섭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뚜렷한 인식의 간극이 확인되었다.

교원은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교과 연계 활동’으로 엄격하게 한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 역시 범위가 모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과 무한 책임을 우려하여 ‘명확한 법적 테두리(교육과정 기반) 설정을 선호하였다. 반면, 학부모는 이를 교실 밖에서의 ‘추억과 경험’이라는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들은 가장 포괄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설 관계자들은 「청소년활동법」의 개념을 차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수련·문화·교류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광의(廣義)의 교육활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인식의 스펙트럼은 향후 법률 제정 시, 현장체험학습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기보다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유연하게 포용할 수 있는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교육청: ‘법적·제도적 범주로서의 현장체험학습’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년(학년) 단위 전일제 활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학여행·수련활동·1일형 체험활동의 세 가지 유형으로 엄격히 한정하였다. 이러한 협의적 정의는 법령·지침 기반의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험·안전·예산 관리와 같은 공적 책무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의 정의는 ‘책임가능성과 행정관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최소 단위’라는 성격이 강하다.

연구자 :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E4 : 교육과정 속에서 계획되어진, 학년 전체로 이루어진 학교 밖 활동을 의미함. 수련활동, 수학여행, 1일형 현장체험학습,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포함. 학년 단위가 아닌 소수 그룹의 학교 밖 활동은 현장체험학습의 의미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교과 관련 체험, 자유학기활동, 진로, 봉사활동, 해외 탐방은 제외

E18 : 1일형 현장체험학습(1일 교육과정 시수 전체를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숙박형), 수련활동(숙박형) 최소 정의

E20 : 수학여행·수련·1일형

■ 교원: '교육활동 그 자체로서의 현장체험학습'

교원은 현장체험학습을 학생의 학습 경험을 설계·지도하는 교수·학습 행위로 인식하며 법령에 규정된 3대 유형을 중심으로 한 협의적 구분을 교육적 관점에서 불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체험·자유학기제 활동·진로체험·봉사활동 등 교육적 목적이 명확한 활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원의 정의는 현장체험학습을 '교육과정 실행의 확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자 :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T2 :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와 교사가 설계하는 교육과정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교과로 배운 것 그다음에 글로 배운 것을 내가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면 다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교육 과정 속에서 교사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갈지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교사가 판단하는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타 지원 체계는 최대한 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 학부모: '학교 책임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공교육 서비스'

학부모는 현장체험학습을 학교가 공식적으로 주관·승인하고 책임·안전·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공교육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즉, 활동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학교가 책임을 지는가가 포함·제외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한다. 외부기관 주체 활동은 원칙적으로 현장체험학습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학교가 주관으로 전환하고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조건부 포함될 수 있다. 학부모의 정의는 '공교육의 신뢰성과 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한 책임 기반 정의'로 설명된다.

연구자 :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P1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이 다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봐요. 교육의 일환으로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은 고등학교까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100%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저는 무조건 이 법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기준도 지자체마다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필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성장 지원을 위한 광의(廣義)의 교육활동'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현장체험학습을 단순한 학교 밖 행사가 아닌, 「청소년활동법」상 '청소년활동'의 맥락에서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포괄적 교육과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들은 활동의 행정적 유형보다 본질적인 교육 효과를 중시하며, 수련·교류·문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체험 기반 학습의 확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연구자 :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Y1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저는 현장체험학습도 이처럼 (중략) 수련, 교류, 문화 활동 등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정의에 대한 집단별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8. 현장체험학습의 정의에 대한 집단별 의미

| 구분 | 교육청 | 교원 |
|---------------|--|---|
|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년(학급) 단위 전일제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자체 |
| 포함 범위의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대 핵심 유형으로 한정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전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자유학기, 진로, 봉사는 교육활동에 포함 숙박형은 조건부 포함 |
| 제외 범위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봉사, 교과특화, 해외 탐방 등은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탐방, 합숙형 캠프 등은 교육 목적 약해 제외 |
| 운영 인정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연계 학년 단위 전일제 표준 절차(사전-현장-사후) 예산 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교육과정 판단 권한 중심 단 안전·책임 기준은 국가가 명확히 |
| 행정·제도에 대한 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조례, 매뉴얼 일원화를 통한 통일적 기준 중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과 행정은 분리 교사는 교육활동 중심 |
| 구분 | 학부모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
|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주관의 책임과 안전이 보장되는 공교육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및 진로 연계 체험 중심 활동 전체 |
| 포함 범위의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가 주관 및 승인하고 관리체계가 있는 모든 활동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연계 활동 전반(당일, 숙박 모두) 진로, 봉사, 수학여행 등 포괄 |
| 제외 범위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비관여 개인과 외부기관 활동은 불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탐방은 형평성 문제 있어 조건부 포함 |
| 운영 인정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주관 승인 체계 안전과 정보 투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자원 활용 교육과정 연계 체험 다양성 강조 |
| 행정·제도에 대한 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권, 정보 제공, 안전 기준 공개 등 투명성 중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과 평가 일원화 법적 위상 강화 등 제도적 파트너십 요구 |

(2)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의 직무 범위

분석 결과,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 교사가 수행해야 할 ‘본질적 직무’와 ‘비본질적 직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는 교육과정의 기획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교육 고유의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현재 교사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계약, 정산, 시설 안전 점검 등의 행정·기술적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담 인력에게 이관하는 ‘직무의 구조적 재편’이 시급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로 제시되었다.

[주제 1] 교육·생활지도 중심의 교육과정의 책임자

네 집단 모두 교사의 직무는 행정가가 아닌 ‘교육과정의 기획자’이자 ‘학생 성장의 조력자’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교원 단체는 현재 교사들이 여행사 직원이나 안전요원처럼 취급받는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교사의 역할을 ‘교육활동 기획·사전교육·생활지도’라는 교육 본연의 영역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학부모와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또한 교사가 프로그램 운영 실무보다는 학생의 학습 경험을 조정하고 정서적 안전을 살피는 ‘교육적 지도’에 집중할 때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 : 법률에서 교사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E14 : 계획·생활지도·사전점검(행정 분리)

E16 : 계획·사전답사까지는 교사 직무

E17 : 교육활동 총괄, 입찰·계약은 행정실

T1 : 교사 직무가 원래 이제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본질적 역할이 명확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 지도 평가 피드백 이 부분은 교사가 맡아야 되지만 지원 인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행정 업무는 지원 인력이 맡아야 되는 거죠.

T3 : 교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스 계약하고, 숙소 예약하고, 돈 걷고 정산하는 일에 에너지를 90% 이상 쓰고 있어요. 법률에서는 교사의 직무를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로 딱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가 진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P3 : 딱 그 생활지도까지만 선생님들이 미리 계획하고 미리 일어날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그것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것까지는 선생님이 하시되 그런.. 아까 저는 좀 놀랐거든요. 이렇게 음주 측정까지 선생님이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좀 과하지 않나

Y2 : 그러니까 저희 때는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청소년연맹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청소년 단체 활동들이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많은 행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고 교사들을 폄하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교사들이 이거를 이거는 분명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주제 2] 행정·계약·안전 등 '비교육적 업무'의 외부화에 대한 합의

교사에게 전가되어 온 비교육적 업무를 과감하게 '외부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장 강력한 합의 사항 중 하나다. 네 개 집단은 공통적으로 계약·정산·시설 점검·차량관리 등은 교사의 전문성과 무관한 행정·기술적 영역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교원 단체는 이러한 업무가 교권 침해와 교육력 낭비의 주범임을 지적하였고, 교육청과 학부모 역시 이를 행정 전담 인력이나 전문 지원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교사를 '잡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

연구자 : 법률에서 교사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E10 : 법에는 교사의 본질 직무(교육·생활지도)만 명시

E11 : 교사가 반드시 맡아야 할 부분은 학생 교육, 인솔 및 지도, 지원인력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관리, 기관이 해야 할 부분은 현장체험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체계 구축

E19 : 교육·생활지도 유지, 행정 분리. 차량 입차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 예약, 예산집행 등의 행정업무는 보조인력 또는 행정직의 업무로 분리할 수 있음

T1 :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소위 말하는 '여행사 업무'입니다. 버스 입찰 띄우고, 계약서 쓰고, 속소 안전 점검하러 사전 답사 가고, 나중에 10월 단위까지 정산하고... 이런 교육활동이 아니거든요. 이런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특히 안전 점검이나 계약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업무는 교사가 아니라 행정실이나 교육청의 지원센터가 맡아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 데리고 교육하러 가는 사람이지만, 계약하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T3 : 이제 관리자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한 명의 교사 이렇게 하지 않는 좀 그런 보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P1 :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 자기들의 업무를 제대로 총괄하지 못해서 그 대신 선생님은 a b c한테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 a b c한테는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10명 체크 됐나요? 중간중간 이런 역할은 총괄 책임은 해야 된다고 봐요. 선생님들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유 시간에 애들이 없어진다 그런 경우는 기획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돌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예측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통제를 할 수 없는 그 넓은 곳에 자유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자유 시간을 주면 안 되죠. 한정된 범위 내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을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율 시간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P3 : 안전관리 지도사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교육하는 공간은 교육을 하러 가는 공간은 분명히 선생님 안에서 거기가 왜 필요했는지 수업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손을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안전관리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중략) 자유 시간에 벌어진 일이면 그건 선생님이 다 쫓아다닐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해서 스스로 다쳤다면 그거는 부모와 그 아이의 책임이겠지만 또 피치 못할 다른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길을 지나가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에 맞게 합당하게 진행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놀이공원에 갔다가 카트에 부딪혔다. 그럼 그 카트를 운전한 사람의 잘못이라면 그거는 그쪽에서 처벌을 해야지 선생님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Y2 :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안전사고 문제죠. 이번에도 왜 저기 울산 학생 수련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고가 나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뉴스에는 굉장히 굉장히 자극적으로 수련원에서 사망사고, 암벽 등반하다가 사망 사고 발생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청소년지도사가 잘못된 것도 없고 교사가 잘못된 것도 없어요.

[주제 3] 법적 책임의 명확화와 교사 면책의 제도화 요구

네 집단 모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책임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청은 사전답사·안전교육 등은 ‘교육활동’으로 인정하되 법적 책임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교원은 법령의 ‘등(etc.)’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부모는 자유시간 사고 등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보고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 시 면책’ 조항의 법제화를 요구한다.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운영·시설·계약 관련 위험은 시설의 책임으로 규정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교사의 책임 범위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좁히고, 비교육적 영역에서의 법적 면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 요구가 도출되었다.

연구자 : 법률에서 교사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E10 : 교원 면책은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과 연계되어야 함. 교사가 기본적 준비와 안전지도를 이행했을 때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필요. 현재 교원 법적 보장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판비용·법률비용 등을 사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님. 교원이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법률에 사전·운영·사후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과 면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T1 : 고의 중과실 면책되는 그런 부분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법률상의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내가 생각해 본 바로는 이제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육적 직무 그러니까 교사가 해야 되는 교육적 직무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교사의 현장체험학습의 직무 부분에서 제외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아예 규정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P2 : 저희는 안전 지침을 준수한 경우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보조인력 좀 제도화해라. 안전요원 옆에 또 간호 인력도 다 있어야 되고 행정 지원 인력 배치 근거 좀 마련해라 뭐 그렇고... 예산 제한 조항... 지역 학교 간 아까처럼 그거 했던 말인데... 지역 학교 간 격차 좀 줄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자 명시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Y3 : 그거 말고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학교 선생님이 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도 이게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가 지도자 선생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있는데 이게 안전사고가 나면 그걸 대비해서 수련시설배상책임이라든지 뭐 교원공제 보험 같은 걸 다 가입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요번 같이 학교 그거는 정말 법 안에 이게 뭐 진짜 가해를 했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누가 저희가 학교에서 캔슬을

하는데도 '이해 갑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일정표 보면 다시 안 가던 학교들 다시 다 오신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고비 같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가느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서는 이거를 애들 활동을 활성화시키느냐,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이 데모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우리 수련활동을 없앴냐라고 하면서...

[주제 4]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다층적 책임체계' 구축 요구

네 집단 모두 교사가 단일한 책임자로 기능하는 기존 구조를 문제로 인식하며 전문 인력과 기관이 참여하는 다층적 책임·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교육청은 행정직·외부 전문 기관이 행정·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원은 지원인력 배치가 필수이며, 안전요원·보조인력이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부모는 출·하차 관리, 응급 대응 등 세부 영역별로 역할을 구분해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수련시설 담당자는 시설이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의 일차 책임을 지고 학교와 '파트너십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연구자 : 법률에서 교사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E9 : 사전연수·안전대책 수립/실시까지는 이행, 법률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센터를 구축하여 해당 센터에 충분한 인력이 있어서 해당 인력이 학교현장을 지원

T1 : 정말 아예 명확히 하는 부분 해석에 있어서 모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안전이나 행정 처리 부분은 좀 파격적으로 선생님이 하시지 않도록 하는 부분 교육적 전달 이 설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교육적 성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하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P3 : 저는 모든 총괄 책임은 교사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혼자 지금처럼 모든 아이들을 케어하고 모든 걸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 아이들이 ○명이면 기준을 마련해서 1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5명당 1명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1년부터 10년까지는 a 안전요원, 또 10명은 b 안전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 차에서 이렇게 내리는 걸 체크를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거는 선생님 몇십 명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a 요원이 담당한 10명은 그 사람이 무조건 체크한다 이런 거를 촘촘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 단계부터요.

Y2 :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파트너로서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들도 인원이 무한정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 인원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명이 있던 15명이 있던 이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야간 당직에 생활지도에 뭐까지 다 해버린다고 하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무가 너무 과중해서 1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내가 평생 업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집단별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9.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집단별 의미

| 구분 | 교육청 | 교원 |
|-------------------|--|--|
| 교사의 핵심 역할 정의 | • 교육·생활지도 중심 사전교육 포함 | • 교육·생활지도만 담당해야 함 |
| 교사 직무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 | • 시설 점검, 계약 및 정산, 차량 및 안전요원 관리 등 행정과 안전 업무 | • 시설 점검, 차량, 보험, 계약, 정산 등 모든 행정과 안전 실무 |
| 안전·행정 업무 수행 주체 | • 행정직 • 외부 전문기관 담당 | • 행정실 • 교육청 • 전문기관 담당 |
| 사전답사·안전교육의 성격 | • 교육활동 인정 • 법적 책임과 분리 | • 교육활동 인정 • 책임 전가 금지 |
| 법적 책임 원칙 | • 교사 법적 책임 축소 직무 분리 법제화 필요 | • 모호한 조항 삭제 • 명확한 면책 기준 필요 |
| 구분 | 학부모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
| 교사의 핵심 역할 정의 | • 교육적 설계, 생활지도, 사전교육 중심 | • 교육적 지도 • 학생 관리 중심 |
| 교사 직무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 | • 출·하차 통제, 응급 대응, 계약 및 정산 등 전문 업무 | • 프로그램 운영, 시설 안전관리, 계약 및 정산 등 실무 전부 |
| 안전·행정 업무 수행 주체 | • 보조인력 • 행정실 • 교육청 담당 | • 수련시설 및 전문 안전인력 담당 |
| 사전답사·안전교육의 성격 | • 교육적 범위 인정 • 책임 한계 명확화 | • 교육적 점검(교사), 안전 실무는 시설 책임 |
| 법적 책임 원칙 | • 자유시간 등 한계책임 규정 명문화 요구 | • 안전사고와 운영 책임은 시설 1차 책임 원칙 |

(3)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교육청, 학교의 책임 수준과 면책 범위

안전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와 면책 범위에 대하여, 네 개 집단 모두 사고의 ‘결과’만을 놓고 교사 개인을 처벌하는 현행 관행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운영-사후 단계에서 합리적인 안전 조치와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과정 중심의 책임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교사 1인에게 집중된 위험을 교육청, 학교, 체험처가 분담하는 ‘공동책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법적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는 면책이 교사의 특혜가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주제 1] ‘결과 책임’이 아닌 ‘과정 책임’을 기준으로 한 면책 원칙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고의 결과 자체가 아니라, 사고에 이르기까지 교사, 학교, 기관이 어떤 주의의무를 이행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합의를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장체험학습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이라는 전제를 공유하며 책임을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존 관행은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공교육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교육청은 책임 판단을 ‘사전-운영-사후’의 3단계 구조로 체계화하여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의무인 계획, 안전점검, 사전교육, 표준 매뉴얼 준수, 응급 대응 및 보고가 충실히 이행되었다면 면책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하며 단순한 경과실은 면책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교원은 가장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한 집단으로 사고 책임은 ‘과정 중심의 합리적 책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사가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그 자체가 면책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학부모 역시 교사의 책임을 무한대로 확대하는 구조에는 반대하며 교사가 지침을 준수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치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교사 보호가 곧 공교육의 안정성과 학생 안전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라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학교, 시설, 교사의 이원적 책임 구조를 전제로 각 기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 면책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연구자 : 법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교사의 책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E6 : 교육청 - 매뉴얼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여건 등을 충분히 안내 시 책임 없음
 학교 - 매뉴얼의 내용대로 잘 수행했다면 책임 없음
 교사 -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면 책임 없음
 학교, 교사 - 예방조치와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면 면책
 교육청 - 사후 사건 수습 조치 및 변호사 지원 책임

E12 : 단계별 면책, 중과실만 제재
 사전 준비 - 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침의 준수 여부와 사전답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책임 수준이 판단되었으면 함
 운영 과정 - 안전사고 관계된 인과 관계를 분석하여 책임자가 결정되었으면 함. 그 대상이 보조인력이 될 수도 있음
 사후 대응 - 교육부 안전사고 처리 지침(고시) 준수 여부 등
 *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사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 직의 상실을 고려할 수 있으나 경과실 등의 경우 직의 상실이 되지 않도록 되길 바람

T1 :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다른 안전 책임관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교사 같은 경우에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를 준수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지침 위반 사항이 없으면 면책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고 이후에는 뭐 그런 공식 절차에 따라서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면책이 되는 부분을 정하는데 이게 사전 준비 운영 과정 사후 단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P2 : 운영 과정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간 관리 책임은 학교와 교사가 공동으로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처럼 이제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이나 이런 거 묻기보다는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학교와 교육청의 관리 감독 책임도 물어야 한다.

Y3 :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책임 소재를 어디에서 갖느냐 이것보다는...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대로 준해서 했다면 책임 소재는... 예를 들어서 교육 공제나 보험을 통해야지 체크리스트대로 다 했는데 또 사고가 났어도 이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주제 2] 사전-운영-사후의 '단계별 공동책임 체계'의 강화 요구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의 책임은 특정 개인이나 단일 기관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사전-운영-사후의 단계별로 서로 다른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책임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사고의 원인과 관리 과정은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다층적 구조이므로 책임 또한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구조적 인식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집단이 강조하는 책임의 범위와 핵심 단계는 서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교육청은 상위기관으로서의 제도적·행정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체험처 인증, 인력·예산 지원, 행정 시스템 구축과 같은 구조 설계 역할을, 운영 단계에서는 안전요원 배치 및 지역 지원 체계 유지 역할을, 사후 단계에서는 보상·법률 대응을 총괄하는 최종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교육청은 단계 전반에 걸쳐 '제도적 안전망 제공자'로서의 위치를 가장 강하게 인식하였다.

교원은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책임을 교육적 책임에 해당되는 학생 지도와 사전 교육, 그리고 위험 파악으로 한정하고 법적·행정적 부담은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사전과 운영 단계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생활지도와 교육적 감독에 국한되어야 하며 사고의 법적 책임은 교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져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는 전체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조정자이자 완충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계획 승인과 인력 조정, 운영 단계에서는 현장 운영의 조정과 지원, 사후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지원과 조직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는 교육청과 교원 사이의 '중간 매개자'로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학부모는 책임의 분절성과 단계별 역할 명확화를 가장 강하게 요구한 집단이다. 이들은 교사는 교육적 영역만 담당하고, 행정·안전·시설 관리는 교육청과 수련시설이 맡아야 한다는 분담 구조를 강조하였다. 이는 교사의 과도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고 제도와 시설이 안전의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학교와 시설 간 협력 구조를 핵심 원리로 제시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학교와 교원 그리고 시설이 함께 위험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운영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과 물리적 안전은 시설이 담당하고 학생 생활지도는 교사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후 단계에서도 공동 보고 및 보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연구자 : 법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교사의 책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E5 : 교육청, 학교,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단계별 이행 시 면책/감경 필요, 수치화는 곤란.

E10 :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교육부가 기준과 예산 틀을 제시하고, 교육청은 이를 학교에 안내·지원함. 학교는 계획·점검을 맡고, 교사는 학생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담당함. 운영과 사후 대응에서도 교육청이 직접 관리 주체가 되기는 어렵고, 제도·예산·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T1 : 이제 사전 준비 단계부터 운영 과정, 사후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책임 수준이 다 다르고 그 부분이 다 빠짐없이 법률에서 적용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안전과 관리 이쪽에서는 교육청이고 현장에서는 교사가 맡고. 교육청은 이제 그런 체험처나 인력 예산 지원하는 부분

T2 :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그 과정을 책임지고 그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랬을 때 교사의 어떤 수업 관련 학습에 나가는 수업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학습적인 부분 아니면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된 부분을 학교에서는 지원한 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학교라고 하면 학교장이시잖아요. 교사가 어떤 체험학습을 나가려고 할 때 뭐 이런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이 학교여야 하고, 이 모든 책임의 통괄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주로 고민하고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게...

P3 : 사전 준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랑 교사가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근데 이제 운영 과정에 대한 매뉴얼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후 대응은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운영 과정을 계획한 게 같이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 대응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교육청의 몫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Y2 : 저희 지도자들이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련원 내에 시설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수련원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프로그램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데 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 보면 교사들이 수련활동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나오고 프로그램을 같이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생활지도...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것도 있어요. 야간 생활지도를 했다는 그거를 서명을 확인서를 그거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리면 야간 OT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거죠.

[주제 3] '면책의 조건'과 '책임의 경계'에 대한 명확화 요구

각 집단은 세부 주장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면책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계를 법·제도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공통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첫째, 사고의 결과만으로 교사나 특정 기관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합리적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은 경과실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 간 강한 합의가 드러난다.

둘째, 교사에게 모든 사고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는 구조적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다. 교원은 예측 통제 불가 상황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자기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는 시설 관리나 안전요원 배치 등 학교가 관리할 수 없는 요소의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았다.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시설 운영상의 안전 문제는 시설 책임이며,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제도적 오류라고 강조했다. 각 기관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만 책임지고 통제 불가능한 영역의 책임 전가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구조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셋째, 현재 책임 구조가 관행이나 지침 수준에 머물러 해석의 차이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과 계약서 수준에서 책임의 범위와 면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요구하였다.

연구자 : 법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교사의 책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E1 : 사전 예방·안전교육 이행 시 학교·교사 책임 완화

E8 : 중대한 과실 아니면 직 상실 방지 수준으로 양형 완화

E12 : 단계별 면책, 중과실만 제재

T2 : 솔직히 교통사고나 숙소 화재 같은 건 교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인של 책임자라는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법률에서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나 ‘시설 및 운송 업체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교사의 주의 의무는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P1 : 권한을 가진 곳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학교, 교사 순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총괄 책임을 져야 하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보상금 이상을 학부모가 요구할 때도 교육청이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에게 다 떠넘기는 지금의 형태는 부적절합니다. 교육청에서 법률 자문도 해주고 제도를 지원해 줘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신뢰가 생길 것 같아요.

Y2 : 그래서 실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대응 체계... 물론 여기에서 보면 사전 준비를 어떻게 했냐, 과정이 운영 과정이 어땠느냐, 사후 대응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매뉴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전에는 안전 교육을 차를 타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안전 교육들이 필요하고 또 차 타면 안전벨트를 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체크리스트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번에 안전기본법인가 그 뭐지? 하여튼 그제 학교 안전법에 보면 너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일일이 다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전에 안전 교육 차를 타고 내릴 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실제 가능한 것들을 했다고 하면 그게 좀 면책이 될 수 있는 이런 범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500개 되는 것들에 뭐가 됐는지도 모르고 불분명한 것들로 면책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 수준에서 좀 이게 정리가 되면 좋겠고 실현 가능한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체크리스트가 나와서 그것들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되어야지 이걸 모두 교사에게 하는 건 어렵다.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도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사망 사고가 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운전사나 뭐 여기 뭐 학생이 무얼 잘못했는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처럼 그런 게 상식선에서 정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주제 4] 교육청-학교-교원-시설 간 '다층적 역할 분담 구조'의 요구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단일책임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각 집단은 이러한 구조가 교사의 법적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오히려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교사는 교육과 생활지도 중심의 책임을 맡고 행정 절차와 물리적 안전과 시설 관리 등은 전문기관과 인력이 담당하며 교육청은 법·행정·인력 지원의 총괄 책임을 지는 상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즉, 각 단계와 영역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다층적 책임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사에게 집중된 단일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공통된 요구가 확인된다.

연구자 : 법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교사의 책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E7 :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이나 지원센터가 행정적·법적 지원을 전담하고,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을, 시설은 안전 관리를 맡는 식의 역할 분담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명확하고, 교사들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E11 : 교육청 - 매뉴얼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여건 등을 충분히 안내 시 책임 없음

학교 - 매뉴얼의 내용대로 잘 수행했다면 책임 없음

교사 -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면 책임 없음

T1 : 교육청은 이제 그런 체험처나 인력 예산 지원하는 부분

T2 :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T3 : 기관 선정이나 인력풀, 행정 시스템 이런 거는 당연히 교육청의 것일 거고 교사는 현장에서의 사전, 그리고 그 현장 사후에 어떤 것들을 했는가

P1 : 권한을 가진 곳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학교, 교사 순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총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지금처럼 학교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그러니까 안전공제에서 나오는 거 이상으로 요구를 한다. 학부모가 그럴 때도 교육청에 담당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면은 교육청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더욱더 안전관리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강을 할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가야지 개인에게 다 떠넘기는 지금의 형태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 이런 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사실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교사 개인한테 법률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면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법률자문도 해주고 좀 그런 제도를 지원해 줘야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들도 좀 신뢰가 생길 것 같고

Y2 : 물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숙소에서 주무셔도 그것만 가지고도 되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숙소 배정을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의 기본 상황들은 이름도 파악이 안 되고 이 아이들이 평소에 몸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간에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숙소를 들어가서 아이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하세요. 아이들 중에 혹시 아픈 아이들이 없는지, 자기 반 아이들은 그다음에 수련활동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서 선생님들이 그 체크리스트에...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저랑 이렇게 같은 방을 썼는데 나는 애랑 같이 있기 싫어요 하고 방을 바꿔버리면 우리는 이름표가 적혀 있기는 하더라도 이름 이랑 얼굴이랑 매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득해서 생활지도는 교사들에게 넘기는 편이에요. 학생 수련원은 생활지도를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교육청, 학교의 책임 수준과 면책 범위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0.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시 교원, 교육청, 학교의 책임 수준과 면책 범위에 대한 집단별 의미

| 구분 | 교육청 | 교원 |
|-----------|--------------------------------------|---|
| 책임 원칙(기준) | • 3단계 책임 분리(사전-운영-사후) | • 결과 아닌 '과정 중심 책임' |
| 사전 단계(준비) | • 안전인증 • 예산 • 인력 • 행정시스템 구축 | • 안전교육 • 위험요인 점검 • 생활지도 |
| 운영 단계(현장) | • 안전요원 배치 및 지원 체계 유지 | • 표준매뉴얼 준수, 교육적 지도 |
| 사후 단계(대응) | • 법률 대응 • 언론 대응 • 보상 총괄 | • 응급조치 • 보고 • 조사 협조 |
| 면책 기준 | • 주의의무 충실하면 면책 고의·중과실만 제재 | •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 시 면책 (단순 경과실 포함) |
| 책임 귀속 기준 | • 제도와 행정 지원 책임 • 절차 준수 시 조직 단위 면책 | • 교육적 책임만 부담 • 행정과 시설 오류는 타 주체 책임 |
| 구분 | 학교 | 학부모 |
| 책임 원칙(기준) | • 운영의 '조정자·완충자' 역할 | • 공동책임 합리적 면책 구조 |
| 사전 단계(준비) | • 계획 승인 • 서류 • 예산 • 인력 조정 | • 계획 • 위험평가 • 사전교육 이행 |
| 운영 단계(현장) | • 현장 지원, 교사·보조인력 조정 | • 매뉴얼 준수 시 교사 면책 • 안전요원·시설 1차 책임 |
| 사후 단계(대응) | • 심리지원 • 재발방지 대책 | • 교육청·학교 공동 대응 • 교사는 보고·협조 중심 |
| 면책 기준 | • 절차와 인력기준 적법 이행 시 책임 경감 | • 교사는 주의의무 이행 시 원칙적 면책 |
| 책임 귀속 기준 | • 조직적 관리 • 조정 기능 중심 직접 책임 제한 | • 수련시설: 운영과 안전 1차 책임 • 학교와 교육청: 관리·대응 책임 |
| 구분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 X |
| 책임 원칙(기준) | • 학교와 시설 이원적 공동책임 | |
| 사전 단계(준비) | • 학교(교육) 시설(안전) 교사 (학생 특성 파악) 공동 준비 | |
| 운영 단계(현장) | • 시설: 운영·안전 • 학교: 생활·교육지도 | |
| 사후 단계(대응) | • 학교·시설 공동 보고 • 보험·보상 병행 | |
| 면책 기준 | • 각 주체가 담당 범위 내 의무 이행 시 공동 면책 | |
| 책임 귀속 기준 | • 시설 결함은 시설 책임 • 학생 생활문제는 학교 책임 | |

(4)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법률 내용

분석 결과, 교육청·교원·학부모·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서로 다른 운영 현실과 이해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강력한 합의를 보였다. 특히 현재의 조례나 지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책임 구조의 명확화, 안전 기준의 표준화, 인력 및 예산 지원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각 집단이 요구하는 법률의 세부 내용은 상이하나, 모두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입법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 1] 교원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의 국가 규범화

모든 집단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법적 과제는 교사 면책 조항의 명문화이다. 교육청과 교원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과도한 법적 부담이 공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각 집단은 다음 요소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 주의의무(사전-운영-사후) 이행 시 원칙적 면책
- 고의·중과실만 법적 책임의 대상
-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민·형사상 보호 장치

특히 교원은 '면책은 지침이 아니라 국가 법률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학부모 역시 안전 지침을 준수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 구조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요구는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 활동인 동시에 위험관리 활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사가 '결과 책임'의 중심에 서왔다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연구자 : 만약 '(가칭)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E4 : 교원 면책 기준 최우선

E6 : 면책 문구·정의 구체화, 예방·조치 세부예시, 교육감 위임 배제

(교원 면책 규정 예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안전사고로 인한 모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안전관리 기준) '안전사고'의 정의 구체화 →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면책이 가능함. '예방 및 안전조치' 구체화 → 세부적인 예시안을 교육부에서 안내했으면 함. 법률 제정 시 교육감에게 위임 없어야 함(조례 개정해야 하므로..). 전국 시도 교육청 일원화 필요

E9 : 교원 면책, 안전 기준

T1 : 교사는 그런데 교육적 설계보다 행정 처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갔다 와서 또 보고하고 이런 과정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시냐면 뭐 교사로서의 전문성보다는 현장체험학습은 행정 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과도한 행정 처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 행정 처리 능력을 보는 게 현장체험학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도적으로는 이제 고의 중과실 없으면 면책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판례 같은 것도 나와야만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이 부분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상으로 고의 중과실 면책된다라는 부분은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법률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완벽한 면책은 아니라는 걸 교사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민사소송 걸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부분이 교사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인 거고. 보조인력이 부족하고 정말 20명 되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인솔하면서 그 안전관리를 교사한테 책임진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행정 업무 부분 개선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P3 : 비슷하긴 한데 교사들은 일단 항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6월에 개정된 법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Y1 : 뭔가 국가에서 다른 데 지금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하니까 다 온전히 자기네 책임인데 이쪽 느낌은 책임 소지를 최소화하고 싶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시급한 거는 어쨌든 안 가는 거는... 제일 일선은 뭐 지금 학부모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교사분이거든요. 교사 책임 소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주제 2] 안전관리 기준의 법적 명확화와 표준화 요구

안전기준의 구체화와 단일화는 모든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요구였다. 교육청은 지역별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 단위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학부모는 학생 안전권 보장을 위해 이를 의무 규정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수련 시설 담당자 또한 시설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운영기관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공통적으로 요구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사고의 범위 정의
- 표준 매뉴얼의 법적 근거
- 안전요원 배치 비율 및 자격 기준
- 사전 시설 점검·운영기준·응급 절차의 명문화
- 시설·기관·학교 간 안전 책임 분리와 공동책임 구조

이는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규정이 현재 ‘행정 해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법률로 격상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연구자 : 만약 “(가칭)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E5 : 교원 면책, 보조인력 제도화, 안전관리 기준, 예산 지원, 행정 절차 지원

E10 : 교원 면책은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과 연계되어야 함. 교사가 기본적 준비와 안전지도를 이행했을 때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필요. (중략) 보조인력 제도는 이미 법과 조례에 근거가 있으므로, 이제는 보조인력 단가와 예산 지원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기준이 필요함. 또한 계약·보고 등 행정 절차는 가장 큰 부담이므로, 교육부 중심으로 간소화된 표준 절차를 마련해 시도와 학교에 안내해야 함.

T1 : 고의 중과실 면책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법률상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이제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육적 직무 그러니까 교사가 해야 되는 교육적 직무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교사의 현장체험학습의 직무 부분에서 제외된 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아예 규정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P2 : 체험학습의 질이 업체나 예산에 따라 크게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해라. 그다음에 표준화된 안전 매뉴얼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안전관리하고 보험 체계 같은 게 일관되지 않아서 학부모가 좀 불안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Y2 : 그러면서 학생 수련원이나 청소년활동을 하는 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어느 거는 교육청 어느 거는 뭐, 어느 거는 지자체, 어느 거는... 이렇게 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주제 3]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의 제도화 필요성

보조인력·안전요원·행정보조 인력풀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전 집단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교육청은 전국 통일 기준의 인력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교원도 교사가 담당할 수 없는 행정·안전 실무의 대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다. 학부모도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학생 안전 수준이 확보된다고 주장했고, 청소년수련 시설 담당자도 시설 운영 책임을 수행할 전담 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라 자격 기준, 노동 단가, 배치 절차, 지원 방식이 국가 법률로 규정된 ‘공공 인력 시스템’을 요구하였다. 예산 측면에서는 학부모 집단에서 특히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현장체험학습을 무상화 또는 단계적 무상화로 전환해 학생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적 불평등 해소와 직접 연결되며, 국가-지자체-교육청의 공동 책무 구조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연구자 : 만약 “(가칭)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E19 : (교원 면책 명확화) 교원 면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로 인해, 학생교육활동에 열정을 갖고 현장체험학습을 기획·운영하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학교 업무를 기피하거나,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실시하는 교원이 감사지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책이 되고 있는 실정임. 보조인력 지원은 필요하나, 돌봄전담사와 같은 형태로 도입되지 않기를 희망함. 오히려

교원들에게 업무 과중이 됨

(예산 지원) 교육청에서 인력풀을 제공하여 보조인력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E20 : 예산지원·행정지원 절차

T2 : 그런 전문 인력을 좀 활용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모든 행정
업무와 관련된 것은 교육청이 지원한다. 그리고 학교는 뭘 하나면 교육청이 지원해 줬으
면 우리가 이 전중후를 다 겪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것이 학교의 몫인
거예요. 교사의 몫이고. 내가 전중후 이렇게 현장체험학습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모자랐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어야 한다. 보조인력 관련해서는 학교가
신청하면 잘 교육된 인력을 교육청에서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안전관리
기준이 뭐가 뭔지 좀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아니거든요.

P1 :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그냥 학교가 현장 체험 가니까 도시락 준비하세요 이런 정도의
안내만 있는데 만약에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어요. 지침도 없고 안내도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
는 그냥 좀 주변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준비 단계부터 일이 발생했을 때까지 매뉴얼을 좀 상세하게 학교에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거 역시 그런 부분들이 교사분들이 너무 업무 과중하다고 하면은 지금
그 예산을 통해서 안전관리 요원, 보조 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Y2 :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수련원 입장에서는 수련활동에 대한 교육적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련원이 법적인 제도가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수련활동을 참여하려는 요구가 생기면은 자연적인 경쟁력이 생길 거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인한 경쟁과 학교, 인맥으로 이게
가는 학교가 있고 안 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그러니까
수련활동을 학생들이 교육과정 안에 그게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게
1번으로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1년에 36시간 이상은 학교 밖 야외 수련활동에
참여한다 뭐 이런 것들을 법제화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주제 4] 행정 절차의 일원화 및 간소화 요구

교육청·교원·수련시설은 모두 현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교원은 특히 계약, 보험, 정산을 학교가 주도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교사의 부담과 책임이 줄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은 복잡한 행정 절차가 프로그램 운영과 협력의 장애물이라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법률 차원의 표준 계약서, 단일 전산 시스템, 전담 행정센터 설립은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수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자 :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사 개인, 학교, 학생·학부모 각각의 입장에서 달리 요구되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E10 : 학교운영자는 예산·인력 지원과 사고 시 책임 분산을 원함. 교원은 행정·안전 부담 완화와 안전 전문 인력 지원을 요구함. 학생은 안전한 이동·활동 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필요. 학부모는 경비 부담 완화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원함.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지원 기준이 필요함

E14 : 절차 간소화·행정교육·예산/인력, 교사는 교육 기획에 집중

E20 : 안전요원 배치 시스템 개선·행정 간소화. 일정 계획, 장소 섭외, 참여자 관리 등 체험학습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자 : 만약 ‘(가칭)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T1 : 두 번째 이제 행정 처리 간소화 관련해서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서 작성, 보험 가입, 버스 계약, 보고서 제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분산되어 있고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처리 능력자, 얼마나 능력 있는 선생님 그 부분을 보는 부분이에요. 현장체험학습은 그래서 교육청 단위나 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위험도별 관리 매뉴얼 등이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게 있어서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서 거기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 보고 같은 경우도 좀 간소화 됐으면 좋겠다. 생략 가능한 부분은 최소화되고 핵심 결과 위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뉴얼에서도 보편은 블록이 엄청 나요. 서류 블록 자체가 엄청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합 서식으로 단순화되고 교육장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돼서 했으면 좋겠고 행정실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처리 가능한 부분은 교사가 안 하고 행정 지원해 주는 원래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실에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P1 : 예산 확보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관리 요원, 보조인력 다 투입하면은 투입해서 선생님들이 독박으로 책임지는 지금 구조를 좀 개선해서... 책임지는 거를 좀 분산하면은 이렇게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관리 요원, 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알아서 인력풀을 마련해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일 것 같아서요.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 풀을 마련해 놓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Y2 :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의무 과정이 되는 형태가 필요한... 그냥 단순하게 놓고 아이들에게 그냥 놓고 즐기는 것들이 아니라 교육의 의미로 두는데... 수련원에 그냥 위탁 계약서를 써서 수련원에서 발생하는 이 교육에 대해서 학교는 전혀 책임이 없고 모든 사고는 수련 시설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교사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걸 수련원이 다 떠안을 수도 없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게 여기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좀 이 부분들이 잘 담겨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도 학교 교사들이 너무 행정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련원에서는 수련시설 평가도 받고... 그 다음에 어찌 되었든 수련시설 평가는 정책연구원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인증제도들이 있어서 그건 진흥원에서 인증제도를 받는데... 행정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체험학습 법률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 교원, 학부모,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1. 현장체험학습 법률에 대한 집단별 의견

| 구분 | 교육청 | 교원 |
|---------------|---|---|
| 법률 제정의 핵심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보호 안전관리 기준 국가 표준화 행정·인력·예산 체계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면책 법제화 행정 일원화 실무 부담 제거 |
| 가장 시급한 법제화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면책 조항 명문화 안전관리 기준 세분화 전국 단일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면책 조항 명문화 교육지원청 인력풀 법제화 |
| 안전관리 관련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정의·절차·요원 기준의 법정화 지역 간 해석 차이 제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요원·행정보조 인력풀 운영의 법제화 |
| 인력 지원 및 운영 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안전요원 인력풀의 국가 기준화 전담 부서 법적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요원·행정보조 인력풀 국가 단일 기준 제시 |
| 행정 지원·절차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보고·정산 절차 간소화 법적 근거 교육감 재량 축소·국가 기준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보험·정산 지원 체계 일원화 (교육지원청 중심) |
| 재정 지원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부담 없는 행정·안전 지원 구조 |
| 책임·면책 관련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의무 이행 시 교원 면책 보장 고의·중과실만 제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의무 기준 명확화·면책 법제화 |
| 제도 인프라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단일 기준·표준 법령 명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스톱 법률·심리 지원센터 법제화 |
| 구분 | 학부모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
| 법률 제정의 핵심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학습권·안전권 보장 무상화·형평성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활동의 법적 지위 명확화 학교·시설 협력체계 제도화 |
| 가장 시급한 법제화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학습의 국가 법적 정의 확립 단계적 무상화 로드맵 법제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활동의 교육과정 내 법적 포함 공동책임 체계 명문화 |
| 안전관리 관련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대 안전요원 비율 자격·배치 기준 의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시설 안전의 시설 책임 명문화 안전인증 기준 강화 |
| 인력 지원 및 운영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안전·행정 인력 제도화 및 학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지도사·운영인력 자격 기준 법제화 지역 지원센터 설치 |
| 행정지원·절차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동의 절차 명문화 사고 시 지역 공동대응 체계 법제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입찰 절차 간소화 표준 계약서·전산시스템 도입 |
| 재정 지원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까지 포함한 전면 또는 단계적 무상화 국가·지자체 공동 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운영비·프로그램 개발비 국가·지자체 지원 |
| 책임·면책 관련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면책 명문화 학생·학부모 공동책임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과 학교의 공동책임 분리 명시 |
| 제도 인프라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지자체 공동책임 구조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센터 법적 설치 |

(5)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내용
(교육청 단위의 센터 포함)

분석 결과,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은 개별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복잡해지는 현장체험학습의 행정·안전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전담할 공적 전문기관(지원센터)의 설립을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요구하였다. 교육청, 교원, 학부모,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모두 전문기관이 행정 업무를 대행하고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통합 지원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각 집단은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기능, 설치 위치(교육청/지원청),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 지원 조직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 1] 행정·안전·법률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센터’의 필요성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법률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이 나타난다. 이 센터는 단순한 행정 지원 조직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계약·보험·안전 점검·사고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통합 공공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우선 교육청은 지원센터를 학교 단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를 구조적으로 대행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규정한다. 센터는 계약·보험·정산과 같은 복잡한 행정 업무뿐 아니라, 시설 인증, 안전관리, 사고 대응, 컨설팅까지 포괄하는 전담 기구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학교의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제도적 신뢰성과 절차적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해된다.

교원 역시 지원센터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다. 교사들은 센터가 ‘교사의 행정·법적 부담을 제거하는 실무 중심 기관’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센터 설립의 핵심은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행정·안전 업무의 완전한 분리에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전문기관 설치에 교사의 직무 범위를 교육과 생활지도 중심으로 재정렬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로 인식된다.

학부모는 센터가 단지 명목상의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행정 대행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교육 서비스로 정착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지원센터를 학교-시설-지자체를 연결하는 중간 지원기구로 이해한다. 센터가 공적 인증·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학교와 시설 간의 매칭 및 행정대행을 수행한다면 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는 개별 기관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협력적 운영 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연구자 : 법률 제정 이후, 교육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5 : 인력풀·통합 플랫폼 강화, 교육부-교육청 중복 해소

단기 - 전국 단위 보조인력 인력풀 및 통합 지원 플랫폼 신설 및 기능 강화

중장기 - 교육부와 교육청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보조인력 인력풀 운영 등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면이 있음.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도에서 면책 및 감경 조항 고려 필요

T1 :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잘 제정이 돼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게 물론 이제 교육부나 이 법률 제정의 목적이 또 되겠지만 교사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걸 선택했을 때 교육 과정과 연관돼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어떠한 성장을 이루게 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고민만 하고 교육청은 그 외에 모든 걸 사실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보고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간소화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원하는 걸 적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사실 교육적 성장 가치 부분을 고민하는 거 외에는 교육청이 다 그 센터에서 가져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P3 :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단순히 컨설팅이나 조언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가져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계약이나 안전 점검 같은 걸 교육청 센터에서 도맡아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해 주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센터가 아니라, 학교의 손발이 되어주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1 : 교사 책임 소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 방안을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으니 예를 들면 뭐 그냥 인증제 출원 활동에 참여하면 그거를 뭐 책임 소재를 최소한 완화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행정 간소화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인증 받았으면 뭐 이런이런 거는 최소화한다. 근데 물론 교육청에 따라서는 체험학습 매뉴얼을 보면 인증받은 활동은 현장에 안 가도 된다는 게 있긴 있어요.

[주제 2] 보조·안전요원 인력풀의 국가적 제도화 요구

모든 집단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조·안전요원 인력풀의 국가적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통된 요구가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이는 현장의 가장 긴급한 문제이자 교사의 행정 부담과 학생 안전의 불균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우선 교육청은 인력풀을 국가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보조·안전요원의 자격 기준, 단가, 배치 기준을 국가적으로 통일하고,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인력이 배치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교 단위에서 인력 수급 문제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고 파견하는 형태의 인력풀 운영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교사가 더 이상 채용 문의, 계약, 교육, 배치 조정과 같은 비교육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구로 교사 직무 범위를 교육·생활지도 중심으로 재정렬하려는 실천적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교원들은 인력풀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사의 업무 경감과 법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학부모는 인력풀을 학생의 실질적 안전권 보장 장치로 보았다. 전문 안전요원, 의료(간호) 인력, 행정보조 인력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수준이 보편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학교나 교사의 역량 차이로 인해 학생 안전이 좌우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인력풀을 학교-시설-센터 간 공동 운영 모델로 바라보았다. 즉, 시설 내 전문 인력과 지원센터의 인력풀이 연계되어 운영될 때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이 적절히 투입되고 학교와 시설 모두의 부담이 줄어드는 협력형 인력풀 체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연구자 : 법률 제정 이후, 교육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10 : 교육청의 역할은 지원과 연계 중심으로 설정돼야 함. 인력풀 운영, 예산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은 강화돼야 하고, 학교 개별 계약·행정 부담은 줄여야 함. 역할이 시도별로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 제시가 필요함.

T2 : 안전 요원이나 보조인력 문제는 개별 학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가 신청하면 바로 파견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사람 구하고, 성범죄 조회하고 계약서 쓰는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큰 부담입니다. 교육청이 검증된 인력을 책임지고 보내주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P1 : 지금 불필요한 업무를 걷어내는 게 더 먼저고 너무 행정 업무나 예전부터 관행으로 해왔던 것들을 좀 없애고 이런 새로운 센터를 개설하고... 그리고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인력 충원 하나도 없이 센터 하나 만들어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지원이나 기준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말 지원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면 이 법 정말 이게 그냥 말이 굉장히 다른 걸 수 있는데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 법제화 같은 말일 수 있는데... 현장체험학습이 법제화돼서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선생님들 입장에서 안 간다고 하는데 왜 교육부는 굳이 보내려고 이걸 만드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법률 제정 이후에 교육청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은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가 되고 거기에 인력 지원이 되면은 저희가 지금 말했던 부분은 다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조인력 체험부터 예약하는 부분 그러니까 체험처 부분도 다 교육청에서 완전히 다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만 하고 날짜만 선택하면 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Y3 : 인증제도를 피하면서 편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사고 나서 큰 사고 나고 죽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증 제도가 아니라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우리는 내부적으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했어야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점점 그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접근이 어디까지냐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현장체험학습이 다 들어간다고 한다고 치면은 예산 지원도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쓸 것 같고요. 안전관리 기준도 그렇고 뭐 인력이라든지 이게 그냥 체험학습 갈 때 인력 지원해 줘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제화도 되기 전에 현장체험학습 하지 말자 이렇게 될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인력 맞추는 게 힘들어서

[주제 3] 통합 행정체계와 운영의 표준화 요구

현장체험학습 운영에서 반복되는 행정적 비효율과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통합 행정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산화 수준이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표준화를 실현하려는 구조적 요구로 해석된다.

먼저 교육청은 계획-계약-보험-정산-보고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학교가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험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교육청은 지역 단위의 안전·행정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교원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이해관계자로서 통합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서류 제출과 보고 절차의 획기적 축소, 계약·보험 업무의 자동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매 학기 반복되는 방대한 행정 작업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다고 인식하며 디지털 시스템이 이를 실질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는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 기능으로 정보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안전도, 예산 집행 내역, 보험 보장 범위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부모가 학교와 기관의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체험학습의 질과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고 인식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통합 시스템이 표준 계약서와 인증 절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시설-학교 간 계약 과정은 복잡하고 기준이 제각각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도입되면 표준화된 계약 구조와 일원화된 인증 절차가 정착되어 행정 부담이 줄고 프로그램 품질이 균등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 법률 제정 이후, 교육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8 : 나이스 시스템이나 별도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학교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번 종이 서류를 만들고 보고하는 방식은 구시대적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하고, 시스템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계약이나 보고가 끝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T1 : 그러니까 교사가 좀 안정성을 가지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체험학습 전담 센터를 만들든지 교육청이 주도해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든지... 뭐 또 체험처 같은 경우에 인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교사의 책임 면책 제도가 명확히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P2 : 학부모들이 가장 답답한 게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거기는 안전한지,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학교 가정통신문에만 의존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인증된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Y2 : 그러면서 학생 수련원이나 청소년활동을 하는 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어느 거는 교육청 어느 거는 뭐, 어느 거는 지자체, 어느 거는... 이렇게 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주제 4] 사고 대응을 위한 공적 보호체계의 법제화

모든 집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현장체험학습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교사에게 집중된 책임과 부담을 공적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법제화된 보호체계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즉, 사고 대응 과정은 더 이상 학교나 교사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문제이며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법률·의료·심리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국가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요구가 드러난다.

먼저 교육청은 사고 대응의 핵심 원칙으로 ‘선지원-후정산’ 체계를 제시하였다. 사고 발생 즉시 변호사, 심리상담사, 의료 인력을 배정하여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속도를 확보하고, 비용·정산 문제는 사후 절차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고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으로 이해된다.

교원은 사고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집단으로, 사고 발생 시 언론 대응, 법률 자문, 합의 절차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를 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은 전문기관이 대행해야 하며 교사는 사실 보고와 절차 협조 외에는 법적·행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부모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한 보상 체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공제회 보상과 보험 보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제와 보험’의 이중 보상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해서 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사고 대응 체계가 학교 또는 센터 단독이 아니라 학교-센터-수련시설 간 공동 대응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사고의 원인이 시설, 프로그램 운영, 학교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책임지고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연구자 : 법률 제정 이후, 교육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4 : 전담 지원단 법적 근거 마련.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국가 정책 및 법률에 의해 지역별로 '현장체험학습 전담 지원단'을 필수적으로 만들도록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E19 : 현재 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 업무 경감 지원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보다 확대 강화할 역할은 더 이상 없다고 여겨짐.

-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규칙 정비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 현장체험학습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 학교안전 사고 예방·대응 체계 마련
- 현장체험학습 컨설팅 우수 사례 발굴, 유공자 표창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연수 지원 및 인력자원 운영
- 현장체험학습 공동 사전 답사 및 프로그램 지원
- 현장체험학습 특성화 누리집 운영·관리
-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 개정·보급
-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수학여행 통합계약 지원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및 집행 관련 컨설팅 실시

T3 : 저는 그러니까 이 학교 안전상의 어려움으로 직업을 잃지 않게...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고의 중과실이어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뭔가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법률적인 지원 당연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도록 좀 합의도 지원해 주시고, 어떤 보험적 성격으로 합의금도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법률과 세트로 이렇게 해서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윈스톱 지원센터처럼...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인프라가 있고 내가 정말 고의로 막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로 직을 잃지는 않는... 그리고 혹여나 벌금이 나와도 이걸로 인해서 직을 잃는 건 아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P1 :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총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지금처럼 학교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전공제에서 나오는 거 이상으로 학부모가 요구를 할 때도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면은 교육청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더욱더 안전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강을 할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에요.

P3 :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명목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제 자리를 잡는 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 조금 짜내서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일 거잖아요. 실제로는 센터라는 이름이 붙더라도 교육청 안에 뭐 별도의 건물이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육청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근데 일단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마음의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아요.

Y2 : 휴게실에서 아이들 풀어놓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여기에 또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날 지 모르고... 이런 교사들은 어려움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 진행을 하잖아요. 저희 지도자들이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련원 내에 시설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수련원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프로그램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데... 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 보면 교사들이 수련활동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나오고 프로그램을 같이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생활지도도... (중략) 혹시 아픈 아이가 없는지 자기 반 아이들은 그다음에 수련활동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서 선생님들이 그 체크리스트에...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저랑 이렇게 같은 방을 썼는데 나는 애랑 같이 있기 싫어요 하고 방을 바꿔버리면 우리는 이름표가 적혀 있기는 하더라도 이름이랑 얼굴이랑 매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해서 생활지도는 좀 교사들에게 넘기는 편이에요. 학생 수련원은 생활지도를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주제 5] 지역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요구

모든 집단은 전문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단순한 행정 조직 신설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즉, 현장체험 학습은 학교만의 책임이나 시설만의 역할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교육청·지자체·수련시설·지역 안전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상시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드러났다.

우선 전문기관은 학교-교육청-지자체-수련시설을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로

위치해야 한다. 이는 사고 대응, 안전 인증,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집행 등 다양한 기능이 단일 기관에 집중되기보다 지역 내 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지원청 단위의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제시되었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학교와의 거리감을 줄이고, 지자체 및 지역 청소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시설 측 모두 지역 차원의 세밀한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운영 구조에서는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복되었다. 학부모·교원·청소년 전문가·지자체 관계자·시설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특정 기관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교육 중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제시되었다. 또한 기존 청소년 관련 기관(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과의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중복 행정을 줄이고 기존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이미 현장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삼아, 교육청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연구자 : 현재 운영 중인 조례·매뉴얼·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부분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1 :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은 최근에 조례를 시도 교육청별로 정하도록 했죠. 그리고 나서 안전 요원이 점차 투입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안전요원, 보조인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보조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외에 또 보조인력이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관리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 시도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그런 보조인력에 대한 거를 명문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아예 채용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명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시도 같은 경우는 뭐 학생 몇 명당 보조 인력 한 명 이런 식으로 한 구체적으로 한 시도도 있어요.

연구자 : 법률 제정 이후, 교육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17 : 의무화·강제 확대 반대,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축을 통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범위와 내용에 대한 공통 지침(안)을 마련 필요

P1 : 저는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청이든 지원청이든 지역별로 센터가 마련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상황에 맞게 어쨌든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거기 운영위원들도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법률로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나 교육 전문가나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운영위를 꾸려가지고 지역 상황에 맞게 굵직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P2 :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지원청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혹은 뭐 거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더 도와줄 부분들이나 이런 걸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딱 하면은 뭔가 좀 더 든든한 면은 있겠지만은 세세하게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이 이렇게 걱정이 되는... 예를 들면 구와 구청과 지원청... 그러니까 구에서 요즘에는 농촌이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MOU를 많이 맺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원청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 인력을 더 만들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육청이며 아주 그냥 여기 아주 속대발 될 것 같은데 교육청으로 가져가 버리면 왜냐하면 교육청은... 만약에 서울이라면 서울의 모든 학교 초중고 하다못해 유치원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아무튼 관리 감독하고 안전 책임지는 지원기관이면 명시를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은 그와 같이 연장...

Y3 : 이제 만약에 그냥 제3자 눈에서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교육청이니까 아마 지역 교육청 센터로 생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진흥원 같은 역할을 해줘 가지고 이게 인증 그러니까 시설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걸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걸 생각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은 진흥원에서는 업무 전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육청에서 이걸 만들게 되면 0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흥원도 각 지방 이제 진흥원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두 개를 섞는 거죠. 교육청의 역할과 재단의 역할이 믹스가 되게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진흥원은 진흥원의 역할을 하고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업무 효과에서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진흥원 입장이 아니라서 그건 더 얘기하기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지원·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 교원, 학부모,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2.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지원·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집단별 의견

| 구분 | 교육청 | 교원 |
|---------------|---|--|
| 전문기관(센터)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적 법정 설치 필요 • 행정·법률·예산·안전의 통합 지원 허브로 기능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인정하나 '의무화·책무 증가'되지 않도록 지원 목적이 명확해야 함 |
| 설치 수준·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전담센터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산하 전담센터가 가장 현실적 • 독립 재단(공제회형)도 병행 검토 |
| 핵심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보험·정산·안전관리·시설 인종·보조인력 배치·컨설팅·디지털 플랫폼·사고 대응 원스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운영·사후 3단계 실무 대행 (계약·보험·버스·인력풀·위험도 평가·법률 지원·언론 대응 등) |
| 인력풀 (보조·안전요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기준으로 자격·단가 통일 • 자동 배치 시스템 구축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배정하는 인력풀 필수 |
| 디지털·행정 지원 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계약·보험·정산·보고 절차의 디지털 일원화 플랫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와 보고 최소화 계약과 보험 자동화 시스템 요구 |
| 우려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편차 최소화 국가 표준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의무화로 교사에게 업무와 책무 증가 우려 • 지원 목적 명확화 필요 |
| 구분 | 학부모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
| 전문기관(센터)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높음 • 형식적 조직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공공 지원 기관을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높음 • 학교·시설·지자체를 잇는 협력형 중간 지원기구로 인식 |
| 설치 수준·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별 센터 선호 (지역 특성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청소년기관이 연계된 공동 운영 모델 선호 • 기존 인프라(진흥원 등) 통합 활용 제안 |
| 핵심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품질·비용의 투명 관리 • 예산 사용 공개 취약계층 우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평가 통합 • 행정 절차 대행 시설·학교 매칭 • 지역 안전 네트워크 구축 |
| 인력풀 (보조·안전요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안전요원·의료·행정보조 인력 제도화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전문 인력과 연계한 공동 인력풀 운영 필요 |
| 디지털·행정 지원 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개(안전도·예산·보험 등) 의무화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계약서와 통합 시스템 통한 행정 간소화 강조 |
| 우려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가 '이름만 존재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 우려 • 인력·예산 확보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조직 신설보다 기존 기관(진흥원 등) 통합이 효율적 |

3) 요약 및 소결

본 연구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정책적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교육청 담당자(전문가 서면조사), 교원, 학부모,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❶ 현장체험학습의 정의, ❷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의 직무 범위, ❸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과 면책 구조, ❹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 ❺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등 총 다섯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구체적 분석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의 정의에 대해 모든 집단은 공통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연계된 학습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과체험, 자유학기 활동, 진로·봉사활동 등은 교육 목표와 학습 효과가 분명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포함되며, 수학여행·수련활동·1일형 체험활동은 그 대표적 유형으로 인식된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은 고도의 안전·책임 체계를 요구하는 공공적 교육활동으로서, 학교의 공식적 주관 여부(편성, 승인, 책임)가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기관 주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교가 공식 승인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갖출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포함 가능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다만 집단별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어, 교육청은 행정적 관리가 용이한 협의의 개념을, 교원은 교육과정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학부모는 안전이 담보된 공교육 서비스를,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학교 밖 경험 전반을 중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법률상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교가 공식적으로 승인·운영하며, 높은 수준의 안전·책임·관리가 수반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정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네 집단 모두 교사의 본질적 역할은 ‘교육 및 생활지도’에 집중되어야 하며, 행정·계약·안전 등 비교육적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지원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교사에게 부여되는 적절한 역할은 교육 목표 설정, 프로그램 설계, 학생 사전교육, 현장 생활지도 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시설 점검, 차량 임차, 계약·정산, 보험 가입 등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다층적 역할 분담 구조’를 법제화하여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인되었다.

셋째, 안전사고 책임과 면책 구조에 대해서는 ‘결과 책임’이 아닌 ‘과정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높은 합의가 도출되었다. 현장체험학습은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이므로, 교사가 사전-운영-사후 단계에서 합리적인 주의의무(위험도 평가, 안전교육, 매뉴얼 준수 등)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사전 단계의 위험도 평가 및 시설 인증, 운영 단계의 보조인력 배치, 사후 단계의 법률·심리 지원 등 각 단계별로 교육청, 학교, 체험처, 전문기관이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면책 요건과 책임의 경계를 법률과 표준 계약서에 명문화할 것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넷째, 법률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책임 소재 명료화, 안전관리 기준 표준화, 인력 제도화,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교사의 주의의무 이행 시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조항’의 명시적 법제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또한 사고 정의, 위험도 평가 기준, 안전요원 배치 비율 등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보조·안전요원 인력풀의 국가 및 시·도 단위 통합 관리와 이에 따른 예산 보장,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기반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요구는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실질적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모든 집단은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계획부터 사고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통합 지원할 전문기관 설립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지원센터는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행정 대행, 전문적 위험도 평가, 시설 안전 인증, 인력풀(안전요원 등) 운영, 사고 시 법률·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행정·안전 지원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체험처 정보, 위험도 등급, 인증 현황, 보험·공제 가입 정보 등을 망라하는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전문기관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법적 제도화를 위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3.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법적 제도화를 위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구분 | 주요 결과 | 시사점 |
|----------|---|---|
| 정의 및 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학습은 단순 행사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연계된 공식적 교육활동’이라는 점에 네 개 집단(교육청, 교원, 학부모, 수련시설)이 모두 동의함 학교가 주관하고 승인하는 ‘공적 책임’이 담보될 때만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 현장체험학습의 정의를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화 필요 민간 위탁 활동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승인 및 관리 체계 내에 포섭하여 제도적 보호 범위 설정 |
| 교사의 직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핵심 역할은 교육 목표 설정, 사전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적 활동’에 국한되어야 함 시설 안전 점검, 계약·정산, 보험 가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안전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직무 범위를 ‘교육 및 생활지도’로 한정하고, 비교육적 행정·안전 업무를 외부 전문가거나 행정 전문 인력에게 이관하는 ‘다층적 역할 분담 구조’의 법적 근거 마련 |
| 책임 및 면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발생 시 ‘결과 책임’이 아닌, 사전-운영-사후 단계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과정 책임’ 원칙에 합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매뉴얼을 준수한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이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구체적 면책 조항’의 법률 명문화 ‘중대 과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장치(소송 지원 등) 마련 |
| 법률적 기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기준(배치 비율, 사고 정의 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불안정성 확인 보조인력·안전요원의 자격 및 처우,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호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기준, 인력 배치 기준, 사고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법령(가칭 현장체험학습 지원법) 제정 보조인력 인력풀(Pool) 구축 및 예산 지원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의무 조항 신설 |
| 지원 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단위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안전 업무를 전담할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요구 정보 플랫폼 운영, 안전 인증, 사고 대응 등을 통합 지원할 전문기구의 필요성 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교육지원청 단위의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 근거 마련 행정·안전·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

○———— 제5장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방안

- 1.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 2.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3. 법률의 안정적 시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 4. 중장기 로드맵 및 기대효과

5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방안*

앞선 제2장과 제3장의 논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책임 소재와 지원 체계의 부재로 인해 교육적 가치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4장의 문헌 분석과 서면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는 개별 교사의 노력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책무성 강화와 전문적 지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장의 요구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 법률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한 거버넌스, 안전 기술, 인프라 등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원의 '무한 책임'을 국가와 시스템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생태계를 복원하는 제도적 청사진이 될 것이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1) 비전 및 목표

본 연구는 '학생의 안전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현장체험학습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는 '개인 책임 중심의 관행적 운영'에서 '국가 및 시스템 책임 중심의 공적 운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는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 업무와 과도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 이 장은 권오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추진 방향

앞선 전문가 조사와 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법적 안정성 확보(Legal Stability): 사고 발생 시 교원 개인에게 집중되는 민·형사상 책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주의의무를 이행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근거를 법제화하여 교원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한다.

둘째, 지원 체계의 전문화(Specialized Support): 학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계약·안전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할 지원 조직(센터)과 전문 인력을 제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셋째, 안전관리의 과학화(Scientific Safety): 경험과 육안에 의존한 관행적 안전관리에 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와 인증제를 도입하여 예방 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3) 추진 전략 및 과제 구성

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 추진 체계는 다음의 [그림 V-1]과 같다.



과제
2

지원 거버넌스 구축

2-1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센터 설립

2-2

 지자체·학교·체험처 협력망 구축

2-3

과제
3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3-1

 보조인력(안전요원) 인력풀 배치

3-2

 체험 시설 안전 인증제 의무화

3-3

과제
4

사후 안전망 내실화

4-1

 공제 책임 보험/공제 고도화

4-2

 법률·심리·행정 원스톱 지원

4-3

그림 V-1.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도

2.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본 절에서는 앞서 제2장부터 제4장에 걸쳐 수행한 문헌 고찰, 운영 실태 분석, 그리고 이해관계자 심층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가칭)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안한다.

본 법률 제정(안)은 연구자의 이론적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법규범적 정합성과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성안(成案)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우선, 국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국내 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을 토대로 법안의 기본 골격을 설계하였다. 이후 도출된 초안에 대하여 교육법 학자 및 법률 전문가 그룹과 수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조문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 등 정책 실무자와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적용성을 보완하였으며, 사범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자문단의 검토를 통해 예비 교원의 관점까지 반영함으로써, 법안의 현장 적합성과 미래 지향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이러한 다층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확정된 본 법률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 책무 강화, 전문적 지원 시스템(센터 및 인력)의 구축, 합리적 면책 기준의 제도화**를 핵심 입법 취지로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률안 전문(全文)과 주요 조항별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

(가칭)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1일형 체험활동과 같은 체험·견학·탐방·실습 등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인솔교원”이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원을 말한다.
3.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 이동 지원, 응급대응 등을 위해 인솔교원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4. “체험처”란 학생에게 체험·견학·탐방·실습 등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는 기관·단체·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자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안전 점검, 인솔교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체험처의 장은 안전한 시설과 적정 인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학생·학부모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안전수칙 준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및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정책의 기본방향
 2.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현장체험학습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및 관리·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년도 실적
 2.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3.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4.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교원·학부모 만족도, 관련 사고 현황, 지원체계의 효과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체험처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체험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체험학습 관련 컨설팅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작성 지원
 2. 보조인력풀 구축·관리 및 인솔교원, 보조인력에 관한 교육·연수 운영
 3. 사전답사 지원, 안전점검 자문
 4.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③ 지원센터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조인력 배치)

- 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에 있어 인솔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안전관리 및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교육·연수)

- ① 교육감은 인솔교원, 보조인력,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학생 보호, 위기 대응 등에 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학교에 배포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 교직원(인솔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시행 등 운영 전반에 있어 제1조에 따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민사상·형사상 면책)

- ① 학교의 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관련 법령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준수한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책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준수 여부
 2. 학생의 연령, 발달단계 및 활동 특성을 고려한 적정 인솔교원 및 보조인력 배치 여부
 3. 학생이 학교의 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으로부터 사전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돌발적·예측 곤란한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교육감의 지원)

-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 및 교직원·보조인력과 학생·보호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감의 의견 제출)

-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소속 학교의 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을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입법 취지

(1) 정의 및 국가 책무의 명확화(법안 제1조~제6조)

가. 제안 취지

제4장 이해관계자 심층조사 분석 결과, 교육청, 교원, 학부모,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로 대표되는 조사 참여자 전원은 현장체험학습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식적 필수 교육활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제3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예산 지원이 불규칙하고 안전 책임이 학교로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에 법안 제2조는 현장체험학습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안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특히 제3조 제4항은 이해관계자 심층조사 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시설 안전은 시설 주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체험처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나. 입법 효과

첫째, 현장체험학습이 명실상부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존하던 기존의 불안정한 재정 구조를 탈피하고 안정적인 공적 예산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를 학교뿐만 아니라 체험처로 명확히 분산시킴으로써, 시설 미비나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책임이 부당하게 교원에게 전가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체험처 스스로 안전 투자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2)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전문화(법안 제7조~제9조)

가. 제안 취지

제3장 운영 현황 분석 및 제4장 이해관계자 심층조사 분석 결과, 교사들은 복잡한 계약 절차, 차량 안전 점검, 사전답사 등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한 피로감과 교육활동 침해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또한 제2장의 국외 사례 분석에서 영국의 EVC(교육방문 코디네이터)나 일본의 전담 지원 조직과 같은 체계적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법안 제7조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행정 업무를 이관하고, 법안 제8조는 서면 및 심층면접 분석에서 학부모와 교원 모두가 강력히 요구한 ‘보조인력(안전요원)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나. 입법 효과

첫째, 지원센터가 계약, 정산, 컨설팅 등 행정 및 실무 업무를 전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총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기획과 학생 관리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법적 자격을 갖춘 보조인력의 배치는 ‘이동 및 생활 안전(보조인력)’과 ‘교육 및 생활지도(교사)’의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중 안전망 구축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학생 관리를 실현하여, 안전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합리적 면책 및 교원 보호(법안 제10조~제13조)

가. 제안 취지

제4장의 판례 분석과 문헌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춘천지법 판결 등 최근 사법부는 교사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묻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제4장 이해관계자 심층조사 분석에서도 교원들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면책’을 법제화의 1순위로 요구하였다. 이에 본 법률안은 결과 책임을 지양하고 ‘과정 중심 책임’(법안 제11조) 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제4장 전문가 조사에서 제안된 “교육청이 교사의 법적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면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법안 제13조)을 명시하였다.

나. 입법 효과

첫째, 명확한 면책 기준의 법제화는 교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할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교육감의 의견 제출권과 법률 지원 제도는 개별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 상황에서 교육청이 ‘제도적 방패’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교원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소송 남발을 억제하며, 궁극적으로는 위축되었던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3. 법률의 안정적 시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본 절에서는 앞서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선언적 규범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게 뿌리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법률의 제정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본 정책 제언은 이를 구동시킬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법률의 주요 내용을 ① 인프라 및 예방 시스템 구축(시스템 차원)과 ② 인적 지원 및 보호체계 강화(현장 지원 차원)의 2대 핵심 영역으로 유형화하고, 각 영역별로 2개씩 총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1) 영역별 주요 정책 과제 개요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2대 핵심 영역과 4대 추진 과제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V-1. 영역별 주요 정책 과제 개요

| 핵심영역 | 추진과제 | 주요 내용 | 관련 법조항 |
|----------------------------------|--|--|------------|
| I. 안전관리 인프라 및 예방 시스템 구축 | 1.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기관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단위 전담 지원조직(센터) 구축 및 행정업무 일원화 • 민간 체험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 및 질 관리 체계 가동 | 제7조 |
| | 2. 체험 시설, 프로그램 인증 및 위험도 평가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체험처 대상 '교육안전 인증제' 시행 및 정보망 구축 • 활동 단계별 정량적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의무화 | 제3조 제6조 |
| II.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교원 보호 | 3. 안전 보조인력 양성 및 배치 예산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 자격 표준화 및 인력풀 확충 | 제8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개편 | 제9조 |
| | 4. 교원 보호 공제 제도 개편 및 법률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공제 급여 확대 및 민간 보험 연계 모델 구축 | 제11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소송비용 선지원 제도화 | 제12조 |

2) 과제별 상세 추진 방안

[과제 1]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기관 육성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관련 기획부터 정산까지 도맡는 현행 구조는 현장체험학습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 업무를 전담할 지원 조직의 구성과 검증된 민간 전문기관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V-2.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기관 육성 방안

| 핵심 과제 | I. 안전관리 인프라 및 예방 시스템 구축 | | | | | | | | |
|--|--|--|------------------------------------|--------|--|---|--|---|---|
| 추진 과제 | 1.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기관 육성 | | | | | | | | |
| 제안 배경 및 근거 (연구결과) | 1) (행정 자원의 전문화 필요) 교사가 기획, 계약, 차량 점검, 정산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는 교육적 본질을 훼손함. 이를 전담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수적임 2) (민간 시장의 질 관리 부재) 학교 단위에서는 우수한 민간 위탁 업체를 검증할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하여, 업체의 영세성 및 안전 불감증 문제를 통제하기 어려움 | | | | | | | | |
| 추진 방향 | • 시·도교육청 직속 ‘광역단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정 프로세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전문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체험 시장의 안전성과 교육적 질을 견인함 | | | | | | | | |
| 추진 내용 | 1) ‘현장체험학습 원스톱 지원센터’ 기능 고도화 - (행정 대행) 전세버스 임차 및 대규모 숙박 시설 통합 입찰(공동구매), 표준 계약서 법률 검토, 사후 정산 업무 일괄 지원 - (코디네이팅) 학교급별·교과별 교육과정 연계 맞춤형 코스 설계 지원 및 사전답사 대행(현장 영상 및 안전 점검 리포트 제공) 2) ‘현장체험학습 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 시스템 도입 - (등록 기준)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배상책임보험 가입액,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하여 ‘교육청 등록 전문기관’ 자격 부여 - (모니터링) 등록 기관에 대해 2년 주기로 재심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평가 및 안전사고 이력 조회 시스템을 통해 부실 업체 삼진아웃(Three-strike out)제 적용 | | | | | | | | |
| 추진 로드맵 | <table border="1"> <tr> <th>2026년</th> <th>2027년</th> <th>2028년</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 표준 운영 조례안 마련 및 3개 시·도 시범 운영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 등록 평가 지표 개발 및 권역별 우수 기관 인력풀 구축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17개 시·도 지원센터 설치 완료 및 K-에듀파인(K-Edufine) 시스템 연동 </td> </tr> </table> | 2026년 | 2027년 | 202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 표준 운영 조례안 마련 및 3개 시·도 시범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 등록 평가 지표 개발 및 권역별 우수 기관 인력풀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17개 시·도 지원센터 설치 완료 및 K-에듀파인(K-Edufine) 시스템 연동 | →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 표준 운영 조례안 마련 및 3개 시·도 시범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 등록 평가 지표 개발 및 권역별 우수 기관 인력풀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17개 시·도 지원센터 설치 완료 및 K-에듀파인(K-Edufine) 시스템 연동 | | | | | | | |
| 부처별 업무 | <table border="1"> <tr> <th>교육부</th> <td>전문기관 관리 기준 수립 및 센터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td> </tr> <tr> <th>시·도교육청</th> <td>지원센터 조직 신설(장학관급 센터장) 및 전담 행정 인력 배치</td> </tr> </table> | 교육부 | 전문기관 관리 기준 수립 및 센터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 시·도교육청 | 지원센터 조직 신설(장학관급 센터장) 및 전담 행정 인력 배치 | | | | |
| 교육부 | 전문기관 관리 기준 수립 및 센터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 | | | | | | | |
| 시·도교육청 | 지원센터 조직 신설(장학관급 센터장) 및 전담 행정 인력 배치 | | | | | | | | |
|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약 50% 이상)을 통한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검증된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안전성 및 교육적 효과 동반 상승 | | | | | | | | |

[과제 2] 체험 시설, 프로그램 인증 및 위험도 평가 도입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험에 의존한 관리가 아닌,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예방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시설 인증제와 위험도 평가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V-3. 체험 시설·프로그램 인증 및 위험도 평가 도입 방안

| 핵심 과제 | 1. 안전관리 인프라 및 예방 시스템 구축 | | |
|-----------------------|---|---|--|
| 추진 과제 | 2. 체험 시설, 프로그램 인증 및 위험도 평가 도입 | | |
| 제안 배경 및 근거 (연구 결과) | 1) (안전 책임의 시각지대) 청소년수련시설 외에 펜션, 소규모 체험처 등은 안전 점검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인솔 교사에게 전가됨 2) (예측 시스템 부재) 활동 장소 및 이동 경로의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없이 관행적으로 답사와 계획 수립이 이루어짐 | | |
| 추진 방향 | • 체험처에 대한 국가 수준의 '교육안전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설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활동 단계별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 | | |
| 추진 내용 | 1) 현장체험학습 시설·프로그램 인증제 및 통합 정보망 구축 - (대상 확대) 기존 청소년수련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숙박·식당·체험시설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안전 인증 마크' 부여 - (통합 앱 개발) 교육부-행정안전부-소방청 데이터(건축물 안전등급, 위생점검, 화재점검)를 연동한 '안전 인증 지도(Map)' 앱 보급 2)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표준 모델 개발 및 적용 - (평가 도구) 활동 유형(해양, 산악, 도심 등)과 이동 수단별 잠재 위험 요소를 수치화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 (절차 의무화) 계획 수립 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등급이 '높음'일 경우 관리자(교장) 승인 강화 및 보조인력 추가 배치 의무화 | | |
| 추진 로드맵 | 2026년 • 시설 유형별 안전인증 기준 개발 및 위험도 평가지표 연구 | → | 2027년 • 체험처 통합 안전정보 시스템(DB) 구축 및 인증제 시범 적용 |
| | | → | 2028년 • 모든 학교의 현장체험 학습 계획 수립 시 위험도 평가 결과 첨부 법제화 |
| 부처별 업무 | 교육부 위험도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인증제 운영 규정 마련 행정안전부 범부처 합동 시설 안전 점검단 구성 및 인증제 운영 규정 마련 | | |
| 기대효과 | • 시설 안전에 대한 학교장의 확인 부담 해소 및 체험처의 자발적 안전 시설 투자 유도 • 잠재적 위험 요인의 사전 식별 및 제거(Risk Management)를 통한 실질적 사고 감소 | | |

[과제 3] 안전 보조인력 양성 및 배치 예산 확보

가장 시급한 현장의 요구인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와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V-4. 안전 보조인력 양성 및 배치 예산 확보 방안

| 핵심 과제 | II.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교원 보호 | | |
|-----------------------|---|---|--|
| 추진 과제 | 3. 안전 보조인력 양성 및 배치 예산 확보 | | |
| 제한 배경 및 근거 (연구 결과) | 1) (물리적 한계) 교사 1인이 20~30명의 학생을 인솔하며 생활지도, 안전관리, 야간 지도, 응급 대처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2) (예산 불안정)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 수나 가정 형편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 여부가 달라지는 교육 격차 발생 | | |
| 추진 방향 | • 법적 지위를 갖춘 '교육 안전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표준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이 아닌 공적 예산(지방교육재정)으로 인건비를 지원함 | | |
| 추진 내용 | 1) 보조인력 자격 기준 표준화 및 전문 양성 과정 운영 - (자격 요건) 퇴직 교원, 퇴직 경찰·소방관,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면허 소지자 등으로 제한하여 전문성 담보 - (필수 연수) 학생 인권, 성인지 감수성, 아동학대 예방, 심폐소생술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 직무 연수(30시간)' 이수 후 등록 2) 배치 기준 수립 및 안정적 예산 확보 - (배치 기준) 학생 50명당 1인 배치를 권장하되, 초등 저학년 및 특수학급 참여 시 학급당 1인 배치 의무화 - (재원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수요에 '안전 활동 지원비' 항목 신설 | | |
| 추진 로드맵 | 2026년 • 보조인력 양성 표준 교육과정(Curriculum) 개발 및 연수 기관 지정 | 2027년 • 시·도교육청별 인력풀(Pool)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매칭 시스템 가동 | 2028년 • 전체 학교 대상 보조인력 배치 예산 의무 편성 및 전면 시행 |
| 부처별 업무 |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 안전 인력 지원을 위한 교부금 기준 변경 협의 인력풀 관리, 범죄경력 조회 일괄 처리, 인건비 예산 편성 | |
| 기대효과 | • 촘촘한 다중 감시 체계(교사-보조인력) 구축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신중년(퇴직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 모델 구축 | | |

[과제 4] 교원 보호 공제 제도 개편 및 법률 지원 강화

사고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하는 최종 안전망으로서, 공적 보상 시스템과 법률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V-5. 교원 보호 공제 제도 개편 및 법률 지원 강화 방안

| 핵심 과제 | II.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교원 보호 | | |
|--------------------|---|--|---|
| 추진 과제 | 4. 교원 보호 공제 제도 개편 및 법률 지원 강화 | | |
| 제안 배경 및 근거 (연구 결과) | 1) (소송 불인) 고의·중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으로 교육활동 위축 심화 2) (보상 한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 시 교원 개인이 배상해야 하는 위험(재정적 파산) 존재 | | |
| 추진 방향 | •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 보증을 연계(Mix)하여 보상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개입하여 변호사를 지원하는 '선제적 법률 방어 시스템' 구축 | | |
| 추진 내용 | 1) 학교안전공제 및 민간 보험 연계 모델 구축 - (1단계: 공적 보상) 치료비, 요양급여 등 기초적인 손해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신속 지급(지급 절차 간소화) - (2단계: 민간 연계) 공제회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고액의 배상금, 위자료, 화해·조정 비용은 교육청이 단체 가입한 '민간 배상책임보험'으로 전액 커버 2) '교원 안심 동행' 법률 지원 서비스 전면 확대 - (형사 방어권) 기존의 민사 배상 위주에서 탈피, '업무상 과실 치상' 등 형사 피소 시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선지원 - (심리·행정 지원)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비 지원 및 휴직 보장 등 신분 보호 조치 강화 | | |
| 추진 로드맵 | 2026년 • 「학교안전법」, 「학교안전법 시행령」 및 공제회 지급 기준 개정 | 2027년 • 표준화된 '현장체험 학습 교원 안심 보험 상품 개발 및 17개 시도 일괄 가입 | 2028년 • 교육청 내 '교원 법률 지원 전담팀(변호사 상주) 설치 및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실시 |
| 부처별 업무 |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규정 정비 및 민간 보험사와의 상품 개발 협약 법무부 : 교원 대상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절차(법안 제13조) 매뉴얼화 | | |
| 기대효과 | • 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민원 및 갈등 최소화 • 교원이 사법적 위험 공포에서 벗어나 교육적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 완성 | | |

4. 중장기 로드맵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법률 제정안과 정책 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법률 제정 시점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적·사회적 기대효과를 전망하고자 한다.

1) 중장기 추진 로드맵

현장체험학습의 정상화와 안전 시스템의 안착을 위한 로드맵은 '기반 조성(1단계)', '확산 및 정착(2단계)', '고도화 및 선진화(3단계)'의 단계적 전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1단계(2026~2027, 기반 조성기)는 법적·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시기이다.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도 조례 정비를 완료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3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표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체험처 인증 기준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이어지는 2단계(2028~2029, 확산 및 정착기)는 전국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인적·물적 안전망을 완성하는 시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행정 지원을 전면화하고, '교육안전 보조인력' 인력풀(Pool) 구축 및 예산 편성을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체험처 통합 안전 정보망(App)과 전문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여 안전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2030년 이후, 고도화기)는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와 성숙한 체험 문화를 정착시키는 시기이다. 축적된 사고 데이터와 위험도 평가 DB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 시행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현장체험학습이 지속 가능한 교육활동으로 자리 잡도록 고도화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V-6.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중장기 로드맵

| 단계 | 시기 | 핵심 목표 | 주요 추진 내용 |
|-------------------|----------------|---|--|
| 1단계 (기반 조성기) | 2026~ 2027년 | 법적 기반 확립 및 지원 모델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법」 제정 및 시·도 조례 정비 • (조직) 3개 시·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시범 운영 • (인프라) 보조인력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체험처 인증 기준 마련 |
| 2단계 (확산 및 정착기) | 2028~ 2029년 | 전국적 지원 체계 가동 및 인적·물적 안전망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지원센터 설치 완료 및 전면 가동 • (인력) ‘교육안전 보조인력’ 인력풀(Pool) 구축 및 학교 배치 예산 편성 • (시스템) 체험처 통합 안전 정보망(App) 오픈 및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
| 3단계 (고도화기) | 2030년 이후 |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및 교육적 가치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화) 축적된 사고 데이터 및 위험도 평가 DB를 활용한 AI 예방 시스템 구축 • (문화) ‘안전 인증’ 중심의 체험학습 문화 정착 및 민간 시장의 질적 상향 평준화 • (평가) 법률 시행 성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영역 확장 |

2)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법률안과 정책 과제가 실현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교육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정상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법적 보호 장치와 행정 지원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교원은 그동안 겪어왔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원이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간 위축되거나 취소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의 책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개인 책임’에서 ‘국가 및 시스템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법률안은 개별 교사의 현신에 의존해 온 기존의 전근대적 운영 방식을 타파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원센터를 통한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 보조인력 배치의 사고 발생

시 개인을 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이 위험을 사전에 방어하고 예방하는 선진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안전관리를 ‘위험도 평가’와 ‘인증제’ 기반의 과학적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아가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보험·공제 제도의 연계는 사고 발생 후 반복되던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여, 학교 안전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정은, 송다영(2024).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9, 81-114.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2024). **2024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경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2025).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경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 경기도교육청(2023.6.).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업무매뉴얼**. 경기: 경기도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2019). **2019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김대현, 이상수, 홍창남, 황순영, 이유나, 김혜나(2013). 교사의 업무 부담을 둘러싼 이야기. **수산해양교육연구**, 25(6), 1440-1458.
- 김소연(2006).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영(2023).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9(1), 1-19.
- 류수연, 이종원(2017). 초등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는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2), 59-74.
- 문재원, 나지연(2019). 과학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과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초등과학교육**, 38(1), 87-101.
- 박재향(2002).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책임한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산광역시교육청(2024).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 관리 업무 지원**

방안.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2025). **2025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2024). **체험학습과 안전문제. 글로벌 교육동향 길, 2024년 2호(통권 제10호), 1-4.**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승미, 유창완, 박정준, 최창규(2014).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 2014-28).** 서울: 교육부.

이영주(2003). [학교 밖 배움, 현장 체험학습 ①] 현장 체험학습 꼼꼼 점검. **초등우리교육, 2003년 4월호(통권 제158호), 194-19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2024). **전라북도 학생 해외연수 매뉴얼: 학생 중심의 해외연수 및 안전관리 참고자료.**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충청북도교육청(2024). **2024년 3학년 해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학교안전공제회(2024). **2023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통계(통계표).**

학교안전공제회(2025). **2024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통계(통계표).**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2018). *National Principles for Child Safe Organisations.* Canberra: AHRC.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Casterson v. Superior Court(2002). 106 Cal.App.4th 1049. California Court of Appeal.

Chicago Public Schools(2021). *Field Trip Policy and Procedures.* Chicago: CPS.

Creswell, J. W., & Poth, C. N.(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Sage Publications.

Department for Education South Australia(2025). *Camps and excursions policy.* Adelaide: Department for Education South Australia.

Department for Education(2018). *Health and Safety on Educational Visits: Guidance*

for schools and local authorities. London: DfE.

Education Authority(2017). *Interim Guidance for Educational Visits*. Belfast: Education Authority Northern Ireland.

Health and Safety Executive(2011). *School trips and outdoor learning activities: Tackling the health and safety myths*. London: HSE.

House of Commons Library(1995). Activity Centres (Young Persons' Safety) Bill: Research Paper 95/12. London: UK Parliament.

Irrawang Public School(2024). *Excursion Guidelines*. New South Wales: Irrawang Public School.

Kariong Mountains High School(2025). *Risk Management in Outdoor Activities*. New South Wales: Kariong Mountains HS.

Lancashire County Council(2013). *Policy and Guidelines for Educational/Off Site Visits*. Lancaster: LCC.

London Borough of Hammersmith & Fulham(2024). *Guidance for Off-Site Visits and Related Activities*. London: LBHF.

Morris County Prosecutor's Office(2020). *School bus driver sentenced in fatal I-80 crash*. Morristown, NJ: MCPO Press Releas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2018). *Regulation A-670: School trips*. New York: NYC DO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2022). *Regulation of the Chancellor No. A-670: School Trips*. New York: NYC DOE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2009). *Excursions policy*. Sydney: NSW DoE.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2025a). Curriculum planning and programming, assessing and reporting to parents K-12. <https://education.nsw.gov.au/policy-library/policies/pd-2005-0290>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2025b). Excursions and variations of routine. <https://education.nsw.gov.au/policy-library/policies/pd-2005-0290-04>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OEAP(2023). National Guidance for the Management of Outdoor Learning, Off-site Visits and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https://oeapng.info/downloads/all-documents/>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Oloyede, J., & Beauden, J.(2025). Exploring the impact of field trips and experiential learning on Social Studies educat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Unpublished manuscrip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89057534_Exploring_the_Impact_of_Field_Trips_and_Experiential_Learning_on_Social_Studies_Education 에서 7월 1일 인출.

Safe Work Australia(2025).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Canberra: Safe Work Australia.

Seattle Public Schools(2018a). *FIELD TRIPS AND EXCURSIONS: General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All Field Trips*. Seattle, WA: SPS.

Seattle Public Schools(2018b). *FIELD TRIPS AND EXCURSIONS: Overnight Field Trip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 2320-C). Seattle, WA: SPS.

UK Parliament Education & Skills Committee(2005). *Education outside the classroom: Second report of session 2004-05*. London: UK Parliament.

UK Parliament(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London: UK Parliament.

Wolfe v. Dublin Unified School District(1997). 53 Cal. App. 4th 206. California Court of Appeal.

Yin, R. K.(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Sage Publications.

東京都教育委員会(2019). 修学旅行等における安全管理ガイドライン. 東京: 東京都.

文部科学省(2017a). 小学校学習指導要領 (平成29年告示) 解説 - 特別活動編. 東京: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省(2017b). 中学校学習指導要領 (平成29年告示) 解説 - 特別活動編. 東京: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省(2022). 学校における安全確保に関する指針. 東京: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省(2023). 学校における熱中症事故情報と対策. 東京: 文部科学省.
日本修学旅行協会(2024). 教育旅行年報「データブック2024. 東京: 日本修学旅行協会
全国修学旅行研究協会(2025). 2023(令和)5年度 全国修学旅行実施状況調査. 東京: 全国
修学旅行研究協会.
栃木県教育委員会(2017). 那須雪崩事故検証報告書. 栃木県教育委員会.

[참고 사이트]

<https://21erick.org/column/15670/> 에서 2025년 9월 3일 인출.
<https://anzenkyouiku.mext.go.jp/heatillness/data/jikojirei-1.pdf>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3862982532?trackingCode=rss> 에서 2025년
9월 5일 인출.
https://california.public.law/codes/education_code_section_35330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virtual-excursions-bring-the-world-to-the-classroom> 에서 2025년 9월 7일 인출.
<https://education.nsw.gov.au/policy-library/policies/pd-2005-0290-04>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https://laws.e-gov.go.jp/law/333AC0000000056>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https://laws.e-gov.go.jp/law/333M50000080018>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https://www.finlex.fi/fi/lainsaadanto/1974/412> 에서 2025년 12월 22일 인출.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1998/19980628> 에서 2025년 12월 23일 인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ealth-and-safety-on-educational-visits/health-and-safety-on-educational-visits> 에서 2025년 9월 4일 인출.
<https://www.hse.gov.uk/education/school-trips.htm> 에서 2025년 9월 4일 인출.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5/585> 에서 2025년 12월 23일 인출.
<https://www.worksafe.vic.gov.au/news/2024-05/180000-fines-after-student-drowns-school-camp>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excursions/guidance/external-provid>

ers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excursions/guidance/liability-waivers-indemnities>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excursions/guidance/overseas-travel>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excursions/policy> 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2025.3.4.).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 발표. https://www.kftu.net/sub_index.php?page=2&subm=1&link_fd=2&amount=25&now_page=2 에서 2025년 7월 10일 인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2025.3.19.). 주요 교육현안 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 <https://www.kfta.or.kr/usr/wap/detail.do?app=16527&seq=270000417631> 에서 2025년 7월 10일 인출.

[언론기사]

EBS(2025.7.23.). [지역교육브리핑] “체험학습, 개인 책임 아닌 제도 개선으로”. <https://news.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60624123/H?eduNewsYn=>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G1 TV(2024.6.3.). <집중> 현장체험 학습 재판.. 교육계 술렁. https://www.g1tv.co.kr/news/?newsid=308639&mid=1_208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KBS뉴스(2025.2.14.). 초등학생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 교원단체 반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6026> 에서 2025년 12월 3일 인출.

ubc뉴스(2025.6.23.). 새로운 법 시행됐지만 체험학습 기피 그대로. <https://www.youtube.com/watch?v=ePuZf1Nz0aU> 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경향신문(2025.2.11.). “체험학습 중 초등생 사망사고, 인술 교사 형사책임” 판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12013025#ENT> 에서 2025년 9월 3일 인출.

교육언론[창](2025.3.17.).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무한 책임인가?”. <https://www.edu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3> 에서 2025년 9월 3일 인출.

교육희망(2024.5.16.). “[대제중의 따로 또 같이] 수학여행은 체험학습의 꽃? 기피 대상?”.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91> 에서 2025년 9월 3일 인출.

기호일보(2024.3.11.). 수도권 교육감들 “현장 체험학습 안전기준 마련할 것”.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392> 에서 2025년 9월 4일 인출.

뉴스1(2024.11.28.).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 안 진다.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614836> 에서 2025년 9월 5일 인출.

뉴스스(2025.4.11.). “학생도, 교사도 안심할 권리가 있다 [체험학습, 모두가 힘들다③]”.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0_0003135005 에서 9월 4일 인출.

대구MBC(2025.4.12.). “[만나보니] 현장 체험학습에 사고 나면 교사 책임?”. <https://dgm MBC.com/article/mliSIGVVp57> 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머니투데이(2025.7.7.). “이제 현장학습 가나요?”…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제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70714202568499> 에서 2025년 7월 11일 인출.

부산일보(2025.6.24.). “수학여행 때 사고 나면 어쩌나”… 법 개정에도 모호한 기준에 불안한 교사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62411262260571>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세계일보(2025.7.1.). 2024년 학교 안전사고 21만건…35%는 체육시간, 1만건은 학교밖에서 [지금 교실은].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01507915>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시사IN(2025.3.30.).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책임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11> 에서 2025년 12월 3일 인출.

연합뉴스(2025.2.11.).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유죄…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0133051062> 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전북미래교육신문(2025.3.14.). 현장체험학습 사망·중상 위험, 일반 학교활동의 9배. <https://edujb.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0> 에서 2025년 7월 10일 인출.

충청일보(2024.4.21.). 현장학습 때마다 행정업무 폭탄… 교사 부담 더 커진다. <https://www.chungche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0>

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603 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충청투데이(2025.2.28.). “[속보] 인솔교사 법적 책임 부담… 급기야 ‘체험학습 중단’”.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590 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한국교육신문(2023.10.10.). 법원 판례로 본 현장체험학습의 모든 것.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0042 에서 2025년 12월 3일 인출.

한국교육신문(2025.3.13.). 현장체험학습 안전 확보 어렵다 78.5%.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3930 에서 2025년 7월 10일 인출.

한국교육신문(2025.6.19.). ‘예방조치 의무’ 구체적 규정 없이 교사 보호 못 해.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4757#google_vignette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한국일보(2025.4.23.). “소풍 안 가요” 사고 나면 책임 물을까 현장학습 줄취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213490005411 에서 2025년 7월 11일 인출.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2025.7.31. 전부개정, 경상남도조례 제589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청현장체험학습학생안전관리조례>에서 2025년 8월 11일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7.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969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교육청현장체험학습학생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에서 2025년 8월 11일 인출.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2025.6.26. 일부개정, 전라남도조례 제632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교육청현장체험학습안전관리조례>에서 2025년 8월 11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5.9.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8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2025년 9월 31일

인출.

초·중등교육법(2025.4.1. 일부개정, 법률 제2086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에서> 2025년 8월 11일 인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3.10.16. 일부개정, 교육부고시 제2023-3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행정규칙/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에서> 2025년 8월 11일 인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7.22.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6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교육부령/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2025년 8월 11일 인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7.2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5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대통령령/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2025년 8월 11일 인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1.21. 일부개정, 법률 제2066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2025년 8월 11일 인출.

○ — 부 록

부 록

1. 교원·학부모·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면접조사 질문지

연구 참여 설명문(면접조사용)

연구과제명 :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실태와 법적 제도화 필요성을 파악하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정책·법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이 설명문을 신중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가 왜 수행되고, 무엇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뒤 연구자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 주십시오.

1.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이 연구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실태와 운영상의 어려움, 법적·행정적 부담,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교육청·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담당자, 교원, 학부모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 약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2~4명을 그룹으로 구성된 집단초점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접 1회당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이며, 면접 일정과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구참여자의 상황이 여의지 않을 경우, 온라인(ZOOM)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참여설명문과 동의서를 미리 이메일로 발송한 후, 연구참여자가 서면 동의서를 작성 후 연구자가 동의서를 회수한 뒤 온라인 면접을 실시합니다.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제공 계획이 있습니까?

면접에서는 주로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경험, 어려움, 개선 요구사항, 법률 제정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연구자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모든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면접 시 전 과정을 녹음기로 녹음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수행을 위한 분석에만 사용되며, 귀하의 정보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도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합니다.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특별히 예상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오히려 참여자가 면접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개선과 법적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겠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5. 조사에 대한 심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면접조사에 참여하는 분에게는 10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중단할 경우 수집된 귀하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7. 분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며, 연구 및 사례비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며,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됩니다. 연구진은 귀하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8. 연구 관련 문이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책임연구자 : 권 오 영 | 전화번호 : 044-415-2103 |
| 연구 원 : 허 효 주 | 전화번호 : 044-415-2189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써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4-415-2188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식별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정책적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 위 개인정보는 **사내비** 입금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활용 즉시 폐기함.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현장체험학습 법제화 연구를 위한 질문지(교원용)

도입 질문

1. 최근 2~3년 동안 선생님께서 추진한 현장체험학습 중,
 - 가장 어려움이 컸던 사례와,
 - 본인 스스로 혹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탐색 질문

2. 현장체험학습을 준비·운영하시면서 가장 크게 인식하는 문제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인 사례나 배경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3. 현재 운영 중인 조례·매뉴얼·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부분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 1~2가지,
 - 보완이 필요한 부분 1~2가지를 나누어 말씀해 주십시오.
4.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선생님께서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체계는 무엇입니까?
 - 예산, 인력(보조인력 포함), 안전관리, 행정 간소화 등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5.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사 개인, 학교, 학생·학부모 각각의 입장에서 달리 요구되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심화 질문

6. 만약 “(가칭)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예 : 교원 면책, 보조인력 제도화, 안전관리 기준, 예산 지원, 행정 지원 절차 등
7. 법률에서 교사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교사가 반드시 맡아야 하는 부분(교육 생활지도 등), 지원 인력이나 기관이 분담해야 하는 부분(안전관리, 행정업무 등), 법률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8.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교과 관련 체험, 자유학기 활동, 수학여행·수련활동, 진로·봉사활동, 해외 탐방 등의 범위에 대해 포함·제외 조건부로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 주시고 구분한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9. 법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교사의 책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사전 준비, 운영 과정, 사후 대응 등 단계별로 구분해 말씀해 주세요.

10. 법률 제정 이후, 교육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보다 확대·강화해야 할 역할, 혹은 경감되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 질문

11.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정책) 한 가지 이상과,

-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도적 과제(정책) 한 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12. 마지막으로, 법률 제정·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법제화 연구를 위한 질문지(학부모용)

도입 질문

1. 최근 2~3년 동안 자녀가 참여한 현장체험학습 중,
 - 가장 어려움이 컸던 사례와,
 - 본인 스스로 혹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주요 탐색 질문

2. 학부모님께서 현장체험학습을 보면서 가장 크게 인식하신 문제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사례나 배경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3. 현재 운영 중인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매뉴얼-지침 등이 학부모 입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고 느끼시는 부분과 한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 1-2가지,
 - 보완이 필요한 부분 1-2가지를 나누어 말씀해 주십시오.
4.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예산, 인력(보조인력 포함), 안전관리, 행정 간소화 등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사 개인, 학교, 학생 및 학부모 각각의 입장에서 달리 요구되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심화 질문

6. 만약 “^(가칭)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예 : 교원 면책, 보조인력 제도화, 안전관리 기준, 예산 지원, 행정 지원 절차 등
7. 법률에서 교사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교사가 반드시 맡아야 하는 부분(교육생활지도 등), 지원 인력이나 기관이 분담해야 하는 부분(안전관리, 행정업무 등), 법률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8.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교과 관련 체험, 자유학기 활동, 수학여행-수련활동, 진로-봉사활동, 해외 탐방 등의 범위에 대해 포함-제외-조건부로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 주시고 구분한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9. 법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교사의 책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사전 준비, 운영 과정, 사후 대응 등 단계별로 구분해 말씀해 주십시오.

10. 법률 제정 이후, 교육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보다 확대·강화해야 할 역할, 혹은 경감되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 질문

11.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정책) 한 가지 이상과,

-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도적 과제(정책) 한 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12. 마지막으로, 법률 제정·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법제화 연구를 위한 질문지(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용)

도입 질문

1. 최근 2~3년 동안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시거나 지원하신 학교 현장체험학습(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중,
 - 가장 어려움이 컸던 사례와,
 - 본인 스스로 혹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사례가 있다면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탐색 질문

2. 담당자님께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시면서 가장 크게 인식하신 문제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사례나 배경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3. 현재 운영 중인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매뉴얼·지침 등이 청소년수련시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고 보시는 부분과 한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 1~2가지,
 - 보완이 필요한 부분 1~2가지를 나누어 말씀해 주십시오.
4. 수련시설 현장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지원 체계는 무엇입니까?
 - 예산, 인력(보조인력 포함), 안전관리, 행정 간소화 등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5. 담당자님께서 현장체험학습 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 학교 및 교원, 학생 및 학부모 각각의 입장에서 달리 요구되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심화 질문

6. 만약 “(가)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예 : 교원 면책, 보조인력 제도화, 안전관리 기준, 예산 지원, 행정 지원 절차 등
7. 법률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책임 범위, 교사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시설이 반드시 말아야 하는 부분(프로그램 기획 운영 안전교육 등), 학교나 지자체와 분담해야 하는 부분(사전 협의, 행정절차 등), 교사가 반드시 말아야 하는 부분(교육생활지도 등), 자원 인력이나 기관이 분담해야 하는 부분(안전관리, 행정업무 등), 법률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8.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교과 관련 체험, 자유학기 활동, 수학여행·수련활동, 진로·봉사활동, 해외 탐방 등의 범위에 대해 포함 제외 조건부로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 주시고 구분한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9. 법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수련시설·교육청·학교·교사의 책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사전 준비, 운영 과정, 사후 대응 등 단계별로 구분해 말씀해 주십시오.
10. 법률 제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담당자님께서서는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보다 확대·강화해야 할 역할, 혹은 경감되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 질문

11.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정책) 한 가지 이상과,
 -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도적 과제(정책) 한 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12. 마지막으로, 법률 제정·개정 과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입장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시도교육청 담당자 서면조사 질문지

연구 참여 설명문(서면조사용)

연구과제명 :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실태와 법적 제도화 필요성을 파악하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정책·법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뒤 연구 참여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1.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본 연구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실태와 운영상의 어려움, 법적·행정적 부담,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담당 장학사 및 주무관을 대상으로 각 교육청의 조례·지침, 지원 체계, 안전사고 예방·대응 체계, 법제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자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 결과는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등으로 작성되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담당 장학사 및 주무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연구 참여를 요청한 후, 교육청에서 지정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연구참여 설명문과 설문지(질문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설명문을 읽은 뒤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메일 회신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설문지는 주로 귀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지침 제정 및 운영 현황, 예산 및 인력 지원 체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한계, 법제화 필요성과 우선 과제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 작성에는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결정에 따르며, 설문 전체 또는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재공 계획이 있습니까?

본 조사에서는 귀하가 소속된 시도교육청, 부서, 직위, 현장체험학습 관련 담당 업무 범위와 같은 기본적인 직무 관련 정보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이 수집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현장체험학습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에만 사용되며, 연구 결과는 교육청 단위나 집단 수준에서만 분석됩니다. 보고서에도 개별 담당자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물리적·심리적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설문 작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정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지침, 지원 체계,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청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개선 방향이 정책 및 법률안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데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5. 조사에 대한 실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본 조사는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차원의 전문가 서면조사이므로, 별도의 실비나 답례품(선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중단할 경우 수집된 귀하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7.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 참여로 수집되는 정보는 사도교육청명, 부서, 직위, 담당 업무 범위, 설문 응답 내용 등이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연구 결과는 통합·통계적인 형태로만 보고되며,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교육청의 담당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정해진 보관 기간(예: 3년) 동안 비밀번호가 설정된 저장 장치에 보관한 뒤, 이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예정입니다.

8. 연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책임연구자 : 권 오 영 | 전화번호 : 044-415-2103 |
| 연구 원 : 허 효 주 | 전화번호 : 044-415-2189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4-415-2188

현장체험학습 법제화 연구를 위한 질문지(교육청 담당자용)

도입 질문

1. 최근 2~3년 동안 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신 현장체험학습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 가장 어려움이 컸던 사례와,
 - 본인 스스로 혹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주요 탐색 질문

2. 담당자님께서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관리하시면서 가장 크게 인식하신 문제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사례나 배경(지역·학교 유형, 학생 특성 등)과 함께 서술해 주십시오.
3. 현재 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매뉴얼·지침이 실제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고 보시는 부분과,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을 나누어 적어 주십시오.
 -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 1~2가지,
 - 보완이 필요한 부분 1~2가지
4.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구축·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원 체계는 무엇입니까?
 - 예산, 인력(보조인력 포함), 안전관리, 행정 절차 간소화, 연수·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 주십시오.
5.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교원, 학생·학부모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요구나 역할이 있다고 보신다면, 귀하께서 인식하시는 차이와 조정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심화 질문

6. 만약 “(가칭)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예 : 교원 면책 규정, 보조인력 제도화, 안전관리 기준, 예산 지원, 행정 지원 절차, 시·도교육청의 책무 등
7. 법률에서 교원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교원이 반드시 담당해야 한다고 보시는 부분(교육·생활지도 등)과, 지원 인력이나 외부 기관이 분담해야 한다고 보시는 부분(안전관리, 행정업무 등)을 구분하여, 법률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8. 법률에서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교과 관련 체험, 자유학기 활동, 수학여행·수련활동, 진로·봉사활동, 해외 탐방 등 다양한 활동 유형 중에서 포함 제외·조건부 포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범위를 구분하여 적어 주시고,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함께 서술해 주십시오.

9. 법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교원의 책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사전 준비, 운영 과정, 사후 대응 등 각 단계별로 교육청·학교·교원이 어떤 책임과 역할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적어 주십시오.

10.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귀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적어 주십시오.

- 현재보다 확대·강화해야 할 역할과 경감되거나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역할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마무리 질문

11.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정책) 한 가지 이상과,
-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도적 과제(정책) 한 가지 이상을 적어 주십시오.

12. 마지막으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법률 제정·개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현장 목소리'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이나, 이 질문지에서 다루지 못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내 수업의 한계를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활동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원 개인에게 집중된 무한 책임 구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및 판례 분석, 국내 17개 시·도교육청 운영 매뉴얼 검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였다. 또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면접(FGI)과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현장의 입법 요구와 정책적 필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과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핵심 쟁점과 입법 과제로 체계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① 교원 개인에게 집중된 결과책임 구조, ②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도한 행정·계약·안전관리 업무 부담, ③ 시·도별 조례와 매뉴얼의 기준 불일치, ④ 전문적 지원 조직과 인력 체계의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장 이해관계자 전반에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명시적 법제화'에 대한 강한 합의가 도출

되었으며, 교원의 직무를 교육과정 기획과 학생 생활지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하였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교원 면책 특례 규정과 수사 단계에서의 교원 보호 장치를 포함함으로써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① 교육지원청 단위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센터 구축, ② 체험 시설·프로그램 인증제 및 위험도 평가 의무화, ③ 안전 보조인력 국가 표준화 및 인력풀 구축, ④ 학교안전공제 및 민간보험 연계 고도화라는 4대 핵심 정책 과제와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을 단순한 부수적 활동이 아닌 '공적 교육과정'으로 재정립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법·정책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본 연구가 제안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안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질 높은 체험 기회를 보장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현장체험학습, 교원 면책, 교육활동 보호, 위험도 평가, 체험시설 인증,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학교안전, 교육법제

ABSTRACT

School field trips constitute a core compon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fostering students' holistic development and civic competencies beyond the limitations of classroom instruction. In recent years, however, the growing tendency to impose excessiv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n individual teachers following safety accidents has led many schools to avoid or significantly curtail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 This trend not only restricts students' learning opportunities but also undermines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schooling and weakens the overall quality of public education.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structural problems embedded in the current field trip system and to develop effecti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hat transform the unlimited individual liability borne by teachers into a publicly supported responsibility shar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conducted an extensive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and judicial precedents, examined operational manuals from all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n Korea, and performed comparative analyses of field trip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Japan. In addition,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f teacher organizations, parent associations, and youth training facilities, as well as through written surveys of officials from all 17 education offices. The data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and comparative case analysis in order to structure key issues and legislative priorities.

The findings reveal four major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1) a result-based liability framework concentrated on individual teachers; (2) excessive administrative, contractual, and safety management burdens unrelated to core teaching responsibilities; (3) substantial inconsistencies among local ordinances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and (4) the absence of professional support organizations and dedicated personnel. Across all stakeholder groups, a strong consensus emerged regarding the necessity of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exempting teachers from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in the absence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 as well as the need to redefine teachers' professional roles around curriculum design and student guid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 13-article legislative draft of the Act on the Operation and Support of School Field Trips. The bill codifie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troduces special immunity provisions for teachers, and establishes procedural safeguards for educators during accident investigations, thereby ensuring legal stability in the operation of field trips. To support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study further recommends four core policy initiatives: (1)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field trip support centers at the district education office level; (2) mandatory certification of facilities and programs combined with standardized risk assessment; (3) national standardization and pooling of safety support personnel; and (4) advanced integration of public compensation schemes with private insurance systems, accompanied by a phased mid- to long-term policy roadmap.

This research reconceptualizes school field trips not as auxiliary activities but as essential public educational programs, and presents an

integrated legal-policy model that simultaneously strengthens teacher protection and enhances student safety. The propose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are expected to create a secure educational environment in which teachers can fully devote themselves to instruction, while ensuring that students benefit from rich, high-quality experiential learning and reinforcing the public accountability of education.

Keywords: School Field Trips, Teacher Liability Exemption,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Risk Assessment, Facility Certification, Field Trip Support Center, School Safety, Education Legislation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 |
|----------------|---|
| 연구보고25-기본01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
| 연구보고25-기본02 |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
| 연구보고25-기본03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
| 연구보고25-기본04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
| 연구보고25-기본05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
| 연구보고25-기본06 |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
| 연구보고25-기본07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니영 |
| 연구보고25-기본08 |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
| 연구보고25-일반01 |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
| 연구보고25-일반01-01 |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
| 연구보고25-일반02 |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
| 연구보고25-일반02-01 |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
| 연구보고25-일반03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
| 연구보고25-일반06 |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
| 연구보고25-일반06-01 |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언경·정승 |
| 연구보고25-일반07 |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
| 연구보고25-일반07-01 |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 연구보고25-일반07-02 |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김남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수시과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전명기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탁과제

< 일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 |
|----------------|--|
| 연구보고25-수탁04-01 |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5 |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5-01 |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6 |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7 |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
| 연구보고25-수탁08 |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
| 연구보고25-수탁09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희진·문지혜 |
| 연구보고25-수탁10 |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
| 연구보고25-수탁11 |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
| 연구보고25-수탁12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
| 연구보고25-수탁13 |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
| 연구보고25-수탁14 |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
| 연구보고25-수탁15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항원·김문정·진인범 |
| 연구보고25-수탁16 |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
| 연구보고25-수탁17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1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2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3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4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8 |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학폭01 |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
| 연구보고25-학폭02 |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
| 연구보고25-학폭03 |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
| 연구보고25-학폭04-01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연구보고25-학폭04-02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 |
|----------------|---|
| 연구보고25-학폭04-03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연구보고25-학폭04-04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연구보고25-학폭05 |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 연구보고25-학폭06 |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
| 연구보고25-학폭07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
| 연구보고25-학폭08 |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
| 연구보고25-학폭09 |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
| 연구보고25-학폭10 |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대안01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
| 연구보고25-대안02 |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효·박현정·김희정 |
| 연구보고25-대안03 |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위센터01 |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 연구보고25-위센터02 |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 연구보고25-위센터03 |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 연구보고25-위센터04 |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 연구보고25-위센터05 |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위 크 슝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시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 타 자 료 집 〉

| | |
|---------|-----------------------------------|
| 자료25-01 |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 자료25-02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
| 자료25-03 |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
| 자료25-04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
| 자료25-05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 자료25-06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 자료25-07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 자료25-08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
| 자료25-09 |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
| 자료25-10 |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
| 자료25-11 | 제14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 자료25-12 |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 자료25-13 |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
| 자료25-14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
| 자료25-15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 자료25-16 |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인 쇄 2025년 12월 23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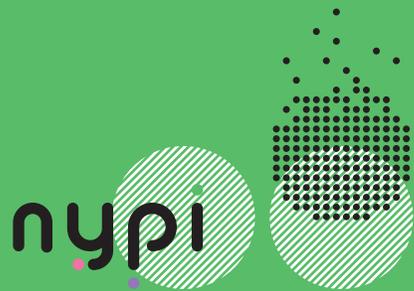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044)866-301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